

월간
재정포럼 8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9년 8월호 제158호

- 현안분석** • •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탄력성 추정 / 김지영
•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일고/ 김 진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김진수

정책토론포트 •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 스위스 탄소세율 3배 인상 외

정책흐름 •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성급한 주택정책 전환은 시기상조 · 손재영

현안분석

06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최준욱

19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탄력성 추정 · 김지영

34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일고 · 김 진

49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 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김진수

정책토론티포트

67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79 스위스 탄소세율 3배 인상 외

정책흐름

86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98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99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109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113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116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118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122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

123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재정통계

127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외

이슈 & 포커스

136 “법인 · 소득세 감세 유지하되 공제는 축소” 외



성급한 주택정책 전환은 시기상조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주택시장이 또다시 조심스러운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은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지표를 찾기 힘들다.

한 주택정보업체의 통계를 보면, 올 초부터 7월 말까지 송파구와 강남구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각각 21%, 17% 상승했지만, 일반아파트의 가격상승은 불과 3% 미만이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전세가는 2년 전에 비해 서울은 평균 2.3%, 수도권은 1%밖에 오르지 않았다. 미분양주택은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약 6,400호 줄었지만 여전히 14만 6천호가 남아 있고, 그 중 악성이라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5만 3천호에 달한다.

주택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작은 변동이 있을 뿐이다. 정부와 언론이 부동산시장을 주목하는 것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때문이며, 현재로서는 이 자을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다른 어떤 조치들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

경기회복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정상적인 현상

그런데 주택시장의 작은 변동, 특히 서울 강남지역 주택가격 동향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왜 그토록 민감할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졌다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소득과 고용이 회복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도 정상이 아닌가?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경계경보를 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참여정부가 국민들 가슴속에 심어놓은 믿음들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울 강남이 오르면 다른 지역 집값도 따라서 오르고 그 결과 서민들의 주거가 위협받는다거나, 가격거품이 붕괴되어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강남 주택과의 전쟁'이 정점에 달했던 2005년 말까지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지역의 매매, 전세가격이 안정적이었고, 특히 강남지역의 전세가격까지도 잠잠했다. 현재 상황도 주택가격 거품이 꺼져서 경제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정부와 여론이 정작 주목해야 할 대상은 강북과 서울 주변의 소형, 저가 주택 동향이다. 2006년 하반기 이후 이들 주택가격은 매우 불안한 양상을 보인다. 강북 고가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왔을 사람들은 없지만, 강북의 소형주택 가격, 특히 전세가가 오르면 심각하다. 1988년 경험했던 바와 같은 인간적인 비극들과 함께 엄청난 위기상황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공급 통계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참여정부 때 워낙 주택공급을 등한시하고 투기억제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나쁘다. 2000~2003년간 수도권 및 서울의 연평균 주택건설은 각각 31만 7천호, 12만 3천호였지만, 그 후 4년간은 연평균 수도권 22만호, 서울 5만 3천호에 그쳤다. 그나마 작년, 올해의 주택공급은 더 줄었다.

주택시장도 수요-공급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어

참여정부는 소수의 투기자들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므로, 투기심리만 억누르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결국 오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다. 주택시장도 수요-공급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주택가격을 내리누르는 정책에 대해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세금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주택소유권의 일부를 정부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진다. 세금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조세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기본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정책실패로 인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특히 서울 통근권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많다. 미리 공급을 정상 수준으로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투기억제 위주의 주택정책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
 조세보다는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기본이어야 한다.
 공급을 정상 수준으로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
 주택정책의 기본이어야 한다. 미리 공급을 정상으로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

.....
정부대책의 핵심은
택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기존 택지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대책의 핵심은 택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기존 택지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재건축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들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거 정부처럼 시장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시장의 힘을 국민 주거 복지의 향상으로 귀결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KIPF**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탄력성 추정
김지영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일고:
OECD자료를 이용한 현황 및 실증분석
김진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 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¹⁾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choi@kipf.re.kr)

지난 10여년간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목표는
많은 부분이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에만 중점을 두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시점까지 하지 말자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I. 서론

남북한 두 국가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에게 독일의 통일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1990년대 초반에 남북통일과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그러한 논의는 점차 소멸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목표는 많은 부분이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에만 중점을 두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시점까지 하지 말자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남북한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남북한 소득격차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근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는 하지만, 남북한 소득격차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에 따른 충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통일을 거부할 것인가? 혹은 통일을 거부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남북한 경제의 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충격 중에서도 특히 재정 측면에 대해 검토하는 이유는 그것이 남북경

1) 본고는 주로 최준욱(2008)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제의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현가능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이라는 것은 통합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떠한 통합방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재정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통합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통합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가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의 충격이나 부담은 1990년대 초반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보다도 훨씬 커질 것이다.

II. 급진적 통합의 문제점

남북한 경제가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특히 재정 측면에서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1990년대에 수행된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환경 변화를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가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의 충격이나 부담은 1990년대 초반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보다도 훨씬 커질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90년대 이후에도 남북한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에 남한의 소득은 북한의 6~8배 정도 되었는데, 2007년에는 남북한 소득격차 17배 정도로 확대되었다²⁾. 소득격차가 확대된 만큼 급진적 통합에 따른 충격이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후 남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는 등 사회제도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제도까지 급진적으로 통합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북한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북한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지출 소요만 하더라도 북한지역 GDP의 약 300%, 통일한국 GDP의 8%를 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 직후에 북한지역에서 생산성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정상 임금은 기초생보 급여액의 불과 1/8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³⁾. 따라서 북한지역에서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지역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면, 통일 이후의 상황은 북한지역은 남한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형태가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남한의 현행 제도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형태의 급진적인 통합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1990년대 초반의 수치를 대해서는 통계청(1995) 자료를 이용한 것인데, 1991년에 6.3배, 1992년에 7.4배, 1993년에 8.3배 정도 되었다. 2007년의 수치는 한국은행(2008)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3) 자본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것이 비록 주민들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임금이 아니라 민영화 과정에서 의 배우처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는 근로소득이자기보다는 이전지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남북한 소득격차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험 차원을 넘어, 북한이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Ⅲ.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의 의미

급진적 통합에 따른 충격이나 부담이 크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남북한 통합을 매우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남북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논의가 지난 10년간 통일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가 통일정책으로서 충분한 것인가?

먼저 시간이 경과하면서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단순하게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남북한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는 남한의 1인당 소득이 북한의 그것에 비해 10배 이하이던 것이, 최근에는 17배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성장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소득격차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험 차원을 넘어, 북한이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개혁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중국식의 경제개혁에 성공하고, 중국에서와 유사한 정도의 고속성장을 달성하는 경우를 보자. 중국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약 8~9% 정도였다. 만약 북한이 향후 20년 동안 이 정도의 높은 성장을 달성한다면, 당연히 남북한 소득격차는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도 일정한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2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남북한 소득격차는 상당히 크게 유지될 것이다. 남한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4~5% 정도로만 유지되더라도, 20년 후에도 남한의 1인당 소득은 북한의 그것에 비해 10배 가까이 될 것이다. 비록 남북한 소득격차가 현재보다 크게 축소되기는 하지만, 남북한 소득격차의 정도는 1990년대로 회귀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의 재정부담은 1990년대 초반에 급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출산율이 북한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인구 대비 남한 인구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이는 통일과 관련된 재정부담에 있어 남한 인구 1인당 부담은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향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통합 직후에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소요로 인해 일단 증가한 국가부채의 비율이 이후에 하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이는 직관적으로는 통일 직후에 발생하여 국가부채의 형태로 남게 되는 부담을 미래에 더 적은 인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년 후에도 남북한의 급진적인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상당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적어도 몇 가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소득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남북한 소득격차가 축소되어 본격적인 통합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 수 있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통합 직후에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소요로 인해 일단 증가한 국가부채의 비율이 이후에 하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진다.

IV. 통합 시나리오

그렇다면 만약 남북한 소득격차가 충분히 축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의 급진적인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 외생적으로 조성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통합에 따른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통합을 거부할 것인가?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방식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등에 대해 검토한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정치적인 과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주로 경제적 통합의 실질적인 구성요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EU 및 동유럽 등의 경제통합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통합 단계를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 경제체제의 이질성 축소

2단계 : 상품시장에서 장벽이 제거되는 단계

3단계 : 노동시장에서 장벽이 제거되는 단계

4단계 : 화폐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

5단계 : 재정통합의 초기 단계 (두 지역 간에 본격적인 재정 이전이 있는 단계)

일반적으로 급진적인 통합이라 함은 1단계~6단계의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독일식 통합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보다 가장 최소한으로 덜 급진적인 방식에서는 재정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6단계 : 재정통합의 후기 단계 (사회제도 및 조세제도가 통합되고, 두 지역 간 공공지출 혜택 수준에서의 격차가 최소화되는 단계)

일반적으로 급진적인 통합이라 함은 1단계~6단계의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독일식 통합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보다 가장 최소한으로 덜 급진적인 방식에서는 재정부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평가해보기로 한다. 즉 5단계까지의 통합은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만, 6단계의 통합은 상당 기간 유보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검토하는 이유는 그 경우가 좀 더 점진적인 다른 방안에 비해 재정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재정 측면에서 실현가능하다면, 그보다 좀 더 점진적인 다른 방식도 적어도 재정 측면에서는 실현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V. 모의실험을 위한 가정

본장에서는 남북한 경제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통합되지만, 사회제도 및 조세제도의 통합은 유보되는 경우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5단계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북한지역을 통합한 통일한국이라는 주체가 존재하며, 이러한 주체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각 지역의 공공지출을 관리하는 하위 단위로써 남한지역 및 북한지역이라는 단위가 존재하지만, 북한지역에서의 재정적자는 남한지역으로부터의 재정 이전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고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경제통합 이전의 분단 상황은 남한, 북한으로 지칭한다. 통합 후에는 각 지역을 “북한지역” 및 “남한지역”으로 지칭하고 이를 합하여 통일한국이라 지칭한다. 기존의 북한 공공 부문은 통합 과정에서 소멸되고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현재의 북한의 재정은 외채의 승계 등 제한적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재정은 통합 이전에 남한의 재정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통합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각각 “기존재정”과 “추가재정”이라 칭한다. 여기서 추가재정 지출은 북한지역으로부터의 재정수입을 제외하지 않은 총지출의 개념이므로, 통합 이후에 남한지역으로부터 이전되어야 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추가재정의 수입, 지출 및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라 함은 각각의 변수를 북한지역 GDP로 나눈 것이며, 기존재정의 수

입, 지출 및 국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라 함은 각각의 변수를 남한지역 GDP로 나눈 것이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반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 전망치를 위한 가정에 대해 설명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한다.

가. 기본 가정

통합시점 : 일단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2011년 초로 가정한다. 물론 이는 2011년에 통합이 이루어지리라는 예측에 기초한 것은 아니며, 비교적 현재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다른 분야의 통합의 재정영향 : 화폐통합은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품시장에서는 가격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그에 따른 충격은 소득보조로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민영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가정은 하지 않되, 민영화 수입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초기 자산형성, 재산권의 보상, 산업보조금 등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으로 민영화수입이 기본적인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원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민영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형평성 유지 및 남한지역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합 이후의 제도 :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북한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가능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나. 인구 및 성장 등에 대한 가정

인구 : 경제통합 이후 북한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남한지역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지역의 의료상황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북한지역 인구 대비 남한지역 인구의 비중은 2025년까지는 대체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만, 2020년대에 남한지역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북한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합 이후의 북한지역의
성장은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통합 이후의 북한지역
성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에서의 인구감소가 시작되면서 그 비율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1.9배, 2050년에는 1.8배, 2070년에는 1.63배 정도로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관련된 기존 연구 등을 반영하여, 본고의 기준선에서는 통합 후 수년 내에 북한지역 인구의 10%가 남한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남한의 성장 : 남한지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에 기초한 통상적인 장기전망 기법에 기초하여 성장률을 전망한 수치를 이용한다. 본고의 기준선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5%로 가정한다.

통합 후 북한지역의 성장 : 통합 이후의 북한지역의 성장은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통합 이후의 북한지역 성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북한지역의 성장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가정을 택하고, 그러한 가정이 달라지는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에서는 남한지역에서보다 높은 성장이 유지되어 북한지역 소득이 남한지역 수준으로 수렴하되 상당한 정도의 수렴이 이루어지는 데는 50~6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통합 직후에는 북한지역의 성장이 남한지역의 성장을 초과하여 성장하는 정도가 크지만, 그러한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고에서는 통합 직후 북한지역 근로자 1인당 생산이 남한의 5.4% 수준이며, 통합 10년 후에는 15%, 20년 후에는 33%, 25년 후에 50%, 30년 후에 63%, 40년 후에는 78%, 50년 후에는 88% 정도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북한지역의 생산 및 소득수준은 남한지역의 수준으로 서서히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자율 : 국채에 대한 실질이자율은 2.5%로 가정한다. 이는 통합 후 60년 동안 통일한국의 평균적인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 재정상황 및 지출소요에 대한 가정

본고에서 검토하는 재정의 범위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에 국한한다. 즉 본고에서 현재의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일단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남한의 국가부채는 남한 GDP의 33.2%인 것으로 가정한다.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GDP의 0.8% 적자인 것으로 가정한다⁵⁾. 국

4) 여기서는 일단 비교의 편의를 위해, 북한지역에서 남한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를 북한지역 인구에 포함하여 설명한 것이다.

5) GDP대비 기준으로 2005년에 1.2%, 2006년에 0.5% 적자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채에 대한 이자지출은 GDP의 1.6%이며, 이자지출을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8% 흑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대상 재정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지출은 GDP의 24.2%이며⁶⁾, 재정수입은 GDP의 25%인 것으로 가정한다.

남한지역 재정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향후에도 이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며, 통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장기적으로 남한지역의 국방지출은 GDP의 2.3%로, 경제 분야 지출은 GDP의 5.9%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관리대상 재정지출 중 이자지출, 국방지출, 경제 분야 지출을 제외한 지출은 장기적으로 GDP의 16%가 되는 것이다.

조세체계의 통합은 가시적인 시계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도 남한지역보다 GDP 대비 비율로 낮기는 하지만 적절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추가재정에서의 지출 소요 중 이자지출을 제외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항목별 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 (1) 국방 : 본고에서는 통일한국의 국방비가 통일한국 GDP의 2.3%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이러한 지출로는 통합 직후에 북한군대의 해체 및 군대의 재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뒤에 언급하는 일시적인 기타지출 소요에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경제분야 : 경제분야 지출은 북한지역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통합 직후에 매우 높고 이후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하락하여 일정한 수준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에서와 동일한 5.9%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북한지역 1인당 소득이 1백만원인 시점에서는 북한지역 GDP의 100%에 해당되는 지출을 하고, 소득이 2백만원이 되는 시점에서는 50% 등으로 그 비율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다.
- (3) 공공서비스 지출 : 북한지역에서의 1인당 소득(소득보전액을 포함한 소득) 대비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액이 남한지역에서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의 1인당 지출액은 남한지역에서의 1인당 지출액보다는 상당히 낮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초기 수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든, 남북한 두 지역의 소득이 동일해지는 시점에서는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액도 동일해지도록 증가율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의 공공서비스 지출은 국방, 경제, 이자지출 등만을 제외

조세체계의 통합은 가시적인 시계 내에서는 인위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도 남한지역보다 GDP 대비 비율로 낮기는 하지만 적절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6) 국민계정 기준 일반정부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05년에 28.9%, 2006년에 30.2% 정도 된다. 사회보장성 기금으로부터의 지출을 제외한 정부지출은 2005년에 25.0%, 2006년에는 25.9% 정도 된다. 이자지출은 2005년에 1.5%, 2006년에 1.6% 정도 된다. 사회보장성 기금과 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지출은 2005년에는 23.5%, 2006년에는 24.3% 정도 된다.

통일 직후에 북한지역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액은
남한지역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액의 약 34% 정도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한 포괄적인 재정지출을 의미하며, 교육, 의료 등은 물론이고 관리대상 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통상적인 사회보호까지 포함한다. 이에 해당되는 남한지역에서의 지출은 남한지역 GDP의 16%로 가정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이 남한지역과 동일해지는 시점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지출의 북한지역 GDP 대비 비율도 16%가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일단 통일 직후에 북한지역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액은 남한지역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액의 약 34% 정도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4) 소득보전 : 편의상 북한지역에서의 소득보전 및 사회보장지출을 “통상적인 사회보호 지출”과 “남북 소득격차 해소 위한 추가적인 이전지출”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 중 통상적인 사회보호 지출은 여기서 언급하는 소득보전 항목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지출의 일부로 간주한다. 북한지역의 1인당 생산성이 남한지역의 50% 정도 되는 시점까지 북한지역에 대해 소득보전을 하되, 북한지역의 1인당 생산능력이 남한지역의 5% 되는 시점에서 북한지역 GDP의 약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5) 기타 일시적 지출 : 위에 언급한 항목의 지출, 즉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외에도 통합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외채무 전액을 통일한국이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지출도 기타 일시적 지출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Ⅶ. 모의실험 결과 및 논의

위에서 제시한 일련의 가정하에서 추가재정 지출의 북한지역 GDP 대비 비중은 통합 직후에 약 400% 정도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23%대까지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통합 직후에는 체제전환 및 통합에 소요되는 일시적인 지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러한 지출은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지역에서의 경제분야 및 소득보전, 그리고 공공서비스 지출의 북한지역 GDP 대비 비율이 하락한다.

통합 후 약 20년 동안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북한지역 소득이 남한지역 소득의 약 50%가 되는 시점에서는 북한지역 GDP 대비 추가지출의 비중은 약 30% 정도로 하락한다. 이 시점에서는 소득보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지출이 대

부분 소멸되고, 경제분야 지출도 대폭 하락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재정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남한지역에서보다 약 6~7%포인트 정도 높게 유지되는 것은 주로 공공서비스 지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지역의 소득은 남한지역의 약 50% 정도인데,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에서의 1인당 지출은 남한지역의 약 70%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추가재정 지출의 남한지역 GDP 대비 비율은 통합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매년 남한지역 GDP의 12%대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락하여 통합 후 10년 정도 경과하면, 7%대까지 하락하지만, 일정시점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는 추가재정 지출의 북한지역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지역 GDP 대비 북한지역 GDP의 비율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이 지출소요액의 정확한 산정에 있지 않지만, 이러한 가정이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는 수치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언급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는 연간 남한 GDP의 2~25%로 그 범위가 매우 넓기는 하지만, 최근에 해외 연구기관에서 추정된 것을 보면, 바클레이스(2000)에서는 4~5%, HSBC(2003)에서는 4.4%, 피치스(2003)에서는 3~4% 정도로 추정된 바 있다. 본고에서 지출에 대한 추정치는 통합 직후에 12%라는 점에서, 상기 해외 연구들에 비하면 상당히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의 지출 추정치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국내 연구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거나 오히려 약간 큰 편이다. 물론 국내 연구도 연구자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KDI(1991)의 경우에는 10% 내외, 박태규(1997)의 경우에는 7.5~11.3% 정도, 고일동(1997)의 경우에는 9% 내외 정도로 추정된 바 있다. 다만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1990년대가 아닌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후 남북한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본고에서의 지출소요는 실질적으로는 상기 국내 연구들에서의 추정치에 비해서는 오히려 다소 작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상기 연구들에 비해서는 다소 덜 급진적인 통합방안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방식은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⁷⁾.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통일비용을 단기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 인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지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는

연간 남한 GDP의 2~25%로

그 범위가 매우 넓지만, 최근

바클레이스(2000)에서는 4~5%,

HSBC(2003)에서는 4.4%,

피치스(2003)에서는 3~4%

정도로 추정된 바 있다.

7) 통일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북한 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통일비용은 주로 일정기간 동안의 재정지출소요의 합 등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와 같이 소득격차가 커서 소득수준의 수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개념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을
상향조정하여 국가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률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상당기간 동안 인상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않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통일로 인한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조세부담을 상향조정하여 국가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률 인상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세부담은 상당기간 동안 인상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위에서 택한 기준선 가정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포인트 정도의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통합 후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은 통합 이전에 비해 2%포인트 상향조정하면, 국가부채비율은 일정 기간 동안은 상승하지만, 점차 하락하여 통합 후 60년 후에는 통합시점 수준으로 복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제반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북한지역의 성장률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본 모의실험의 결과는 통합 후 50~60년 내에 북한지역 근로자의 생산성이 남한지역 근로자의 80~90% 정도에 근접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재정수입의 폭을 2% 내외로만 설정하더라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의 소득수준에 수렴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의 상향조정 폭은 당연히 그보다 커진다.

이자율 및 남한지역의 성장률도 재정상황 전망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채이자율이 기준선에서보다 약 1%포인트 더 높게 유지된다면, 조세부담률 상향조정 폭도 기준선보다 약 0.6%포인트 정도 더 높아야 국가부채비율이 기준선에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지역 성장률이 기준선보다 매년 1%포인트 정도 낮다면, 추가적으로 재정수입을 GDP의 0.6%포인트 정도 인상하여야 기준선에서와 동일한 정도의 국가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본고에서는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의 확대는 국가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한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북한지역에 잔류하는 인구보다도 더 빨리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결과는 북한지역으로부터 남한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남한지역에서의 복지체제에 안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VII. 결론

한국에서 독일식의 급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제도 자체가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급진적인 통합에 따른 충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로 인한 충격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북한이 빠른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한 소득격차가 충분히 해소되어 통일에 따른 충격이 충분히 줄어들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남북한 소득격차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전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 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통합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는 남북한 통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급진성이 수용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타 분야의 경제통합은 모두 급진적으로 추진하되 사회제도와 조세제도의 통합은 장기간 유보하는 경우에, 통합이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통합방식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부담의 상향조정 폭은 독일식의 급진적인 통합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작아진다. 본고의 기준선 전망에서는 통합 후 60년 동안 조세부담률을 약 2%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러한 결과는 제반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에 제시한 수치에 대해 절대적 의미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정책 가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통합 후 북한지역의 성장에 관한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합 후 50~60년 내에 북한지역의 생산성이 남한지역의 80~90% 정도까지 수렴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만약, 통합 이후에 북한지역의 소득이 남한지역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그보다 더 느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부담 상향조정 폭은 그보다 더 커질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가정이 통합 이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다. 통합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지출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북한이 빠른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한
소득격차가 충분히 해소되어
통일에 따른 충격이 충분히
줄어들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본고의 성격은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현가능한 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검토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경제분야 지출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처럼 중요하지는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지출 규모이며, 결국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 통합에 대한 가정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가정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하는 북한지역 출신 주민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지역의 1인당 공공서비스 지출을 남한지역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남한지역으로 이주하는 북한지역 출신 주민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남한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매우 커지고, 전반적인 상황이 본고에서 분석한 것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혹은 인구이동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두 지역에서 1인당 공공지출 수준을 차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들이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다소 낙관적인 결과는 유보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성격은 실현가능한 통합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현가능한 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검토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떠한 통합방안이 재정 측면에서 수용가능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P**

<참고문헌>

박태규, 「한반도 통일에 따른 소요비용의 추계와 자원조달방안」, 『한반도 통일 시의 경제통합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7.
 조동호,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걱정임금: 북한노동력의 질에 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1993.
 최준욱, 『남북경제통합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8.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_____, 『장래인구 추계결과』, 2006.
 한국은행, 『북한 GNP 추계결과』, 연도별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 탄력성 추정



김지영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ykim@kipf.re.kr)

I. 서론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변화협약 2007 발리로드맵에 따라 2013년부터 2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이나,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화석연료의 실질적인 가격을 높여 에너지 사용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필요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화석연료의 사용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에너지원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 등의 분석은 이러한 정책 디자인에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석유, 전력, 석탄, 도시가스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2007년 기준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원은 석유로 전체 에

에너지 사용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수요 구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필요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석유가 50% 이상으로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너지 소비의 약 55.7%(100,549ktoe¹⁾)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석유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력으로, 2007년 전체 에너지 소비의 17.6%(31,700ktoe)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은 2007년 기준으로 약 23,497ktoe가 소비되었으며, 이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3.0% 비중을 차지한다. 도시가스는 2007년 총 18,865ktoe가 소비되었으며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0.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기타 에너지원의 비중이 3.3% 정도이다.

석유가 50% 이상으로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7%를 차지하는 전력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발전되는 전력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에너지원별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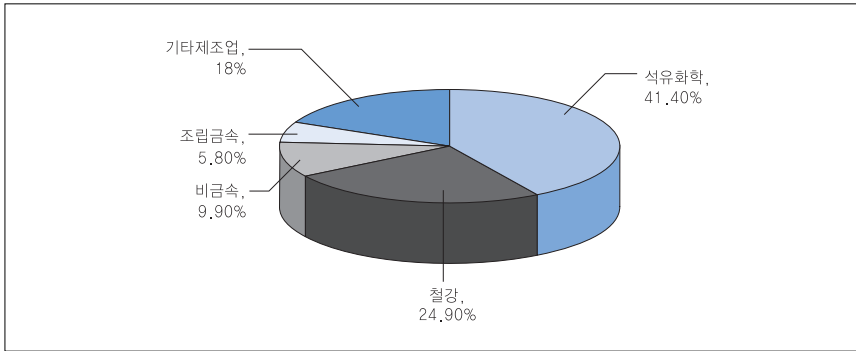
(단위: ktoe, %)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최종에너지계	38,952	46,998	75,107	121,962	149,852	170,854	173,584	180,543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석탄 계	14,478	17,940	19,855	17,758	19,847	22,311	22,660	23,497
(비중)	(37.2)	(38.2)	(26.4)	(14.6)	(13.2)	(13.1)	(13.1)	(13.0)
무연탄	9,571	11,632	9,194	2,011	2,011	3,874	4,313	4,394
유연탄	4,906	6,308	10,661	15,748	17,836	18,438	18,347	19,103
석유 계	18,912	22,580	45,252	82,876	93,596	96,718	97,037	100,549
(비중)	(48.6)	(48.0)	(60.3)	(68.0)	(62.5)	(56.6)	(55.9)	(55.7)
에너지유	15,471	17,360	34,991	59,100	53,369	48,744	47,088	46,534
LPG	500	1,424	3,368	5,445	8,333	9,348	9,608	10,010
비에너지유	2,942	3,795	6,893	18,331	31,893	38,626	40,342	44,005
도시가스	23	84	1,011	5,594	12,561	17,811	18,379	18,865
(비중)	(0.1)	(0.2)	(1.3)	(4.6)	(8.4)	(10.4)	(10.6)	(10.4)
전력	3,046	4,363	8,117	14,041	20,600	28,588	29,990	31,700
(비중)	(7.8)	(9.3)	(10.8)	(11.5)	(13.7)	(16.7)	(17.3)	(17.6)
기타	2,492	2,031	872	1,692	3,248	5,426	5,517	5,932
(비중)	(6.4)	(4.3)	(1.2)	(1.4)	(2.2)	(3.2)	(3.2)	(3.3)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1) ktoe(kilo tonnage of oil equivalent) :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그림 1] 제조업 산업별 에너지 소비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 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전력으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에너지의 수요탄력성이 어떠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조업은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송부문과 가정상업부문 등을 포함한 전체 소비 에너지 중에서도 약 50%에 이르는 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상위 3개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산업은 제조업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7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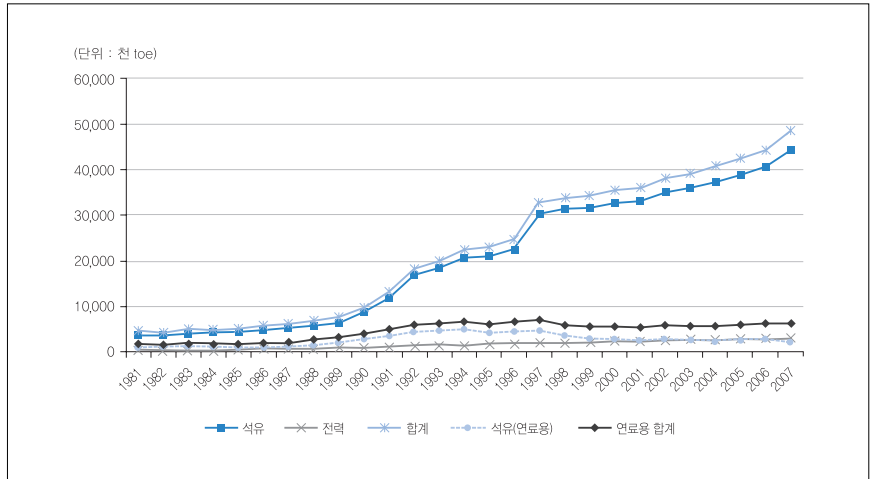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이들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 전력, 석탄, 도시가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환경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지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타 에너지원을 포함하는 에너지 수요함수를 분석해야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도입된 시기가 오래 되지 않고 규모가 작아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제외하였다.

II. 산업별 에너지 소비 추이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 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전력으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력의 소비량이
전체 연료용 에너지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거 추이를 살펴봤을 때
석유에서 도시가스나 전력으로
에너지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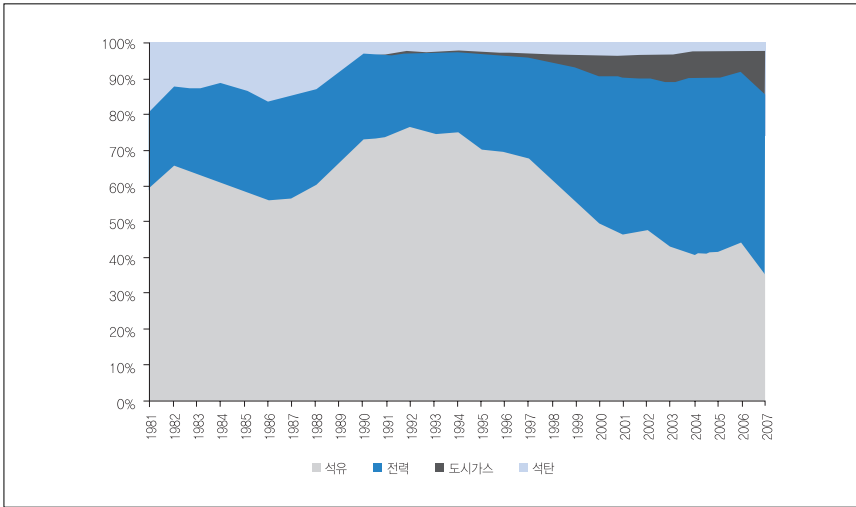
[그림 2] 석유화학업종의 에너지 소비추이(원료용 포함)



석유화학업종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석유의 소비량이 2007년 기준 44,463ktoe로 전체 소비량 48,486ktoe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과 도시가스는 1% 내외로 소량 소비되며, 전력은 점차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1981년 389ktoe(8.6%)에서 2007년에는 3,145ktoe(6.5%)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석유화학업종에서 소비하는 석유는 대부분 원료로 사용하는 비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연료용 에너지의 소비량을 비교할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연료용으로 소비하는 석유는 2007년 기준 2,201ktoe로 전체 연료용 에너지 6,224ktoe의 35.4% 비중을 차지한다. 오히려 전력의 소비량이 전체 연료용 에너지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과거 추이를 살펴봤을 때 석유에서 도시가스나 전력으로 에너지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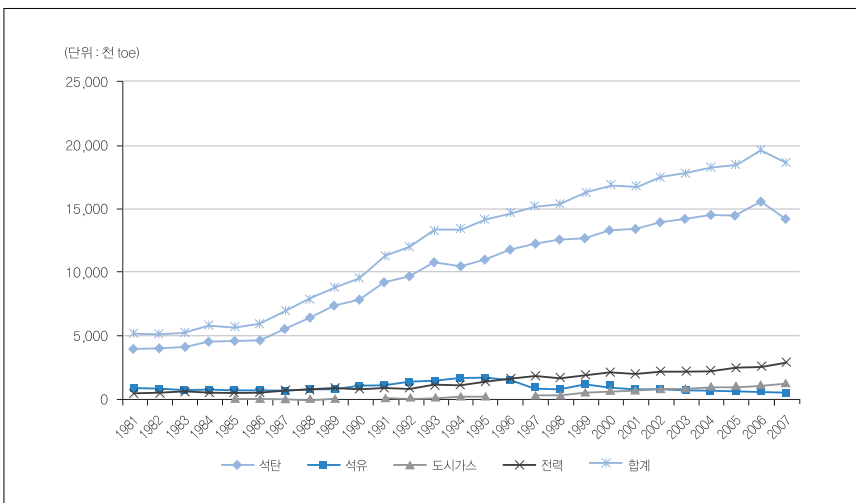
[그림 3] 석유화학업종 연료용 에너지 소비 비중



1차금속(철강)업종의 경우에는 석탄의 소비가 2007년 기준 14,202ktoe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6%에 육박하고 있다.

1차금속(철강)업종의 경우에는 석탄의 소비가 2007년 기준 14,202ktoe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76%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원료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료용 에너지 사용량만 집계하는 경우에는 석탄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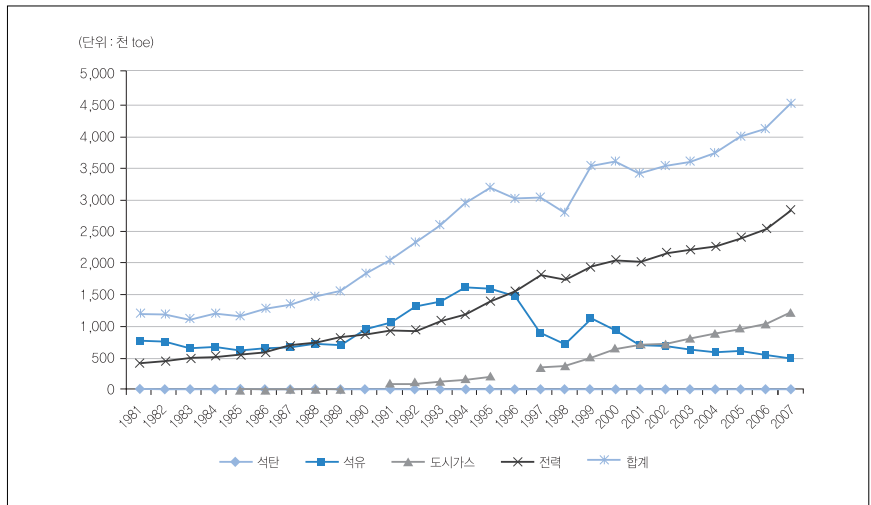
[그림 4] 1차금속(철강)업종의 에너지 소비추이(원료용 포함)



연료용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석유의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전력과 도시가스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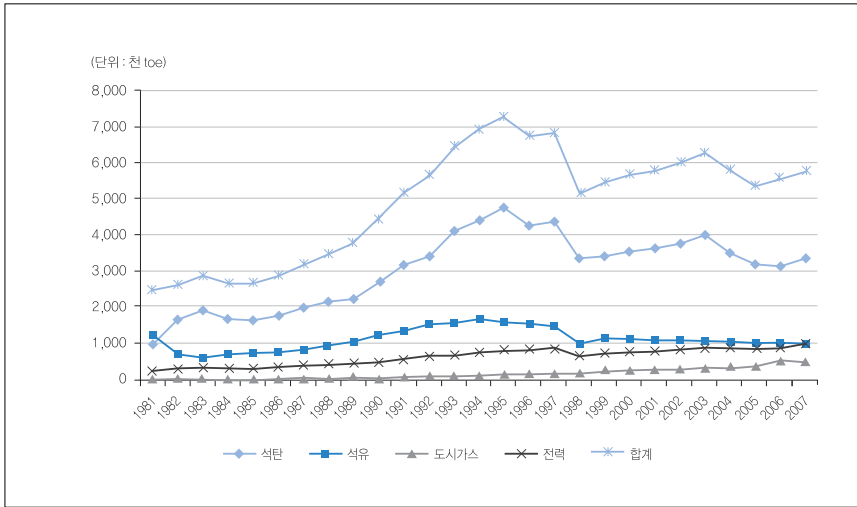
연료용 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석유의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전력과 도시가스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전력의 경우 1996년 이후에는 석유의 소비량을 추월하였으며, 2007년 기준으로 2,824ktoe가 소비되어 전체 연료용 에너지소비의 약 62.4%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스의 소비량도 2001년 이후 석유보다 더 소비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총 1,213ktoe가 소비되어 전체 연료용 에너지소비의 약 2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1차금속(철강)업종의 에너지 소비추이(원료용 제외)



비금속업종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2007년 기준 5,762ktoe이다. 에너지원 중 석탄의 소비가 2007년 기준 3,334ktoe(57.9%)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석유가 1,005ktoe(17.4%), 전력이 955ktoe(16.6%), 도시가스가 468ktoe(16.6%) 소비되고 있다. 석유는 일부 원료용으로 사용되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다.

[그림 6] 비금속업종의 에너지 소비추이(원료용 포함)



생산요소 비용함수와 에너지원별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자본, 노동, 에너지의 세 가지 생산요소로 구성되는 비용함수를 구성한다.

III. 실증분석

가. 모형

생산요소 비용함수와 에너지원별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2단계 Translog 비용함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1단계에서는 자본, 노동, 에너지의 세 가지 생산요소로 구성되는 비용함수를 구성한다. 총비용함수가 다음과 같은 비동조적(non-homothetic) 함수의 형태를 따른다고 하자.

$$\ln C = \alpha_0 + \delta_y \ln Y + \left(\frac{1}{2}\right) \delta_{yy} (\ln Y)^2 + \sum_i \beta_i \ln p_i + \left(\frac{1}{2}\right) \sum_i \sum_j \delta_{ij} \ln p_i \ln p_j + \sum_i \delta_{yi} \ln Y$$

where $i, j = k, l, e$

Shepard's lemma에 따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각 생산요소 i 에 대한 비용비중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s_i = \beta_i + \sum_j \delta_{ij} \ln p_j + \delta_{yi} \ln Y$$

where $j = k, l, e$

(1)

2단계에서는 석유, 석탄, 도시가스, 전력의 네 가지 에너지원으로 구성되는 에너지 비용함수를 구성한다.

위의 비용비중함수는 가격에 대한 1차동차성, 대칭성, $\sum_i s_i = 1$ 을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

$$\sum_i \beta_i = 1; \delta_{ij} = \delta_{ji}; \sum_i \delta_{ij} = \sum_i \delta_{ji} = 0$$

2단계에서는 석유, 석탄, 도시가스, 전력의 네 가지 에너지원으로 구성되는 에너지 비용함수를 구성한다. 에너지 비용이 각각의 에너지원 가격에 1차 동차 함수라 가정하고, 단위당 에너지 가격이 다음의 형태를 따른다고 하자.

$$\ln P_e = \sum_z \beta_z \ln p_z + \left(\frac{1}{2}\right) \sum_z \sum_x \delta_{zx} \ln p_z \ln p_x \quad (2)$$

where $z, x = o, c, g, el$

에너지원 z 에 대하여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에너지원 수요에 대한 비용비중 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s_{ez} = \beta_z + \sum_x \delta_{zx} \ln p_x \quad \text{where } x = o, c, g, el \quad (3)$$

1단계의 총비용함수와 마찬가지로, 위의 에너지원별 비용비중함수는 다음의 제약을 만족해야 한다.

$$\sum_z \beta_z = 1; \delta_{zx} = \delta_{xz}; \sum_z \delta_{zx} = 1$$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ethod를 이용하는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원별 수요의 비용비중함수 (3)을 해당 제약조건하에서 추정한다. 둘째, 추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단위당 에너지 가격 (2)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단위당 에너지 가격을 이용하여 (1)의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를 추정한다.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에서 추정된 변수들

과 비용비중 값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psilon_{ii} = \sigma_{ii} s_i \quad \text{where } \sigma_{ii} = \frac{\delta_{ii} + s_i^2 - s_i}{s_i^2} \quad (4)$$

$$\epsilon_{ij} = \sigma_{ij} s_j \quad \text{where } \sigma_{ij} = \frac{\delta_{ij} + s_i s_j}{s_i s_j} \quad \text{for } i \neq j$$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 역시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에서 추정된 변수들과 에너지원별 비용비중 값을 이용한다. 단, 총에너지 투입량 역시 가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psilon_{zz}^* = \epsilon_{zz} + \epsilon_{ee} s_{ez} \quad (5)$$

$$\epsilon_{zx}^* = \epsilon_{zx} + \epsilon_{ee} s_{ex} \quad \text{for } z \neq x$$

ϵ_{ee} 는 (4)에서 구한 총에너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나. 데이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의 가격정보가 이용가능한 1989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총비용함수의 추정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인 노동비용, 자본 스톡, 에너지비용과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생산량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의 산업별 생산액²⁾을 사용하였다. 노동비용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의 산업별 급여액(퇴직금 제외)을 사용하였으며, 노동가격은 노동비용을 월평균 종사자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자본비용(순자본스톡)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자본투자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해당연도의 순유형자산증가액 I_t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서 당해 유형자산연말잔액에서 전년도 유형자산연말잔액을 차감한 값)를 순자본투자액으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순자본스톡을 계산하였다. ($\delta = 0.05$)

$$K_t = (1 - \delta) K_{t-1} + I_t$$

(K_t : 당해연도의 순자본스톡, K_{t-1} : 전년도 순자본스톡, I_t : 해당연도의 순자본투자액)

에너지원별 가격탄력성

역시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에서 추정된 변수들과 에너지원별 비용비중 값을 이용한다.

2) 이때 생산액은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인가공(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고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을 말한다.

각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이
비용비중을 감소시킬 만큼
생산요소의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본가격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서 당해연도 부가가치³⁾에서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순자본스톡으로 나눈 값으로 사용하였다.

산업별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통계연보』의 에너지 수급밸런스표를 사용하였으며, 원료용 에너지를 제외한 연료용 에너지만을 고려하였다⁴⁾. 단,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1989년부터 제조업용 도시가스 통계를 사용하였다. 제조업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1984년부터 공식적으로 에너지 밸런스표에 기록되고 있으나, 1988년까지는 수치가 일관성이 없고 사용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에너지 가격 자료는 박창수(2003)가 사용한 방식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전력가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전력통계연보』 및 『전력통계속보』를, 도시가스 가격은 도시가스협회의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및 『도시가스사업편람』을 이용하였다. 석유가격은 대한석유협회의 『석유연보』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였는데, 석유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을 사용하였다. 석탄가격은 가격 자료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변수로서 통계청의 유연탄 수입가를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은 고유단위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toe 기준의 가격으로 전환하였다.

IV. 추정결과

1단계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의 추정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본가격이 증가할수록 자본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노동가격이 증가할수록 노동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에너지가격이 증가할수록 에너지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각 생산요소의 가격 상승이 비용비중을 감소시킬 만큼 생산요소의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산량이 각각의 생산요소 비용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요소별로 다르다. 자본비용비중은 생산량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비용비중과 에너지비용비중은 생산량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상의 부가가치는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하며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 같지 않다.

4) 원료용 에너지는 코킹콜(coking coal), 석유 중 비에너지유(납사 등), 유연탄 중 연료탄 등을 의미한다.

〈표 2〉 생산요소 비용비중함수

자본 비용비중(s_k)		노동 비용비중(s_l)		에너지 비용비중(s_e)	
β_k	-0.056 (0.106)	β_l	0.608*** (0.073)	β_e	0.448*** (0.082)
δ_{kk}	-0.007 (0.017)	δ_{lk}	0.049*** (0.010)	δ_{ek}	-0.042*** (0.014)
δ_{lk}	0.049*** (0.010)	δ_{ll}	-0.046*** (0.010)	δ_{el}	-0.003*** (0.012)
δ_{ek}	-0.042*** (0.014)	δ_{le}	-0.003*** (0.012)	δ_{ee}	0.045*** (0.020)
δ_{yk}	0.034*** (0.006)	δ_{ye}	-0.017*** (0.004)	δ_{ye}	-0.017*** (0.082)

이를 바탕으로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

stock price changes		labor price changes		energy price changes	
ϵ_{kk}	-0.885	ϵ_{lk}	0.007	ϵ_{ek}	0.001
ϵ_{kl}	0.157	ϵ_{ll}	-0.648	ϵ_{el}	0.091
ϵ_{ke}	0.018	ϵ_{le}	0.058	ϵ_{ee}	-0.495

각 생산요소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비탄력적이었다. 에너지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본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이제 생산요소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을 살펴보자. 모든 생산요소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었다. 이는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 또는 보완성이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본가격에 대한 노동수요의 탄력성, 노동가격에 대한 자본수요의 탄력성 및 노동가격에 대한 에너지수요의 탄력성과 에너지가격에 대한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모두 양(+)의 값으로, 노동과 자본, 노동과 에너지가 서로 대체재임을 나타낸다. 에너지와 자본 역시 각각의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양(+)의 값을 나타내어 대체관계에 있다.

2단계 에너지원 비용비중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4〉에 나타내었다.

모든 생산요소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었다. 이는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 또는 보완성이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석유의 가격이 상승할 때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다른 에너지원인 석탄, 도시가스, 전력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표 4〉 에너지원별 비용비중함수

석유비용 비중(s_{eo})		석탄비용 비중(s_{ec})		가스비용 비중(s_{eg})		전력비용 비중(s_{eel})	
β_o	0.337*** (0.081)	β_c	0.201 (0.223)	β_g	0.054 (0.047)	β_{el}	0.408 (0.237)
δ_{oo}	0.001 (0.036)	δ_{co}	-0.007 (0.034)	δ_{go}	0.052*** (0.010)	δ_{elo}	-0.046 (0.042)
δ_{oc}	-0.007 (0.034)	δ_{cc}	0.066 (0.096)	δ_{gc}	-0.024 (0.016)	δ_{elc}	-0.035 (0.098)
δ_{og}	0.052*** (0.010)	δ_{cg}	-0.024 (0.016)	δ_{gg}	-0.020 (0.022)	δ_{elg}	-0.049 (0.029)
δ_{oel}	-0.046 (0.042)	δ_{cel}	-0.035 (0.098)	δ_{gel}	-0.049 (0.029)	δ_{eel}	0.129 (0.111)

모든 에너지원에 대하여, 각각의 에너지원 가격이 상승했을 때 해당하는 에너지원의 비용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가격탄력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에너지원의 자기가격탄력성과 교차가격탄력성을 구하였다. 식 (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에너지원 가격의 변화는 주어진 에너지비용 내의 에너지원별 사용구조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투입되는 총에너지의 비중 역시 변화시키게 된다. 가격탄력성은 이러한 총에너지비중의 변화를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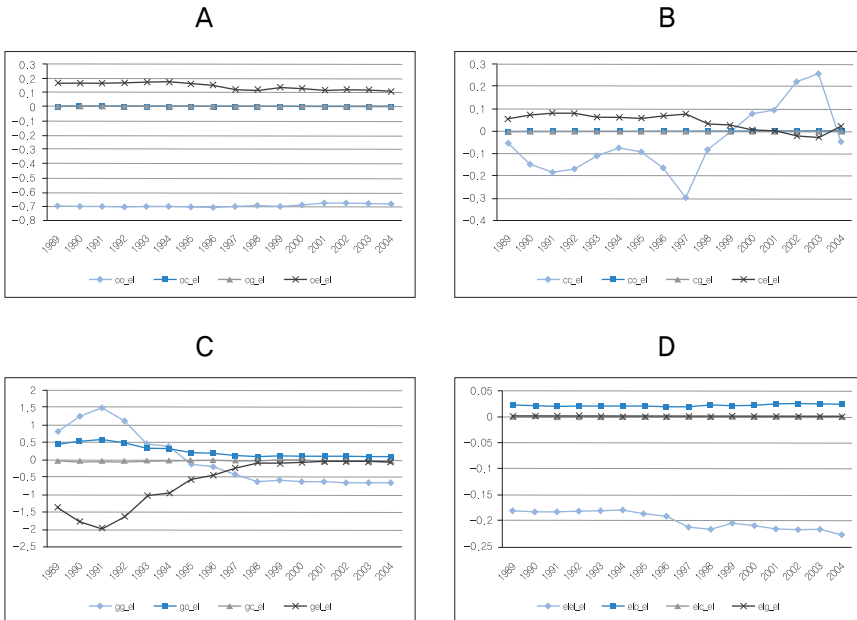
온실가스 다량배출 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의 가격 상승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중심으로 탄력성 추정 결과를 살펴보자. 석유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비탄력적이었다.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음을 뜻한다. 또한 에너지원 간의 교차가격탄력성 역시 모두 비탄력적이었다. 석유의 교차가격탄력성은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석유의 가격이 상승할 때 석유 수요가 감소하는 동시에 다른 에너지원인 석탄, 도시가스, 전력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석탄의 경우에는 석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와 전력 소비는 증가하지만, 가스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표 5〉 에너지원별 수요의 가격탄력성

석유 가격 변화		석탄 가격 변화		도시가스 가격 변화		전력 가격 변화	
ϵ_{oo}	-0.693	ϵ_{co}	0.001	ϵ_{go}	0.150	ϵ_{elo}	0.021
ϵ_{oc}	0.0003	ϵ_{cc}	-0.074	ϵ_{gc}	-0.003	ϵ_{elc}	0.0001
ϵ_{og}	0.0003	ϵ_{cg}	-0.0004	ϵ_{gg}	-0.452	ϵ_{elg}	-0.000
ϵ_{oel}	0.144	ϵ_{cel}	0.043	ϵ_{gel}	-0.216	ϵ_{elel}	-0.199

대부분의 교차탄력성은 0.1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에너지원 간의 대체관계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7〉 에너지원의 연도별 가격탄력성 및 교차가격 탄력성



주: A: 석유의 가격탄력성 및 교차탄력성, B: 석탄의 가격탄력성 및 교차탄력성, C: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 및 교차탄력성, D: 전력의 가격탄력성 및 교차탄력성

에너지원의 탄력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여 탄력성을 계산하였다. 석유와 전력의 가격탄력성 및 교차탄력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석유의 가격탄력성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전력의 가격탄력성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석탄의 경우 가격탄력성의 변동이 심한데, 1997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은 도시가스 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값을 보이다가, 1995년부터 음(-)의 값을 가지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0.6

석유의 상대가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석유 수요를 도시가스 및 전력 수요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차탄력성은 0.1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에너지원 간의 대체관계가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제조업 에너지 소비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비금속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추세를 살펴보고, 총비용함수와 에너지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수요를 포함한 생산요소의 가격탄력성과 주요 에너지원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도출하였다.

총에너지 비중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에너지원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석유, 석탄, 도시가스, 전력에 대해 각각 -0.693 , -0.074 , -0.452 , -0.199 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차가격 탄력성은 석유-전력 탄력성, 석유-가스 탄력성, 가스-전력 탄력성을 제외하고는 절대값이 모두 0에서 0.021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에너지원 간의 대체성이나 보완성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석유의 교차가격탄력성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석유의 가격의 상승이 석유 수요의 감소와 다른 에너지원인 석탄, 도시가스, 전력 등 대체 에너지원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석유의 상대가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하여 석유 수요를 도시가스 및 전력 수요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탄의 경우에는 석탄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와 전력 소비는 증가하는 대신 가스 소비는 감소하게 되어, 그 효과가 불확실하다.

물론 에너지원 간의 교차탄력성이 비탄력적인 현재의 에너지 사용구조를 고려할 때, 에너지원의 대체관계를 증진시키거나 생산비용 구조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보완이 성공적인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변화가 모형에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본 실증분석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기술발전은 에너지 효율성을 변화시켜, 총에너지 수요와 에너지원별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기술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를 포함하여 에너지원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원 상대가격의 변화와 기술 지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IP

<참고문헌>

- 김수이,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탄소세의 산업별 실효성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11.
- 김수일, 『계량경제모형을 통한 발전부문의 연료대체에 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06.
- 박광수,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 박창수, 『산업부문내의 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 표학길,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스톡추계(1954~1996)』, 한국조세연구원, 1998.6.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통계』, 각 연도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일고: OECD자료를 이용한 현황 및 실증분석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kim@kipf.re.kr)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의 규모 및 그 구조가 어떠한 동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 서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극적인 금융구제책과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재정지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각 나라마다 수행되어온 재정지출확대는 차후에 재정수입확대를 통해 보완되어 재정건전화 유지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작금의 우리나라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향후 조세수입의 반응이 어떠한 방향을 잡아야 하며 또한 그 규모는 어떠한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의 규모 및 그 구조가 어떠한 동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조세규모 및 조세구조(tax mix)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시론적인 분석은 향후 추진될 조세정책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에 대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조세믹스의 현황을 OECD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국가별, 세목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관찰함으로써 논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조세믹스를 결정하는 경제사회적인 변수들을 살펴볼 것이다. OECD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회귀분석함으로써 조세믹스를 결정하는 변수들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시사점 및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II. 현황

조세부담률(tax ratio)은 'GDP 대비 총 조세수입'으로 정의된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표 1>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나라 조세규모 및 조세구조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 비중까지 합한 국민부담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지만 조세부담률 자체의 증가에도 기인한다¹⁾.

그러나, <표 1>은 조세부담 규모만이 아니라 조세구조 또는 조세믹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GDP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관련세 또는 소비세가 감소하고 재산관련세와 소득관련세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1> 우리나라 조세의 규모와 구조 추이(1980~2005년)

(단위: %, 달러, 만명)

연도	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사회보장 기여금	소득 관련세	재산 관련세	상품 관련세	1인당 국민소득	인구수	노인 부양율
1980	17.2	17.1	0.2	4.4	1.4	10.8	3,221	3,810	6.1
1981	17.0	16.8	0.2	4.4	1.4	10.5	3,367	3,870	6.2
1982	17.3	17.1	0.2	4.6	1.6	10.5	3,558	3,930	6.2
1983	17.7	17.5	0.2	4.3	1.7	11.0	3,884	3,990	6.3
1984	16.8	16.5	0.2	4.1	1.6	10.3	4,147	4,040	6.4
1985	16.4	16.1	0.2	4.3	1.5	9.7	4,386	4,080	6.5
1986	16.0	15.7	0.3	4.2	1.4	9.6	4,807	4,120	6.6
1987	16.4	16.1	0.3	4.8	1.5	9.4	5,291	4,160	6.8
1988	16.4	15.7	0.6	5.0	1.6	8.5	5,798	4,200	6.9
1989	17.3	16.5	0.7	6.0	1.9	8.2	6,130	4,240	7.1
1990	18.9	17.9	1.0	6.5	2.4	8.8	6,615	4,290	7.2
1991	18.5	17.6	1.0	5.8	2.5	8.2	7,169	4,330	7.4
1992	18.5	17.4	1.1	5.8	2.5	8.4	7,522	4,370	7.6
1993	19.0	17.3	1.6	5.7	2.8	8.3	7,912	4,410	7.8
1994	19.4	17.8	1.6	5.9	2.9	8.4	8,511	4,450	8.0
1995	19.4	18.1	1.4	6.2	2.9	8.4	9,159	4,510	8.3
1996	20.0	18.4	1.7	6.0	2.7	8.8	9,707	4,550	8.6
1997	21.0	18.0	3.0	5.5	2.7	9.0	10,064	4,600	8.9
1998	21.1	17.5	3.5	6.4	2.3	8.0	9,306	4,630	9.3
1999	21.5	17.8	3.7	5.3	2.9	8.6	10,117	4,660	9.8
2000	23.6	19.6	3.9	6.8	2.9	9.0	10,884	4,700	10.2
2001	24.1	19.7	4.4	6.4	2.8	9.5	11,220	4,740	10.8
2002	24.4	19.8	4.6	6.2	3.1	9.5	11,936	4,760	11.4
2003	25.3	20.4	4.9	7.1	3.0	9.4	12,245	4,780	12.0
2004	24.6	19.5	5.1	6.9	2.8	8.9	12,762	4,810	12.5
2005	25.6	20.3	5.4	7.5	3.1	8.8	13,210	4,830	13.1

주: 이명(2008)에서 인용함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GDP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관련세 또는 소비세가

감소하고 재산관련세와

소득관련세가 증가하였다.

1) 조세부담률의 결정에 대한 연구는 박형수(2004)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세믹스에 대한 문헌인 Chelliah(1989)에 의하면 경제발전이 따라 소득세 같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비세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표 1>은 인구 수와 노인부양률의 추이 또한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연구분야나 정책현실에서는 노인부양률의 증가가 향후 조세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조세구조에 대한 인구학적 분석이 진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조세믹스에 대한 문헌인 Chelliah(1989)에 의하면 경제발전이 따라 소득세 같은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비세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향후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Engen and Skinner(1999)에 의하면 반대로 조세정책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1986년에 미국에서 단행된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과 그 이후 1990년대에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공조화(harmonization) 또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세믹스 또는 조세구조를 OECD분류법에 따라 개인소득세(RS1100), 법인소득세(RS1200), 사회보장세(RS2000), 지급급여세(RS3000), 재산세(RS4000), 소비세(RS5000), 국제무역세(RS5123과 RS5124), 기타조세 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즉, 총 조세수입의 주요 요소를 다음의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T = IIT + CIT + ST + WT + PT + CT + TT + OT \quad (1)$$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식 (1)의 각 요소들은 각각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 Tax), 지급급여세(Payroll or Wage Tax), 재산세(Property Tax), 소비세(Consumption Tax), 국제무역세(Trade Tax), 기타조세(Other Tax) 등을 나타낸다.

1965년부터 2005년까지 OECD국가들의 조세믹스를 평균적으로 관찰하면 <표 2>와 같다. 개인소득세가 28%, 법인소득세가 8.3%, 사회보장세가 22.9%, 지급급여세가 1.1%, 재산세가 5.9%, 소비세가 29.9%, 국제무역세가 1.1%, 그리고 기타조세가 2.5%이다.

〈표 2〉 OECD국가의 세수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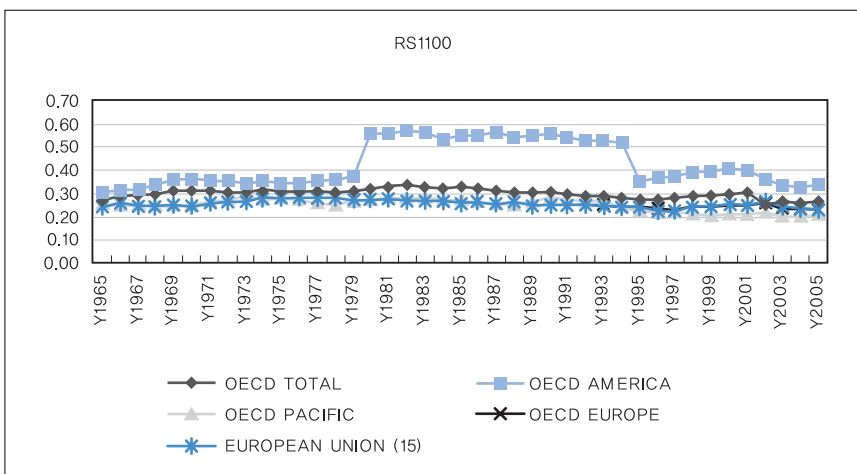
세수비중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고치
개인소득세	1041	28	12	0	62
법인소득세	1041	8	5	0	43
사회보장기여금	1081	23	13	0	114
지급급여세	1080	1	2	0	43
재산세	1081	6	4	0	21
소비세	1056	30	9	12	112
국제무역세	1077	1	4	0	24
기타조세	1056	3	4	0	35

개인소득세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그 격차가 컸으나 격차가 감소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에 따라 상이한 조세믹스를 갖고 있으며, 한 나라의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림 1]은 OECD국가들 전체 또는 부분집합의 세목별 비중 추이를 나타낸다. OECD Ameri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나타내고, OECD Pacific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다. OECD Europe과 EU는 그에 상응한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그 격차가 컸으나 격차가 감소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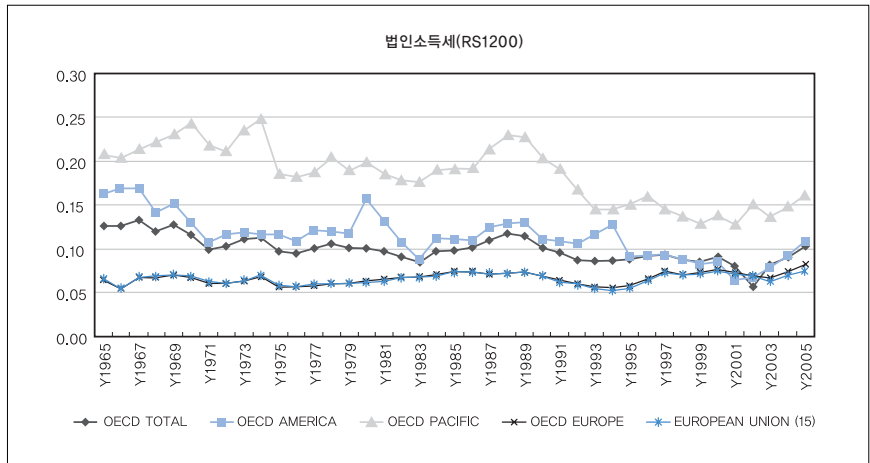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소득세(RS1100)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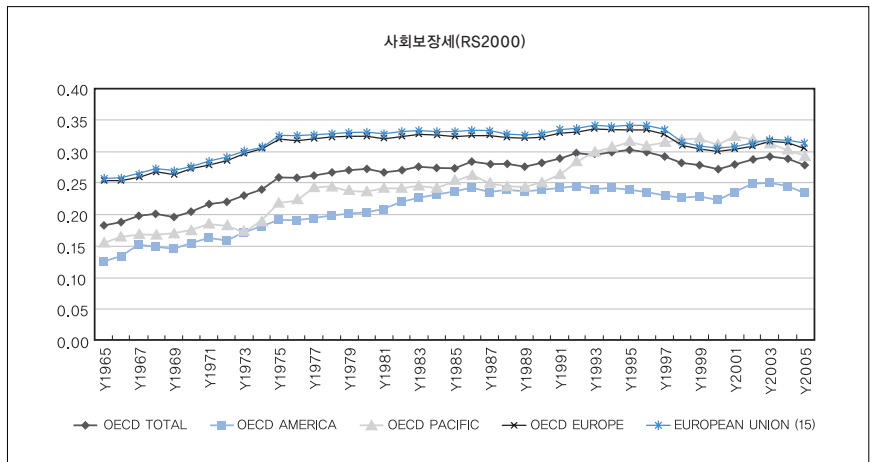
법인소득세의 경우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법인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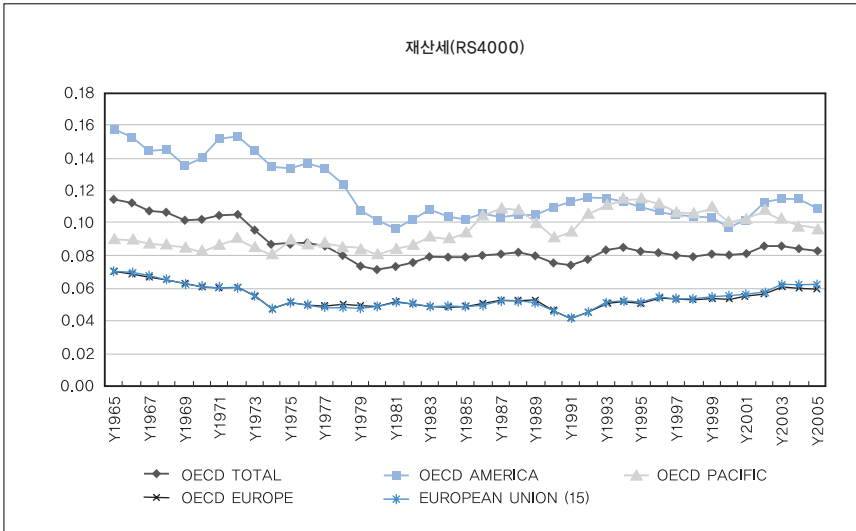
법인소득세의 경우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법인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2] 법인소득세(RS1200)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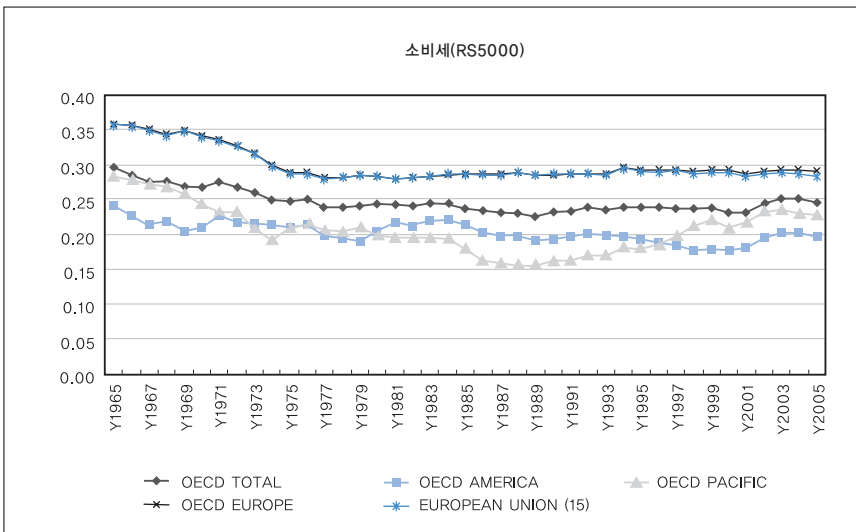


[그림 3] 사회보장세(RS2000), 재산세(RS4000), 소비세(RS5000)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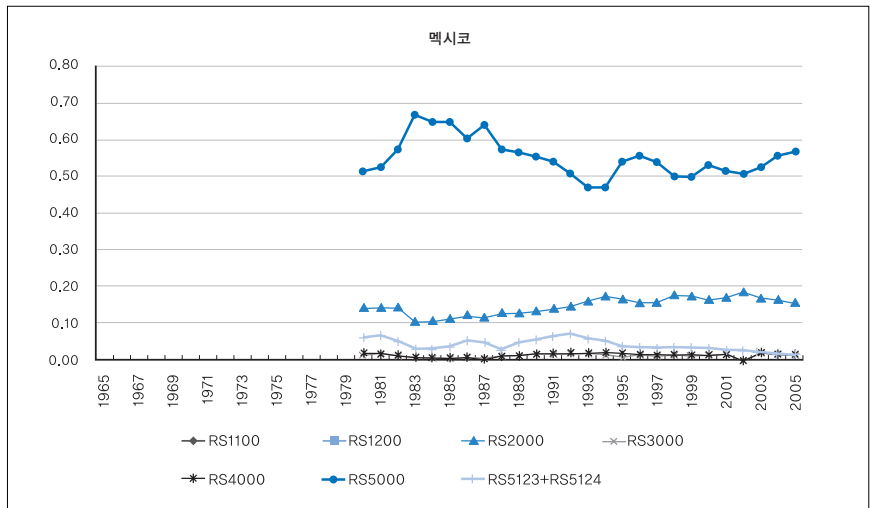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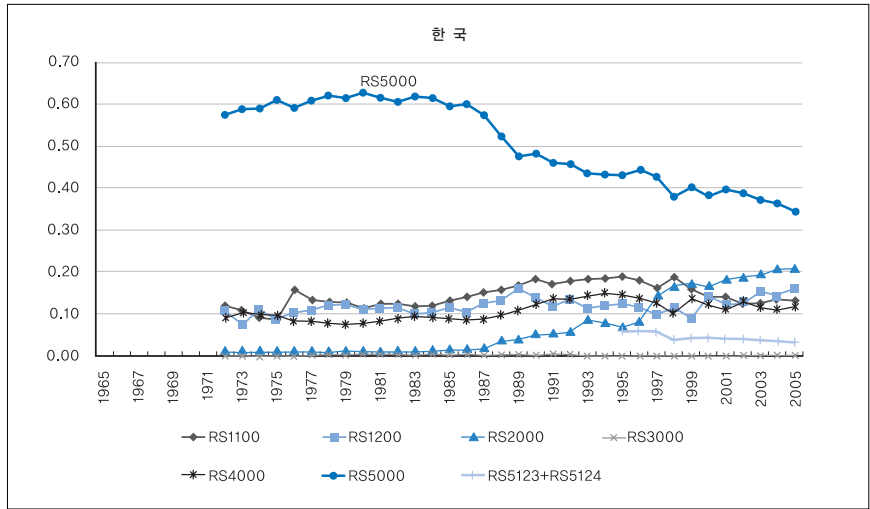
사회보장세, 재산세, 소비세의 비중을 보면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간에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에 의하면, 사회보장세, 재산세, 소비세의 비중을 보면 유럽국가와 비유럽국가 간에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럽국가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 일찍부터 구비되어 그 비중이 OECD평균을 상회하였고 소비세의 비중 또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재산세의 비중이 유럽국가의 경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GDP 대비 상대적 재산총액 자체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세부담의 최적화를 위해 저세율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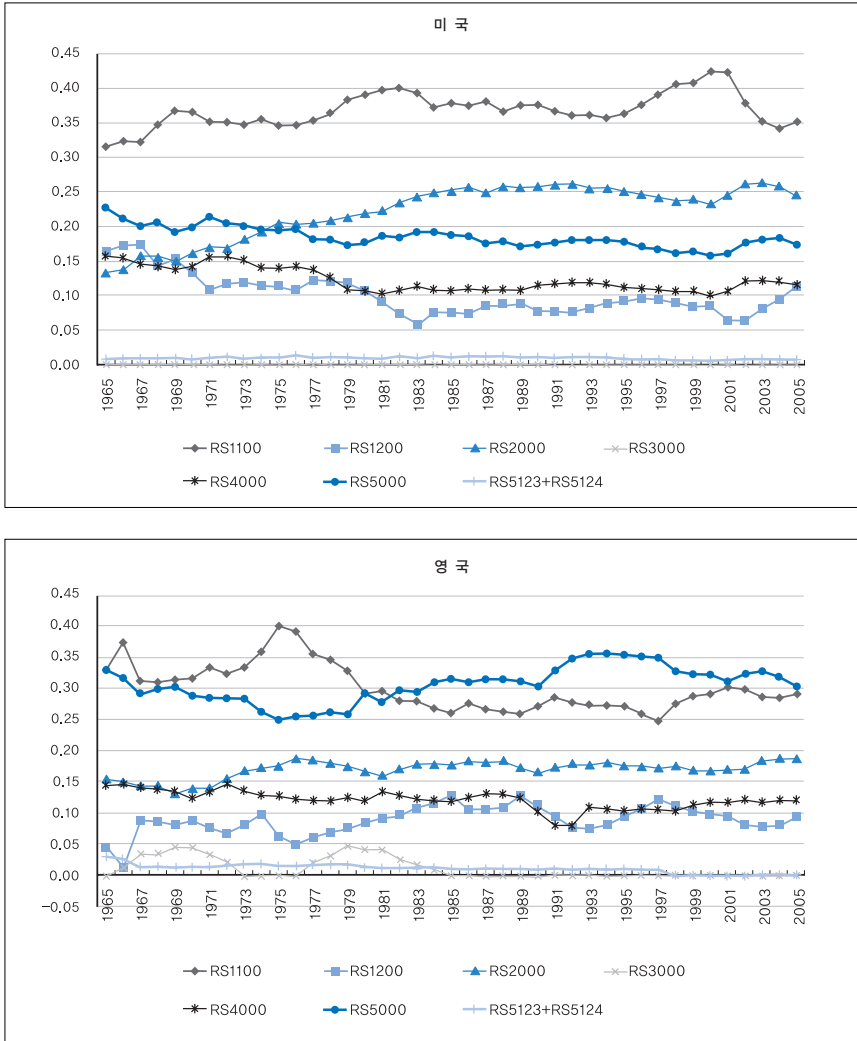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그 비중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세믹스의
주요 방향으로 인식되는
소비세 비중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조세믹스



[그림 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도 그 비중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세믹스의 주요 방향으로 인식되는 소비세 비중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의 경우 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50~60%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5] 미국과 영국의 조세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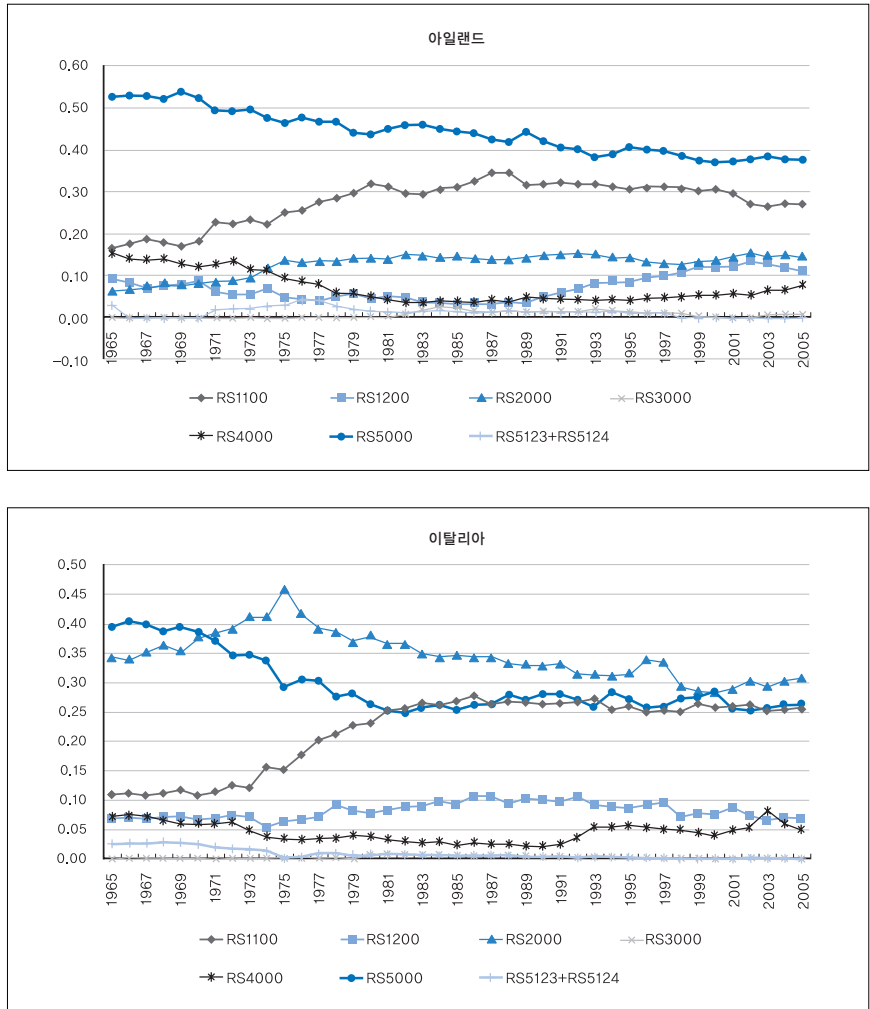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은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주요세목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림 5]는 미국과 영국의 조세믹스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소득세의 세수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은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주요세목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물론 영국도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20% 정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보장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사회보장세의 비중 및
 그 추이는 상이하지만
 두 나라 모두 소비세 비중의
 감소와 개인소득세 비중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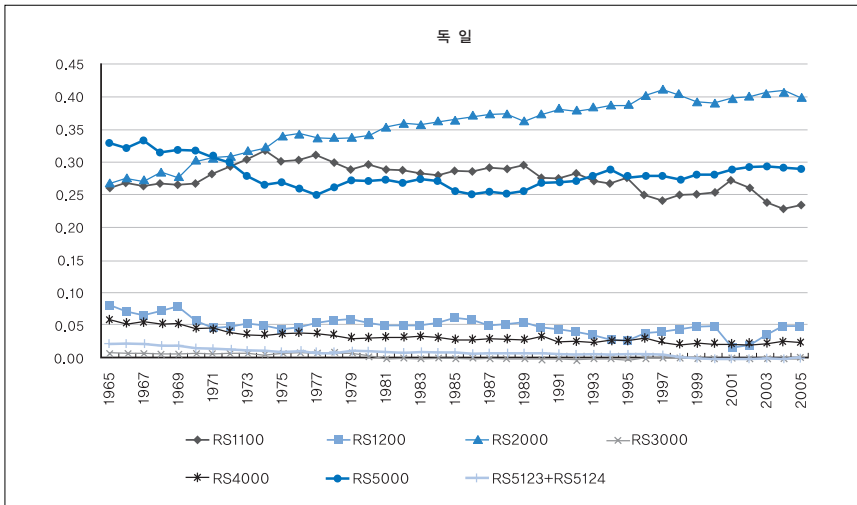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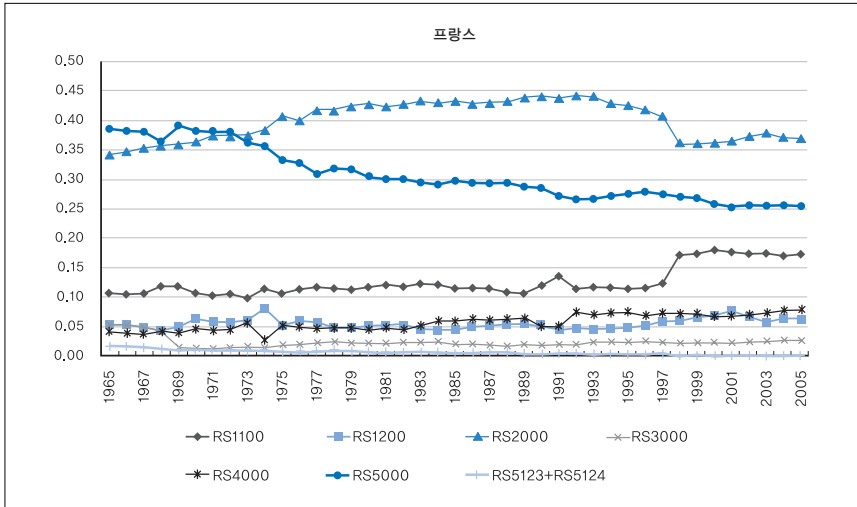
[그림 6]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조세믹스



[그림 6]에 있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보장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사회보장세의 비중 및 그 추이는 상이하지만 두 나라 모두 소비세 비중의 감소와 개인소득세 비중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림 7]에 의하면,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의 비중이 엇비슷하고 개인 소득세와 소비세가 주요 세목이지만,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소비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독일은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7] 프랑스와 독일의 조세믹스



1980년 이후로 OECD국가들은 조세믹스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평균적으로 개인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감소하고, 법인세와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제무역세가 감소하였다.

III. 분석

1980년 이후로 OECD국가들은 조세믹스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평균적으로 개인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감소하고, 법인세와 재산세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제무역세가 감소하였다. 이것은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조세믹스에 결정적인

개방화는 GDP에서 순수출을 차감한 국내수요 대비 총교역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유무역체계의 진전에 따라 국제무역조세로부터 다른 조세로의 조세믹스 변화가 예상된다.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구조의 변화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Tosun and Abizadeh(2005)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상정하기로 한다.

$$T = \alpha + \ln(y)\beta_i + Z\eta + f_i + \phi_t + \epsilon \quad (2)$$

여기서 T 는 8가지 조세항목의 국가별 연도별 총 세수 대비 세수비중이다. y 는 1인당GDP를 나타낸다. f_i 는 관측불가능한 국가특정적 효과를 담고 ϕ_t 는 관측불가능한 시간특정적 효과를 담는다.

Z 는 상태변수의 행렬로 더미변수를 제외하고 로그값을 취한다. Z 의 개별 변수로 개방화(globalization), 여행자수지(international tourist receipts), 총자본형성(gross capital formation), 실업률(unemployment ratio), 노인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 또는 노인층비율, EU더미, 그리고 1986년경과연수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개방화는 GDP에서 순수출을 차감한 국내수요 대비 총교역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자유무역체계의 진전에 따라 국제무역조세로부터 다른 조세로의 조세믹스 변화가 예상된다. 1986년경과연수는 동학적 더미로 1986년으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Tosun and Abizadeh(2005)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4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모형으로 회귀분석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는 1인당 GDP, 노년층비율, 그리고 EU더미가 유의하였다. 법인소득세는 개방화, 노년층비율, EU더미 등이 유의하였다. 사회보장세는 개방화, 실업률, 그리고 1986년경과연수가 유의하였다. 지급급여세는 1인당 GDP, 개방화, 총자본형성, 실업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재산세는 1인당 GDP, 총수출 대비국제여행수입, 총자본형성, 노년층비율, EU더미 등이 유의하였다. 소비세는 1인당 GDP, 실업률, 노년층비율, 1986년경과연수가 유의하였다. 국제무역세는 총수출대비국제여행수입, 총자본형성, EU더미, 1986년경과연수가 유의하였다. 기타조세는 EU더미만이 유의하였다.

본고에서는 1965년부터 2005년까지 30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osun and Abizadeh(2005)에서 사용한 총수출대비국제여행수입 변수는 그 설명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본고의 분석을 위해 구축된 데이터에서 총수출대비국제여행수입의 관측 수가 188개로 너무 작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데이터 재구축 및 재분석을 시도

하고자 한다.

〈표 3〉은 식 (2)의 고정효과모형을 상정하여 실증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지급급여세, 재산세, 소비세, 국제무역세, 기타 조세의 8가지 조세항목에 대한 결정변수들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비중의 추계에 있어 1인당GDP, 개방화, 총자본형성, 실업률, 노년층비율, 그리고 1986년경과연수가 유의하였다. 이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개방화, 총자본형성, 1986년경과연수가 추가되었으나 EU더미는 변수로 기각되었다.

법인소득세 비중에서는 1인당GDP, 총자본형성, 실업률, 노년층비율 등이 설명력을 가졌다. 기존 연구에서 개방화와 EU더미가 기각되고 1인당GDP와 총자본형성이 추가되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설명변수로는 1인당GDP, 개방화, 총자본형성, 실업률, 노년층비율, EU더미 등이 유의하였다. 기존연구에서 1986년경과연수가 기각되었다. 근로소득세는 그 중요도가 감소하였고 모형설정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세의 설명변수로는 1인당GDP, 개방화, 총자본형성, 노년층비율, EU더미 등이 유의하였다. 개방화가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제무역세의 경우 1인당GDP, 노년층비율, EU더미, 1986년경과연수 등이 유의하였다. 경과연수의 설명력은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이 시간에 따라 진행됨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으나 1986년이라는 특정연도의 현상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간더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산세의 설명변수로는 1인당GDP, 개방화, 총자본형성, 노년층비율, EU더미 등이 유의하였다. 개방화가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영(2008)에 의하면
1인당GDP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증가하고 법인소득세와
재산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갖지만 **제공근적으로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을 가진다.**

〈표 3〉 조세항목 비중별 결정요인

비중변수	개인소득세 (1)	법인 소득세 (2)	사회보장 기여금 (3)	지급 급여세 (4)	재산세 (5)	소비세 (6)	국제 무역세 (7)	기타조세 (8)
1인당GDP	19.043 *** (2.685)	3.410 *** (1.071)	-8.257 *** (2.500)	0.330 (0.520)	3.531 *** (0.677)	-13.935 *** (1.344)	-1.950 *** (0.215)	0.062 (0.139)
개방화	-6.155 *** (1.400)	0.237 (0.558)	8.593 *** (1.325)	-0.399 (0.274)	-1.417 *** (0.359)	-0.606 (0.677)	0.109 (0.108)	-0.350 *** (0.073)
총자본형성	-2.650 *** (0.419)	0.458 *** (0.167)	4.967 *** (0.397)	-0.120 (0.082)	0.416 *** (0.108)	-3.094 *** (0.206)	-0.025 (0.033)	-0.141 *** (0.022)
실업률	5.130 *** (1.001)	-1.448 *** (0.399)	-3.183 *** (0.944)	0.104 (0.196)	0.068 (0.256)	-0.065 (0.489)	-0.135* (0.078)	0.057 (0.053)
노년층비율	-8.380 *** (3.190)	-6.500 *** (1.272)	29.629 *** (3.003)	-0.112 (0.623)	-8.737 *** (0.813)	0.241 (1.619)	-2.710 *** (0.260)	-0.176 (0.166)
EU터미	-2.358 (1.517)	-0.433 (0.605)	2.981 ** (1.436)	-0.015 (0.297)	-1.294 *** (0.389)	0.595 (0.720)	-0.722 *** (0.116)	0.088 (0.080)
1986년 경과연수	-0.693 *** (0.129)	0.011 (0.052)	-0.198 (0.122)	-0.013 (0.025)	-0.030 (0.033)	0.746 *** (0.063)	0.022 ** (0.010)	0.021 *** (0.007)
상수항	-85.515 *** (20.441)	-11.575 (8.152)	-56.493 *** (18.992)	0.936 (3.953)	-3.758 (5.142)	197.056 *** (10.867)	27.903 *** (1.742)	2.697 ** (1.055)
관측수	407	407	410	409	410	400	400	406
R-squared	0.204	0.257	0.487	0.009	0.530	0.637	0.620	0.115

이영(2008)은 조세뿐만 아니라 재정까지 아우르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본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19 개 OECD국가의 1990~2003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표 4〉로 요약되는 이영(2008)의 연구에 의하면 소득세, 즉 개인소득세의 설명변수로 1인당GDP, 1인당GDP제공, 인구 수가 유의하였다. 법인세, 즉 법인소득세의 설명변수로도 1인당GDP, 1인당GDP제공, 인구 수가 유의하였다. 자산세, 즉 재산세에는 추가적으로 14세 이하 인구비율이 유의하였다.

이영(2008)에 의하면 1인당GDP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증가하고 법인소득세와 재산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갖지만 **제공근적으로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을 가진다.** 이것은 조세정책의 집행에서 자주 목도되는 현상으로 항상 일정방향으로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방향으로의 힘도 있음을 나타낸다.

〈표 4〉 총재정수입과 조세구조의 결정요인

	(7) 총재정 수입	(8) 소비세	(9) 소득세	(10) 법인세	(11) 자산세	(12) 사회보장
1인당GDP의 로그 값	390.116 (44.559)**	118.656 (18.236)**	294.568 (48.469)**	-98.855 (12.481)**	-40.391 (9.067)**	35.942 (45.361)
1인당 GDP의 로그 값의 제곱	-19.506 (2.225)**	-6.080 (0.911)**	-14.609 (2.420)**	5.022 (0.623)**	2.063 (0.453)**	-1.880 (2.265)
인구수의 로그 값	-2.382 (0.191)**	-1.389 (0.078)**	-0.921 (0.208)**	-0.175 (0.053)**	0.228 (0.039)**	0.104 (0.192)
65세 이상 비율	1.215 (0.139)**	0.423 (0.057)**	0.373 (0.151)*	0.010 (0.039)	0.002 (0.028)	0.283 (0.138)*
14세 이하 비율	-0.032 (0.081)	0.156 (0.033)**	0.123 (0.088)	-0.028 (0.023)	0.048 (0.017)**	-0.303 (0.082)**
집권당성향 (1=보수; 3=중도; 5=진보)	0.470 (0.226)*	0.068 (0.093)	0.177 (0.246)	0.152 (0.063)*	-0.017 (0.046)	0.240 (0.228)
상수항	-1,898.427 (221.777)	-557.896 (90.766)**	-1,468.140 (241.237)**	492.130 (62.123)**	194.223 (45.127)**	-161.519 (225.507)
관측수	202	202	202	202	202	193
R-squared	0.652	0.718	0.283	0.506	0.302	0.285

주: 이명(2008)에서 인용

법인세율을 낮추어
목적하는 바의 순투자를
증가시키면 이는 총자본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총자본형성의
증가는 법인세 비중과 함께
재산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을 증가시키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시사점 및 한계

조세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조세정책의 효과에 천착한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조세정책이 국민경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국민경제사회 여건이 조세정책 또는 조세구조(tax mix)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 본고의 논의는 유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OECD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법인세율을 낮추어 목적하는 바의 순투자를 증가시키면 이는 총자본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총자본형성의 증가는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비중과 함께 재산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을 증가시키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고의 분석은 조세정책과 국민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다룬 개별 조세항목비중의 실증분석은 향후 체계회귀분석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믹스와 재정믹스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연구방향이라 생각된다.

물론 조세믹스의 전체적 틀을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적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최적조세이론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조세구조의 변화가 사회후생 또는 효율성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개별 조세항목비중의 실증분석은 향후 체계회귀(systematic regressions)분석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믹스와 재정믹스(fiscal mix)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연구방향이라 생각된다. **KIPF**

<참고문헌>

박형수,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 분석」, 『재정포럼』, 10(6):, 한국 조세연구원, 2004, pp. 30~57
 이영, 『신정부 재정정책의 여건과 발전방향』, 2008

Chelliah, R.J., “Changes in Tax Revenue Structure: A Case Study of India,” in *Changes in Revenue Structures: Proceedings of the 42n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989
 Engen, E.M. and Skinner, J., “Tax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ax Policy in the Real World*, 1999
 King, R.G. and S. Rebelo, “Public Policy and Economic Growth: Developing Neoclass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1990, S126-150
 Tosun, M.S. and S. Abizadeh, “Economic Growth and Tax Components: An Analysis of Tax Changes in OECD,” *Applied Economics* 37:2005, pp. 2251~2263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jnskim@kipf.re.kr)

I. 서론

공익법인이란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그 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구분된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 아닌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구분된다. 즉, 모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속하나, 비영리법인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만으로는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부족에 직면하게 되면 국민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게 되어 국민복지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확대에 따라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몇 년간 정부는 재정건전화 달성에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므로, 정부의 지출만으로 소외계층,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공익법인이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적극적인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경제·사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만으로는 국민복지의 실현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정작 공익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비율로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자원조달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기부받은 재산을 운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그리고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익법인은 일정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자원조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다수의 소액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방법, 기업가 또는 재산가 등 고액기부자로부터 자산을 출연받는 방법, 그리고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한 자산처분이익이나 배당소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서는 정작 공익법인의 주식을 일정비율 취득하는 것을 규제하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비율로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자원조달을 막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¹⁾.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행위를 세법에서 제한하게 된 배경은 과거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주주와 같은 주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연고주의에 의해 공익법인을 이용한 대기업집단의 지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력집중에 관한 정책방향의 전환 및 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이 있었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제도²⁾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를 특정인에 대한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자원조달 측면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세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에 대한 세법 규정

1.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가. 일반 공익법인 : 5% Rule

대기업집단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지주회사화함으로써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

1) 최근 한 기업가가 대학의 장학재단에 기부한 210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면서 현행 세법 규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그 예임.

2) 2008년부터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등의 공시제도 이행 등이 시행됨.

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표 1>의 주식을 합하여 5%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6항).

<표 1> 공익법인 지분을 판정시 포함주식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출연받은 주식	취득하는 주식
출연 당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 당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출연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인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그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만일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각각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산학협력단이 대통령으로 정한 주식³⁾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나. 성실 공익법인 : 10% Rule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2007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함)에게는 앞서 5% rule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 주식 취득 기준을 1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이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① 외부 감사를 받고 ②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며 ③ 결산서류 등의 공시제도를 이행하고 ④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만일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각각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3)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②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3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고 ⑤ 출연자 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회에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동법령 제13조 제3항).

2. 계열기업주식의 보유에 대한 규제

가. 일반 공익법인 : 30% Rule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주식취득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⁴⁾의 주식의 가액이 3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제78조 제7항). 이 경우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다음의 ①의 가액에서 ②의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① 이동평균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 중 적은 금액
- ② 공익법인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제외함)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서 ①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나.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 : 50% Rule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2007년말 세법개정을 통해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게는 앞서 총재산가액의 30% rule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 총재산가액의 5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이란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고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5가지 요건 중 앞서 3가지를 충족하면 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2007년 세법개정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 하되 주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성실공익법인과 공익기여도를 감안한 다음의 공익법인에는 주식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식보유한도 규정은 공익기여도를 감안하여 다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4)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출현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함.
 ① 출연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특정기업의 주주인 경우로서 당해 기업과 다음 ②~④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③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
 ⑤ ①의 본문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적용되지 않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③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④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미국의 경우

민간재단의 주식보유에 대하여 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20%, ② 제3자가 이미 기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5%의 주식보유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투기적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가지고 있다.

Ⅲ. 주요국의 관련 제도 및 시사점

1. 외국제도 현황

가. 미국

미국의 경우 민간재단의 주식보유에 대하여 ① 의결권이 있는 주식(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의결권 주식 포함)은 20%, ② 제3자가 이미 기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5%의 주식보유한도를 규정⁵⁾하고 있고, 투기적 투자행위⁶⁾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주식에 5%의 최초 가산세를 부여하고, 가산세 부과 이후에도 초과보유분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과보유분에 대해 200%의 추가가산세가 부과된다⁷⁾. 민간재단이 투기적 행위를 하는 경우 민간재단에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민간재단 운영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는 5천만달러이다⁸⁾.

이상과 같은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의무와 외부감사 의무가 있다. 먼저 국세청은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수입액이 2만 5천달러 이상인 민간단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⁹⁾. 이에 따라 민간단체인 Guidestar는 국세청(IRS)로부터 회계 등의 정보가 포함된 신고자료를 받아 전산화한 후 통계 및 분석과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부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선기부금 수혜단체의 합법성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확인할 수

5) IRC §4943.

6) 투기적 투자행위란 출연재산에 대한 면제지위를 남용하여 본연의 목적이 아닌 투자에 사용된 경우를 의미하며, 본연의 목적이란 민간재단의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투자 또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려 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이 없는 투자를 말함.

7) IRC §4943(b)

8) IRC §4944 Taxes on investments which jeopardize charitable purpose

9) IRC §6033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이

- ① 운용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와 ②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으로 기부된 경우에 한하여 50%의 주식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있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5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50만달러 미만인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작성한 재무관련 보고서를 해당 민간단체를 관할 감독하는 정부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3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단체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두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타당성 평가,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외부회계감사 절차 조사, 독립된 외부감사인 선정, 급여 관련 세금(payroll taxes), 판매세 및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소득관련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¹⁰⁾.

나. 캐나다

민간재단에 기부된 상장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주식보유제한제도에서 안전조항을 도입하여 2% 초과 보유시 국세청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20% 초과보유하는 경우 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¹¹⁾.

민간재단은 법인의 주식을 2% 이하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안전조항에 따라 어떠한 법적 제약을 받지 않지만, 안전조항을 위배하여 2%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① 민간재단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내역과 ② 민간재단 또는 특수관계자가 중요한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20%(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민간재단은 초과지분을 기한 내에 매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초과 보유한 지분 가치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5년 이내에 다시 20%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배로 증가된다.

다. 일본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이 ① 운용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와 ② 재단법인에 기본재산으로 기부된 경우에 한하여 50%의 주식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①과 ②의 경우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주식 운용재산을 관리·운용 목적으로 상장주식이나 장외시장 공개주식과 같이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주식발행 영리법인

10) http://www.oag.state.ny.us/bureaus/charities/pdfs/internal_controls.pdf

11) Carters Professional Corporation, Charity law bulletin No, 113, 2007. 3. 29

이 발행한 총주식의 1/2 이상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20% 이상인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해당 영리기업의 개요(명칭, 사무소 위치, 자본금 및 사업내용, 임원 수 및 대표자 이름, 종업원 수,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전주식에서의 비중, 보유 사유, 주식취득일, 공익법인과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의무와 외부감사 의무가 있다. 먼저 2001년 8월에 발표된 「인터넷에 의한 공익법인 기업정보공개」에 의해 각 주무관청은 소관 공익법인에 대하여 지도감독기준에 따라 열람되는 자료¹²⁾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에 소관 민간단체의 일람표¹³⁾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로부터 검사·인정·자격부여 등의 사무·사무의 위탁 및 추천을 받고 있는 민간단체 또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교부를 받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최신 업무 및 재무관련 자료, 사무·사무내용 및 근거법령, 보조금·위탁비의 명칭 및 금액을 각 주무관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충실화 및 책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다¹⁴⁾. 일정규모의 민간단체란 자산액(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합계액)이 100억엔 이상 또는 부채액(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합계액)이 50억엔 이상 또는 수지결산액(총수입액 또는 총지출액)이 10억엔 이상인 민간단체를 말한다.

라. 기타 국가

영국, 호주, 대만 등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2. 주요국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취득과 계열기업 주식보유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는 동일기업 주식보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반면, 조사대상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제한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주로 민법이나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우리나라는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취득과 계열기업 주식보유를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는 동일기업 주식보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12) ① 정관 또는 기부행위 ② 회원명단 ③ 사원명단(사단법인의 경우) ④ 사업보고서 ⑤ 수지계산서 ⑥ 실질재산 증감계산서 ⑦ 대차대조표 ⑧ 재산목록 ⑨ 사업계획서 ⑩ 수지에산서 등

13) 소관 NPO의 일람표에는 명칭, 소관부국(담당국 담당과 등), NPO의 주요한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대표자의 직책명 및 성명, 주요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이 포함됨.

14) 일본 공인회계사협회 비영리법인 위원회보고 제23호「공익법인 등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각료회의 간사회 합의에 의한 공익법인 감사 취급, 참조

선진국의 제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의
주식보유한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있다.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세청에서 맡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기업의 주식보유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서 일본의 50%, 미국과 캐나다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캐나다와 일본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기준 이외에 신고기준을 별도로 두어 신고기준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과세관청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을 위해 정보신고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5%, 일본은 20%의 주식보유 신고기준을 두고 있는데, 주식보유 한도기준보다 낮게 설정하여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식보유현황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공익법인의 투기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수익 또는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은 주식보유한도 규제와 함께 주식보유 사전신고제도 또는 투기적 투자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보유한도 기준과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법에서 규정할 뿐 주식취득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1차적으로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공익법인이 안정적인 재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2차적으로 공익법인의 투자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연하는 주체(출연자)와 투자하는 주체(공익법인)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면서 비공익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여 축적된 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가나 재산가의 기부활동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선의의 기업가나 재산가의 이타적인 기부행위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일기업 주식에 대해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이타적인 출연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제도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의 주식보유한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전 신고제도와 투기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출연단계와 투자단계를 이원화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공익법인의 안정적 재원조달, 공익목적의 자금사용 및 집행을 통한 복지 재생산이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IV. 규제완화의 필요성

1. 공익법인을 통한 지주회사화 가능성 미흡

공익법인은 1990년부터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1993년 말 이러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9년말 세법개정에서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 이하로 제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요건을 강화한 이유는 특히 재벌의 대주주가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화하는 등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 기업상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⁵⁾.

지주회사제도는 전략적 경영과 사업경영을 분리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원활한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할 수 있고,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까지 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7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OECD와 IBRD는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권고하였고, 일본이 1997년에 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1999년부터 지주회사를 허용하게 되었다.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임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주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은 일반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의 주된
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임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재무부, 『1993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1993.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되고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이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출자대상법인	지주회사		일반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 비율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40% 초과	100%	100%	100%
	40% 이하	80%	30%초과	50%
비상장법인	80%초과	100%	30% 이하	30%
			100%	100%
	80% 이하	80%	50% 초과	50%
			50% 이하	30%

자료 : 법인세법 제18조의2~3을 표로 작성함.

지주회사제도가 허용되고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이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였지만,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지주회사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재벌이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감사가 더 많고 자산운용에 제한이 더 많이 따르므로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다고 생각된다.

2007년말 세법개정에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했으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에 대해 결산서류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세무확인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에 대해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의 시행과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의 감시로 인해 만일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주회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통한 경제력집중의 우려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기업 지배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지주회사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공익법인 형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더 적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제도는 물론 사회적인 감시 측면에서도 공익법인이 일반주주회사에 비해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익법인을 통한 주주사회를 우려하여 공익법인 출연 자체에 대한 제약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경제력집중에 관한 정책방향의 전환

경제력집중은 모든 자본주의 경제에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자유경쟁하에서 능력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력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력이 거꾸로 자유경쟁을 제한하여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훼손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집중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1980년대 이후 주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기업은 자기자본의 뒷받침 없이 부채로써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함에 따라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고 과도한 경제력집중은 자원의 독점, 분배의 왜곡, 경쟁 제한적 행위의 증대 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결국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짐에 따라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에 대해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그 주요 시책으로서는 여신관리한도제의 운영, 기업공개유도, 상호출자금지, 부당한 내부거래 규제, 출자총액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재벌이 공익법인을 주주회사화함으로써 상속·증여세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이 제도는 재벌들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1990년 12월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3년 말 이러한 제한을 더욱 강화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9년말 세법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결국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력집중에 관한 정책방향이 장기적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서 경쟁촉진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동일기업에 대한 주식보유한도의 제한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에서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 이하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경제력집중에 관한 정책방향이 장기적으로 경쟁촉진정책으로 전환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은 대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의 촉진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재벌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유발하는 유인체계를 교정하기보다는 인위적인 규제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경제력 집중은 경쟁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경제력집중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보다는 사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대기업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시장만을 고려하여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대기업의 성장을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정거래법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서 벗어나 공정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에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재벌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었으며,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서서히 경쟁촉진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¹⁶⁾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력집중에 관한 정책방향이 장기적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서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동일기업에 대한 주식보유한도의 제한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력집중에 관한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3. 재산출연에 대한 원천적 제한의 완화 필요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기업과 개인의 자본이 축적될 경우에는 기업과 재산가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됨에 따라 기부금액이 증가하며 기부문화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단순한 자선 목적으로 사회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격차 축소와 교육개혁, 지역사회 강화 등에도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9년 3월에 삭제하는 대신 기업집단 공시제도(공정거래법 제11조의4)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초점을 맞추어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채리티숍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의 기부와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기반으로 한 재산가들의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다.

기부문화가 발달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취득 한도를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규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선의의 기업주나 재산가의 출연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5%(10%)를 초과하여 기부를 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출연하지 못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우호지분이 감소되어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비상장의 경우 주식의 처분도 쉽지 않아 재산출연을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선의의 기부자에 의한 기부 기회를 막아 기부로 인한 사회적인 편익을 감소시킨다. 즉, 법률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인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가 규제의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규모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상속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동일기업 주식한도 5%(10%)를 확대조정하는 것은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변칙상속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 공공의 선인 기부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다른 규제방법을 두어 변칙상속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공시·외부감사 강화, 입출금 계좌 세무서 신고, 가짜 영수증 발급시 가산세 확대 등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기부금액 확대에 영향을 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일기업 주식취득한도 규정은 5%(1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부문화는 이제 단순히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부의 사회환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존경받는 부자’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4. 적대적 M&A에 대비한 우호세력의 필요성

현재 사모펀드의 도입과 외국자본의 투자 증가로 인하여 적대적 M&A의 위험에 노출되는 기업이 많다.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을 2004년 12월 도입한 후 2007년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기부금액 확대에 영향을 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일기업 주식취득한도 규정은 5%(10%)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기부를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자사와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형성하여 적대적 M&A에 대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10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PEF는 총 41개이고, PEF의 총출자 약정(이행)액은 8.3조원(3.8조원)에 이르고 있다¹⁷⁾.

〈표 3〉 국내 PEF 규모별 현황

구 분	출자약정금	2005년말	2006년말	2007.10월말	비 고
대 형	3,000억원 초과	6 개	9 개	13 개	5000억원 이상 PEF 4 개
중 형	1,000억~3,000억원	4 개	6 개	12 개	-
소 형	1,000억원 미만	5 개	10 개	16 개	
총 계		15 개	25 개	41 개	

자료 : 금융감독원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조조정을 원활화하여 경제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자이익의 회수를 위하여 고배당이나 설비투자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언제라도 적대적 M&A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매입이 가능한 상장기업이면서,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소유경영자의 계열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율이 낮고, 소유경영자가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많아 주력회사가 적대적 M&A될 경우 전체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기부를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자사와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형성하여 적대적 M&A에 대처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적대적 M&A가 활성화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도 있지만 경영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차등의결권주 제도나 독약조항 등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적대적 M&A의 위협에 노출된 기업은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출연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영권 문제 이외에도 초과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부를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것 보다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익재단에 자기주식이나 관련회사의 주식을 기부

17) 금융감독원, 『PEF 제도도입의 3년 성과분석』, 2007.

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형성하여 적대적 M&A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다.

V. 결론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특정 경제행위를 정부가 법규정만으로 직접적·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 즉,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기저로 공익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행위를 주식취득기준과 주식보유기준을 두어 원천적으로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은 공익활동이 우리 사회에 주는 편익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지배권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 인식이 건전하게 정착되기 전까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면서 자원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주식취득기준을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지출을 보완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의 주식취득기준을 성실공익법인에 한하여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감독·사후관리 규정과 외부감사제도·재무제표 공시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비공익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만일 성실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주회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회적 감시체계와 인프라가 존재하여, 지주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주식취득기준을 성실공익법인에 한하여 20%로 상향 조정하되, 캐나다와 일본과 같이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과세관청이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의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고, 주식취득이 자원조달과 공익목적이 아닌 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의 제도와 같이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산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을 특정주주의 간접지배도구로 이용하는 남용행위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보완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의 주식취득기준을 성실공익법인에 한하여 2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든 공익법인이
충족하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머물도록 한다면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을 없애고, 주식취득기준은 20%로 정하고, 주식보유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고 공익사업의 수행에 대해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모든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든 공익법인이 충족하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머물도록 한다면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구분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취득기준의 완화와 주식보유기준의 폐지는 조세회피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제한 제도와 같은 제도를 공익법인에도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다¹⁸⁾. 공정거래법 제11조(의결권제한제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¹⁹⁾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 즉, 금융보험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만 제한할 뿐, 취득이나 보유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익법인이 우량한 재벌의 관계회사 주식취득 목적이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이라면 취득과 보유 자체를 사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일정 기준의 지분을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KIP**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PEF 제도도입의 3년 성과분석』, 2007.
 김진수,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7-15, 한국조세연
 구원, 1997.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7.
 김진수·조진권, 「NPO에 대한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평가 및 정책방향」, 『한국
 비영리연구』 제7권 제3호, 한국비영리학회, 2009.
 재무부, 『1993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1993.

18) 물론 이 경우 공익법인은 적대적 M&A에 대비한 우호세력으로서 경 영권 방어에 협조하기 어려울 것 인.
 1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정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 업집단을 말함.
 2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 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 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상장 계열 회사의 임원이면, 정관변경, 합병 · 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Carters Professional Corporation, *Charity Law Bulletin* No. 113, 2007.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 For Use In Preparing
2008 Returns*, 2009.



정책토론투리포트

■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 본 원고는 2009년 8월 18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 일 시 2009년 8월 18일(화) 15:00~17:00
- 장 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5:00~15:1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5:10~16:4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 회 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 발 표 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 ▶ 토 론 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3부장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남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가나다 순)

16:4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주제발표 요약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1. 개요

- 고유가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최악 국면을 벗어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의 조세정책도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원칙에 부합하도록 구성
 -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유가환급금 지급, 근로장려금 50% 인상, 노후 승용차 교체시 소비세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실시
 -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시행
- 조세정책의 구성은 단기적 수단과 중장기적 수단, 효과성 제고를 위한 즉시성의 확보와 지원계층의 특정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으로 위기상황에서 큰 충격을 받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전반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균형

경제위기 관련 조세정책의 구성

구분	단기적 수단(2008~2010)		중장기적 수단(2009~)	
	중산서민층 지원	전반적 내수진작	중산층/중소기업	전반
간접 지원 (세율 인하 등)	-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 인하 - 유류세 인하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 다주택자 부동산양도세 중과 폐지 -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인하	- (1단계) 종합소득세율 인하 - (1단계) 법인세율 인하	- (2단계) 종합소득세율 인하 - (2단계) 법인세율 인하
직접 지원 (급여 지급 등)	- 유가환급금 지급 - 근로장려금 인상			

2. 평가

- 유가환급금을 통한 소득지원정책은 소비심리 안정 등을 통해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가구 총소득은 소득 10분위 중 1, 2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위기기간 2분기('08년 4/4~'09년 1/4) 동안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
 - 1분위의 소득감소 폭도 소득지원 정책으로 크게 감소
 - 외환위기시에는 10분위를 제외한 전 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
 - 유가환급금은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한 소득하위 1~2분위 계층에 많이 지원되어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

경제위기 전후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변화
(도시, 근로자가구기준)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외환위기 기간 소득변화율	-21.8	-10.6	-9.5	-8.2	-7.3	-6.6	-5.6	-5.4	-5.3	7.3
경제위기 기간 소득변화율	-2.8	0.8	1.4	1.8	2.2	1.9	2.3	2.4	1.7	1.6

주: 외환위기 기간 소득변화율은 1997년 1/4 ~ 2/4분기 대비 1998년 1/4 ~ 2/4분기이며 경제위기 기간 소득변화율은 2007년 4/4 ~ 2008년 1/4분기 대비 2008년 4/4 ~ 2009년 1/4분기

- 단기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골프장 세부담 인하 등도 상당한 정책효과 발휘
 -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으로 2009년 2/4분기 자동차 생산은 전기 대비 21.7% 증가하였으며 동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3.3% 증가
 - 수출의 감소세가 여전히 큰 가운데 GDP 성장률 회복에 기여
 - 근로장려금 시행 결과, 제도 안내가구 중 90.9%인 72만 4천가구가 신청
 - 전체가구의 4.3%, 근로자가구의 7%에 달하며 신청자 중 일용근로자가구가 59.7% 차지하였으며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
 - 2009년 하반기 서민층 소득지원에 큰 역할 기대
 - 지방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이용객 1인당 세금은 약 3만 4천원 감소하여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기여
 - 2008년 10월~2009년 4월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이용객 18.2% 증가
- 종합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성장효과는 재정승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IMF(2009)보고서에 따르면 상당히 높은 수준
 -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1차년도 0.2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이는 5년차까지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

- 10년차에는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하여 0.4 수준에 가깝게 증가
- 소득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단기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1차년도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효과의 두 배 수준

- 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안정화에도 기여하였는데 2009년 1/4분기(위기 직후 분기) 평균소비성향의 전년 동기대비 변화는 과거 외환위기시 변화보다 크게 개선
 - 위기 직후 분기의 9, 10분위 평균소비성향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p (64.9%→67.1%), -5.5%p(53.0%→47.5%) 변화하여 외환위기 시보다 개선
 - 외환위기시에는 각각 -0.3%p(62.7%→62.4%), -18.0%p(64.4%→46.4%)로 악화
 - 반면 10분위 소득 증가율은 현 위기 1.6%보다 높은 7.3% 수준
- 법인세율 인하의 성장효과는 IMF(2009)에서 장기적으로 0.8로 추정
 - 법인세율 인하의 재정승수는 1차년도에 0.12 정도에 불과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5차년도 0.25 수준, 10차년도에는 0.8 수준으로 증가
 - 김승래(2009)에 따르면 법인세율 5%p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7.8조원 수준으로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분 6.9조원보다 높은 수준
 - 이는 법인세가 상당히 왜곡적인 조세로 낮은 세율 구조로의 전환이 경제전반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을 시사


- IMF는 경제위기 대응정책에 대해 규모와 구성 면에서 적절하고 감세정책은 경제의 회복단계에서 효과적인 것이라고 평가
 - 경기회복 정책의 구성은 G20 평균과 유사하며 성장자극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된 이전지출의 비중이 높음
 - 경기회복 정책의 성장효과는 2009년 1~1.5%p

3. 향후 방향

-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낮은세율-넓은세원' 원칙 재확립 필요
 - 낮은 세율구조는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기업 활동 및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
 - 넓은 세원구조는 재정건전성 측면에 대한 기여와 함께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활동 왜곡을 축소하는 역할
-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세율 인하 정책은 유지하되, 기존의 공제를 조정하여 세부담 하락 폭은 일정범위 내로 유지할 필요
 - 법인세부문의 경우 세율인하의 효과를 감안하여 기존의 무차별적인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등)제도를 축소하고 정책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수단(R&D, 에너지절약 등)으로 전환할 필요
 - 소득세도 세율 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 계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
- 경제위기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던 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넓은 세원구조의 형성이란 기본방향

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될 필요

-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계층의 특정화가 가능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시행
 -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산서민층의 자발적인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을 위한 지원이 사회보장 관련 재정부담 완화에 바람직(저축, 연금과세 등)
 - 서민층 지원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 근로장려금(EITC)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혹은 2단계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추가적으로 인화되는 부문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추진
 - 세출규모를 고려한 2009년 재정수지는 4월 추정 기준 GDP 대비 -5.0%, 국가부채는 35.6% 수준에 달할 전망으로 향후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
 -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 측면의 노력도 중요


토론 요약

비과세 감면 줄이면서 감세 추진해야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오늘 발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조세정책이 적절하게 운용되어 왔고 둘째는 앞으로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세제를 적절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본 토론자도 첫 번째는 상당히 동의한다. 그러나 향후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세제를 운용하겠다는 두 번째는 많은 의문을 가진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유류세 인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상당히 유연한 방식으로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다. 다만 소득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한쪽에서는 금융위기 대책이라고는 했지만 금융위기 이전의 대책이었고, 발표자료에 나와 있듯이 3T에 전혀 적합한 방식이 아니었다. 어떤 특정한 타깃팅이 없는 일반적 감세였고 위기대응에 맞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자꾸 위기대응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

경제위기 이후 각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하었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점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소득세제의 분배면을 보았는데, 만약 공제와 세율로 나누어 볼 때 분위별 금액을 보면 공제로 인한 증가율보다 세율로 인한 증가율이 소득이 증가할수록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바람직한 소득분배는 경제는 건드리지 않고 세율은 낮추지 않는 것이다. 사실 감세는 형평성은 해치지만 효율성은 높이는 것인데 정부는 자꾸 감세를 하면서 형평성은 해치지 않는다고 한다. 솔직하게 성장을 위해서 형평성을 해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발표자료에서 법인세 소득계층별 분석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지만 이 분석도 기본적으로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법인세표를 보면 75%가 자본에, 25%가 노동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본은 고소득층이 가지고 있겠지만 자산의 분포, 쉽게 말하면 주식소유의 분포를 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발표자료에서 IMF에서 2014년에는 균형이 된다고 하였는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본 토론자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균형이 나오기는 힘들고 의문스럽다. 비과세·감면 부분의 비과세규모를 합쳐도 2014년의 그 균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비과세·감면을 줄이면서 감세로 가겠다고 하는 게 맞다. 세율을 줄여놓고 재정이 어려워니 비과세·감면을 줄이면서 낮은 세율이 기본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세도 지출을 억제해서 감세를 하는 것이 맞지 감세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 필요

이영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다섯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의 경우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에서 실제로 정치권에서 오히려 인하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출연연구원이나 행정부에서 인하를 유보하겠다는 발표는 제약이 있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로, 재정건전성은 이미 걱정할 수준이 되었

다고 판단된다. 새 정부는 임기 내 GDP 대비 국가부채를 줄여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 추세로 가면 임기 말에 4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내년도 국채 이자만 20조원 정도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지출부문이나 세수 측면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늘렸던 지출부문은 과감하게 줄이고, 타당성 검토가 미비했던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좀 더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어떠한 정부규모가 작은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부규모가 커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많은 재정학자들이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는데, 비판의 핵심은 정부규모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정부규모 자체를 줄이라는 것은 아니었다.

네 번째로, 세목 중 개인소득세 인하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인세의 인하는 전 세계적 조세경쟁 측면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25%에서 22%로 가고 있지만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그 근거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오히려 최고세율을 높이고 있다. OECD 평균으로 보아도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상당히 높고, 그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크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에서 개인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역탄력성 원칙으로 봐서도 개인세율은 높게, 탄력적인 법인세는 낮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평성 추구 측면에서도 개인세는 훨씬 더 직접적이다. 그리고 형평성 도모를 위한 세제에 있어서 재산세나 종부세 측면은 맞지 않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부문이 있고 조세저항이 아주 크지 않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자신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여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소득세를 통해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공제제도에 있어서 개인소득세와 관련하여 근로소득공제율을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맞는 방향이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쪽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낮춘다는 조합도 찬성한다. 조금은 과감한 공제제도 축소를 언급하면 우리 공제제도 중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인 자녀학자금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이러한 자녀 학자금 소득공제는 상당히 불공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득공제의 혜택은 납세자가 직면한 한계세율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MB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일명 학자금안심대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소요가 한해 1조~3조원에 이르며, 대출금액도 8조~9조원 가량이라는 것이다. 이는 매우 큰 재정소요이기 때문에 기존의 숨겨진 학자금 지원제도인 자녀학자금소득공제를 축소하고 학자금안심대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이것이 부모의 지불능력을 낮추었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았으나, 이제부터 본인이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하여 대학을 다니면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간 차등화 세율 적용 개요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최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세수는 감소하고 재정수지도 악화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감세정책을 증세로 바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취해 왔던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정리해보자는 측면에서 본 정책토론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별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등 세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 감세기조 혹은 감세정책은 시장의 신뢰성 및 앞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발표문에서 언급한 세목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유가환급금 지급 및 자동차소비세 인하는 충분히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정부정책의 목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를테면 한 쪽에서는 에너지절약, CO₂ 감축 등에 관해 얘기하는 데 반해, 유가환급금은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소득세 환급형태로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제도의 명칭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발표자의 의견처럼 유가환급금 지급이 소비 악화 정도를 완화시켰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1년 민간소비지출 규모가 GDP 대비 약 60%, 금액으로는 600조원 정도인데, 유가환급금으로 지급된 약 3조원 중 상당한 수준을 소비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전체 민간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1,300만명의 불특정다수에게 나누어주기식으로 지급된 유가환급금을 좀 더 유용한 곳, 이를테면 투자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SOC 또는 R&D 등의 분야에 사용하였다면 보다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측면 때문에 일각에서 유가환급금제도가 다소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비난받는 한 원인이 되지 않고 있나 생각된다.

더욱이 저소득층을 생각하였다면 유가환급금 자체가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 지급하였고 아예 소득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이 불완전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동차소비세 인하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타당성 있는 이유로 들고 있으나, 어느 특정산업에 대해서만 소비세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업종간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지 의구심이 들며, 정책시행에 따른 과실이 특정 기업 및 업종에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개별소득세와 관련한 문제로 소득구간별로 2%p씩 세율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저소득층을 상대적으로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구간별 2%p의 일률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소득계층간 차등화된 세율 적용을 제안한다. 즉, 소득계층간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여 과표구간이 낮을수록 큰 인하 폭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소득상승 등을 고려하여 8,800만원 최고 소득세율 구간보다 높은 과표구간을 하나 더 추가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현재 근로소득세 면제 비중이 전체 대상자의 절반 수준이므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 1원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현행 최저 과표구간 아래에도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추가 과표구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세율 인하가 과연 얼마나 설비투자자로 이어졌나에 대한 분석이 쉽지는 않겠지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일부 대기업의 경우 사내유보금이 있고 경영실적 역시 최근 양호하게 나타남에도 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의 금전적 여력을 설비투자자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국은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의 아젠다를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세제가 에너지세제 또는 탄소세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탄소세 등을 징수하게 되면 세수가 확대되므로 세수 중립적 차원에서 다른 분야의 세금, 즉 법인세 혹은 개별소득세 등을 깎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 소득이 많은 곳에 많이 부과한다는 기존의 과세 개념을 사회의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분야에 많이 과세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국가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방향 전환이라 생각된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초점 맞춘 감세 필요

정남기/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본 토론자는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앞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감세나 재정확대나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사실 핵심은 감세든 재정확대든 간에 한 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성이다. 특히 감세는 영향력 측면에서 항구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더욱 신

중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핵심 포인트는 재정건전성이다. 재정이 건전하면 감세든 재정확대든 어떤 정책이나 유연하게 쓸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외환위기 및 이번 금융위기 때 위기 극복이 비교적 수월했던 배경 중 하나가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연말이나 내년에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현재와 같이 감세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가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2009년 상반기의 경기실적 호전이라는 것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증대나 재정지출로 인한 일시적 효과 등이 상당히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은 7월 들어 두드러지게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즉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확대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합리화시키겠다는 방향에는 찬성한다. 다만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검토가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봐야 한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어 이 역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감세를 할 경우에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감세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성장동력의 확보, 내수 확대, 고용 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보기엔 무엇보다 '고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분야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

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소득세 징수실적에 의하면,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법인세는 물론 원천분 소득세도 많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고분소득세는 17조 4천억원에서 13조 4천억원으로 4조원 가까이 크게 줄었다. 그 대상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다. 이 수치는 작년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올해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세를 하더라도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경제위기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과표기준이 2억원으로 증가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낮은 과세와 높은 과세가 이루지고 있다. 이중 2억원 미만의 법인세 징수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법인세 세수의 95% 이상이 과표 2억원 이상에서 걷힌다.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거의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내년에는 22%에서 20%로 인하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R&D와 관련된 세제 혜택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 중소기업은 R&D 공제가 거의 없으며, 일선 현장에서는 실효세율이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율구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과표구간을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도 세수를 기준으로, 과표 2억~10억원 사이의 기업에서 징수되는 법인세는 약 2조 2천억원 정도이며, 관련 기업은 약 3만개 정도이다. 만일 과표가 10억원으로 높아지게 되면, 세수는 절반 정도, 즉 1조 1천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소폭의 세수 감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이미 보조금 형태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고 사실 투자유인 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당장 모두 없애는 것은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 기업들은 법인세율은 인하지 않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까지 있다.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방의 경우 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기 때문에 지방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맞지만 시행과정은 단계적으로, 그리고 유연한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대신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그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IT기업이 R&D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작년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6.5%밖에 안된다. 다른 IT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R&D나 녹색성장 관련한 세제혜택 부분이 취지는 좋으나 그 혜택이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실제 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감면혜택이 고소득층에 가는 것이 현실이다. 발표자께서 소득세 감세가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적어도 재분배 기능을 따져보려면 감세에 따라 각각의 분위별 계층이 감세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상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본 토론자의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1분위의 계층의 가처분소득증가율이 0.1%로 매우 미미한 반면 10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현행 법인세, 소득세 세율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 역시 기업 및 지방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세율 인하 등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배상근 /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오늘 토론회는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고 더구나 토론주체가 우리나라 세정 부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세연구원이다. 위기극복 과정에 재정과 조세의 역할이 컸었다. 어떤 세목에서는 이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위기 극복의 측면에서 큰 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상반기 경제위기의 많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컨센서스에서도 많이 나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위기 이후에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봤을 때 최근 세제를 포함해서 대부분 정책기조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과거의 불과 1년 정도인 감세기조가 멈추고 구체적으로 개별 경제주체에 와닿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중단되거나 증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발표자의 자료를 보고 크게 나름대로 안도했다. 그런 면에서 감세기조를 강조하는 낮은 세율 부분을 강조하고 과거에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세원 부분을 보다 넓게 가져가는 부분 등에 크게 공감하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이견은 있다.

우선 왜 감세정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분이다. 불과 1,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법인세 부분은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유보라든가 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

한 측면에서 정해진 법인세율 인하부분 등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과세 감면 정비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정비는 필요하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부문에 대해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정남기 위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왜 유지를 해야 하느냐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해마다 일몰규정이 적용은 되지만 실제로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2~3년에 걸쳐 있는 대규모 투자플랜의 경우 이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사라진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그만큼의 직접적으로 투자가 못 미칠 것이다. 특히 중장기처럼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 세액공제는 크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질 경우 아예 투자를 포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기업 쪽에 문의한 바 투자를 아예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과 같이 상반기 재정의 65%를 넘기면서 경기 급락을 막아온 상황에서 올 하반기 내년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은 투자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만 경기를 어느 정도 지지하고 회복의 모멘트를 찾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폐지할 것이라면 향후 2~3년 안에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은 300대 제조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87% 정도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두 번째로, R&D부문의 투자세액공제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언급된 특정업종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천기술 등의 정확한 정의가 부재인 상태이다.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는가에 관해서는 향후 논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구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필요하고 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원

천기술 등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넓은 세원 쪽에 하나 연결시켜보면 오늘날은 위헌님이 언급하셨는데 소득세에서 면세점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면세점 인하가 힘들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면세점이 인하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도 향후 20년간은 면세점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거의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정책방향으로 지금 관심의 이슈에서 사라져 있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우리나라의 상속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3%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실질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이 실제로 상속세율을 낮춤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세율을 낮춤으로써 나타난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지출되어 순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래서 향후 정책방향에서 지금은 관심 밖에 있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과세 · 감면 줄이기 위한 노력 지속해야

고영선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3부장

우선 발표한 부분에서 유가환급금이라든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정책효과의 판단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GDP, 민간소비 등에 미치는 변수는 수없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제위기가 과거의 외환위기보다 소득이

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조세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금융 및 기업부분의 부실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즉 우리 경제의 내부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은 감세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의 경우 “성장효과는 세율인하로 인한 추가소득의 소비촉진 및 근로활동의 유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추가소득의 소비촉진”과 관련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촉진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근로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촉진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세율인하라는 게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인 것으로 보면 정부가 세금이 늘어서 소비가 준다는 것은 정부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총수요 측면에서 세율인하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촉진되는 것과 지출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입승수가 지출승수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율인하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사실 마이너스(-)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세율을 인하하면서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재정적자를 늘린다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플러스(+)일 것이나, 항구적 감세로 재정적자를 늘리는 정책을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세율인하로 법인의 세후소득이 늘어나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러한 경로를 통해 세율인하가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경험적 근거를 찾아보면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별로 없고, 해외투자의 경우 로케이션을 정할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감세정책은 한계적 근로를 촉진하는 영향을 미친다. 세율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플러스(+)의 효과는 총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즉 근로소득세의 경우 추가적인 근로활동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법인세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활동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경로를 통해 근로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효과는 40~50대 남성 가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우리나라 경우 세금이 낮은 편이라서 소득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감세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세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계세율을 인하하는 데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등 외국에서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율은 인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을 줄임으로써 세수 자체는 크게 줄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세수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거시경제의 불안정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비과세, 감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 등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내외의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조세지원은 저축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 저축총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세율인하를 통해 조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비과세·감면을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보육·교육·의료·노동·복지 등 다른 분야의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대폭적인 세율인하로 조세부담이 줄어든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차입이자에 대한 비용처리도 제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유인을 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폭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좀비기업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낮은 세율 적용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조세지원이 저축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시 비과세 감면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R&D지원은 가장 적합한 조세지원으로 판단된다. 조세감면은 가장 수익이 많은 기업에 성과가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가장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R&D지원 감면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감세, 특히 비과세 감면은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중산, 서민층 등은 보육·교육·의료 등의 다른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P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9-14

요약

- 스위스는 지난 6월 19일, 2010년 1월 1일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를 세 배로 인상(24%p)할 것임을 발표함
 - 탄소세율 인상은 2008년 탄소세 도입시 이미 계획된 것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CO₂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그 인상이 확정됨
- 아이슬란드 의회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6월 19일 예산지출을 줄이고 증세하는 법안의 검토에 착수함
 - 증세안의 주요 내용은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super tax) 도입, 자본이득세율 인상(10% → 15%), 설탕세(sugar tax) 도입 등임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09. 7. 7.에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RWT) 및 투자회사(PIE)에 대한 세율을 최근 개정된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1. 스위스 탄소세율 3배 인상

- 스위스에서는 지난 6월 19일 2010년 1월 1일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를 3배로 인상(24%p)할 것임을 발표함
- 탄소세율 인상 배경
 - 스위스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는 2007년 의회의 승인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바 있음
 - 탄소세는 천연가스, 난방석유 및 석탄 소비시 부과되며 단,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및 디젤연료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됨
 - 도입 당시 탄소세율은 CO₂배출량 미터톤당 CHF 12이었음
 - 그러나 2008년 한 해 동안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CO₂가 1990년 수치의 86.5%를 초과할 경우 탄소세율은 2010년부터 세 배로 인상(CO₂배출량 미터톤당 CHF 36을 적용)될 계획이었음
 - 지난 6월 19일 환경부(Federal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스위스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된 CO₂는 1990년도 수치의 88.8%에 달함
 - 따라서 원래 계획된 대로 2010년부터 탄소세율을 CO₂배출량 미터톤당 CHF 36까지 인상하기로 함



- 탄소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2010년 난방석유 가격 또한 3배(3 centimes/liter → 9 centimes/liter)로 인상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음

2. 아이슬란드 의회 증세안 검토 중

- 아이슬란드 의회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난 극복을 위한 조치로 지난 6월 19일 예산지출을 줄이고 증세하는 법안의 검토에 착수함
 - 동 법안으로 남은 2009년 하반기 동안 ISK 22.4billion 및 2010년 ISK 63billion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¹⁾
 -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증세안의 주요 내용
 - 월 ISK 70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8%의 부가세(super tax)를 부과함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ISK 800,000인 납세자의 경우 ISK 8,00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월 ISK 40,000을 초과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현 10%에서 15%로 인상하며, 납부 단위로 1년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를 적용함
 - 자본이득세율 인상만으로도 2009년 하반기 동안 ISK 10billion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사탕 및 청량음료 등 설탕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함
 - 경제위기로 실직한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고용주

부담 급여보험(wage insurance)을 인상함

- 증세와 더불어 법안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임금삭감, 종교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축소 등을 통해 예산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 정부 성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 긴박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획된 것임

3. 뉴질랜드

- 2009. 7. 7.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Resident Withholding Tax: RWT) 및 투자회사(Portfolio Investment Entity: PIE)에 대한 세율을 최근 개정된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율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개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원천징수세율(RWT)을 현재의 소득세율(12.5%, 21%, 33%, 38%)과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2010. 4.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현행 RWT 세율은 19.5%, 33%, 38%, 39%임
 - PIE의 경우 그동안 법인세율 대신 투자자들의 소득에 따른 적용세율(Prescribed Investor Rate: PIR)로 과세해 왔으나 현행 법인세율인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임
 - 2010. 4. 1.~2011. 3. 31. 기간에는 금융기관이 새로 도입하는 세율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적용함
 - 현행 PIR은 소득에 따라 19.5%, 30%임
 - 동 법안은 7월말 경에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경에 확정될 예정임

1) 참고로, 아이슬란드의 회계연도(fiscal year)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동향 09-15

요약

-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가 2009년 7월 17일 의료보험 개혁안을 통과시킴
 -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surtax) 부과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5,830억의 세수를 조달하며, 전 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임
- 그리스 재정부 장관은 2009년 6월 25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대형 자동차에 대한 특별세 부과, 연료에 대한 특별세 인상,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중대한 조세회피에 대한 단속 강화 등임
- 프랑스 정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19.6% → 5.5%)하기로 함

1.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2009.07.17)

-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¹⁾가 2009년 7월 17일 의료보험 개혁안

을 통과시킴

-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surtax) 부과 등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확보할 계획임
 - 합동세제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 이하 "JCT")는 동 법안의 실행 시 향후 10년간에 걸쳐 \$5,833억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²⁾
 - 또한 전 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다만, 의료보험 제공으로 인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임
 - 동 법안은 7월말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의료보험 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8월말 휴회 이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적 소득세로부터 조달됨
 - 개편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과세소득이 \$350,000~\$500,000이면 1%, \$500,000~\$1백만이면 1.5%, \$1백만을 초과하면 5.4%의 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됨(부부합산신고 기준)
 - 개편안에서는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으로 하여금 2012년 12월 1일까지 2010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의 의료보험 비용절감액을 추산하여 보고하도록 함

1)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세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함.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세법안은 하원 본회의 → 상원 재무위원회 → 상원 본회의 → 양원 합동위원회 → 상원과 하원의 의결 → 대통령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
 2) 의무 불이행시 개인 또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은 수치임



- 의료보험 개혁안으로부터의 비용절감 추산액이 \$1,500억 이하라면 2013년부터는 하위 두 개 소득 구간의 부가세율이 각각 2%와 3%로 증가함
- 그러나 비용절감 추산액이 \$1,500억 초과 \$1,750억 이하라면 기존의 부가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비용절감 추산액이 \$1,7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 소득이 \$1백만 이상일 경우에만 부가세가 과세됨
- JCT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통해 향후 10년간 \$5,439억의 세수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61억의 세수조달 효과가 기대됨
- 세금에서 공제되는 일부 지급금에 대한 조약상 혜택을 제한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75억의 세수조달 효과가 기대됨
-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과세원칙을 성문화함
-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6억의 세수조달 효과가 기대됨
- 이와 함께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의 비공개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20%에서 40%로 인상할 계획임

〈표 1〉 부가세율

조정 후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가구 비중	부가세율			
		FY 2010 ~ FY 2012	FY 2013~		
			FY 2010~FY 2019의 의료보험 비용절감 추산액		
			\$1,500억 ~ \$1,750억	\$1,500억 ~ \$1,750억	\$1,750억 ~
\$350,000~ \$500,000 (독신 \$280,000~\$400,000)	0.50%	1%	2%	1%	-
\$500,000~\$1,000,000 (독신 \$400,000~\$800,000)	0.45%	1.5%	3%	1.5%	-
\$1,000,000 초과 (독신 \$800,000 초과)	0.27%	5.4%	5.4%	5.4%	5.4%

- 개편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의 세수조달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 걸친 전체적인 이자비용의 배분(worldwide interest allocation)³⁾”을 연기함

- 개편안에 따르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종업원 급여의 8%에 상당하는 급여세 (payroll tax)가 부과됨
 - 다만, 급여가 \$400,000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경감세율이 적용됨
 -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는 조정 후 총소득(AGI)의 2.5%에 해당하는 부가세(surtax)가 과세됨
 - 이와 같은 조치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소기업은 의료보험 제공에 드는 비용의 5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종업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액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80,000 이상의 급여소득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됨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기업 전체의 이자비용을 일정한 공식에 의해 국가별로 배분 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 예를 들어 미국 뉴욕에 본점을 둔 미국법인이 동경과 런던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국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일본과 영국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한 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

2. 그리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안 발표

- 재무부 장관 Ioannis Papathanasiou는 지난 2009년 6월 25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안을 발표함
 -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 부과 조치와 연장선상에 있음
 - 정부는 2009년 3월 18일 연소득이 EUR 60,000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일회성의 특별세(one-time special tax)⁴⁾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정부는 증세 결과 2008년 5%를 초과하던 재정결손이 2009년 3.7%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증세안의 주요 내용
 -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 자동차에 대해 특별세(special annual tax)를 부과함
 - 길이가 10m를 초과하는 휴양보트에 대해 이동세(circulation tax)를 부과함
 - 연료에 대한 특별세(special tax on fuel)를 인상함
 - 복권 당첨금(lottery winnings)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함
 - 대외원조 지출을 EUR 1.2억만금 축소함
 - 중대한 조세회피를 강력히 단속하고 납세순응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약 EUR 4.4억의 세수를 확보함

4) 연소득별 특별세 부과액은 다음과 같음

연소득(EUR)	특별세(EUR)
60,000 ~ 80,000	1,000
80,000 ~ 100,000	2,000
100,000 ~ 150,000	3,000
150,000 ~	5,000

5)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 표준세율(standard rate)은 19.6%이며, 경감세율(reduced rate)로는 5.5%를 적용하고 있음

3. 기타

1) 프랑스 레스토랑에 대해 부가가치세 인하

- 정부는 2009년 7월 1일부터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19.6% → 5.5%⁵⁾)하기로 함
 - 프랑스에서 레스토랑 산업은 패스트푸드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오랫동안 부가가치세 인하 캠페인을 해왔음
 - 또한 정부는 레스토랑 서비스를 EU 부가가치세 규정에서 경감세율 적용대상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7년간 법안통과 운동을 벌인 바 있음
 -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은 지난 2009년 5월 5일 EU 위원회에서 Council Directive 2009/47/EC를 채택한 데 따른 결과임
 - 동 지침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적용대상인 노동집약 서비스(labor intensive services) 항목에 레스토랑과 요식업 서비스가 추가되었음
- 레스토랑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로 프랑스에서는 연간 EUR 20억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레스토랑 단체는 “미래를 위한 약정(contract for the future)”을 통해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혜택을 서비스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제공키로 함
 - 프랑스의 경우 레스토랑은 부가가치세를 메뉴 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인하된 만큼 가격을 낮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2) 독일 「탈세퇴치법안」

-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은 2009년 7월 10일 탈세 퇴치 법안(Steuerhinterziehungs-bekämpfungsgesetz)을 승인하였음
 - 법안은 OECD의 정보교환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에서의 과세 관련 투명성과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사업상 거래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한 조세당국의 수사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정확한 시행날짜는 법령을 통해 2009년 9월 중에 발표될 것임
-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ECD의 정보교환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과 거래를 맺고 있는 사업자는 독일 과세당국의 증빙서류 제출과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이러한 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과세대상 소득에서 영업비용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
 - 독일 비거주 법인이 10% 이상의 직·간접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의 신원 확인에 비협조적인 경우 원천징수세 경감을 허용하지 않음
 -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특정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경우, 2008년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된 자본투자 소득에 대한 25%세율의 일률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독일 비거주 개인이 독일과 OECD 지침에 의거한 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의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음

3) 중국 위안화의 세계화 추진 및 무역거래 결제 시행

- 중국정부는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정착시키기 위

하여 위안화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세 환급 정책을 허용함

- 2009년 7월 2일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상무부가 '대외무역 위안화 결제 시범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7월 3일 위안화 결제 허용안이 발효됨
 - 기존에는 달러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수출세 환급 정책이 적용되었음
 - 단, 현재는 상하이 및 광둥성 4개 도시(선전, 광저우, 동관, 중하이)에 소재한 기업들이 홍콩과 마카오의 기업들에 수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나, 조만간 광시자치구와 운남성에 소재한 기업들이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아세안 10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허용할 예정임
- 위안화 무역거래 결제 허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다음이 있음
 - 위안화로 결제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세금공제가 적용될 예정임 (세부사항 미정)
 - 수출업체들이 외화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송금 및 환전비용의 절감으로 약 3~5%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임
 - 기업들의 달러 의존도 감소로 환차손 위험이 감소함
 - 위안화 사용범위를 확장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점차 획득함
 - 위안화의 무역거래 결제 허용에 대해 홍콩 기업, 협회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마친 후에는 위안화 무역거래 결제가 전 중국 기업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함

정책 흐름



-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
-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 본 자료는 2009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그동안의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실적

◇ '08년 이후 일자리 창출·성장잠재력 확충, 과세제도 정상화와 함께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조세정책 추진

- * '08년 이후 추진한 세제개편은 감세혜택의 약 2/3 정도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귀착되도록 설계
- * 휴면 환급금 지급·경영 애로 중소기업의 납기 연장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

1.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 서민·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 소득세율 인하(2%p) 및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2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 700만원 → 900만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공제 신설(50만원 한도)
 -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 500만원 → 700만원
 -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인적공제(기본공제) 인상(100만원 → 150만원)
 - 출산지원 목적으로 영유아용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1,500만명, 2.8조원)

* (근로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자영업자)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 지급금액 확대 : 연 80만원 → 연 120만원
- 수급요건 완화 : 무주택자 → 1주택자, 2자녀 이상 → 1자녀 이상
-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 인상(일 8만원 → 10만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월 100만원 → 150만원)
- 1년간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30% 세액공제 도입

-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대
 - * 공제율(일반 : 1% → 1.3%, 간이음식숙박업 : 2% → 2.6%), 공제한도(500만원 → 700만원)
 - 음식점업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6/106 → 8/108)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확대(15% → 25%)
 - 중소기업 기업상속시 상속세 공제 확대(최고 30억원 → 100억원)
 - 일자리 나누기 실천 중소기업(근로자 포함) 세부

담 경감

*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종업원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 유지시 임금삭감액의 50%를 법인소득에서 공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 농어민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1인당 2천만원 → 3천만원)
 - 8년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 감면 확대(1억원 → 2억원)

2. 08년 이후 세정지원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 * 150만명에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총 3,460억원을 환급
- 경영 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로 경영정상화 지원
 - 사업용 자산 압류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대상금액 상향 조정
 - *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압류유예 총 517건('08. 4월~'09. 6월)
 - * 납세담보 면제 대상금액 상향조정 : 생산적 중소기업 5천만원 → 1억원, 성실납세자 3억원 → 5억원
- 일정규모 미만* 영세자영업자를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
 - * 도·소매업 3억원, 음식·숙박·제조·건설업 1.5억원, 서비스업 0.75억원 미만자

I.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추진방향

- 하반기 이후 경기·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 서민생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는 전직 등이 곤란하여 생활고가 가중
 - * '09. 6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0.6만명으로서 '08. 6월 대비 약 28.7만명 감소
 - 최근 중소기업은 재고 감소, 자금난 완화 등 지표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과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자율과 시장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따뜻한 자유주의” 실현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
 - 사업실패 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 재개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실정

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 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이하*)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소득률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

⇒ 무재산 결손처분 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 : 40만명(세액기준 4,400억원)

*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 지원규모 : 2,000억원

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 **(현행)** 현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

- **(개정)**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

*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 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 축소

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 **(현행)** 부도·채해·질병 등의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

- **(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원, 제조업 1.5억원) 이하인 사업자

라. 체납세금 총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 **(현행)**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본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총당되어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체납 본세를 줄이는 데 어려움

* 체납시 가산금 : 최초 3% 부과, 그 후 매월 1.2%씩 증가(금 부과(72% 한도))

- **(개정)** 체납세금 총당순위를 「가산금→본세」에서 「본세→가산금」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

*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

②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연장

- **(현행)** 현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금년 말까지 소득공제 허용

※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등

- **(개정)**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12. 12. 31까지 3년 연장

※ 지원규모 : 2,280억원

③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

- **(현행)**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

* 납세편의를 위해 매출액에 대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감소한 별도의 세율 적용 :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개정)**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을 '11. 12. 31까지 2년 연장

④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가.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

업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인상

- 화물차, 화물취급, 가구소매 등 240여개 업종(총 880개 업종의 27.3%)의 영세자영업자가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 부여

- 단순경비율 조정폭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10% 이내로 확대

* 추계신고 : 장부 기장능력이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 경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하여 신고

⇒ 영세자영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 경비율을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

나.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 **(현행)**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시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이 가능

○ 납세담보 제공금액

= 적립 세금포인트 × 100,000원 × 적용비율 (50%)

* 세금포인트 제도 : 개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납부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10만원당 1점)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00년 이후 납부세액에 부여)

- **(개정)**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2. 저소득 근로자·농어민 등 지원

◆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

* 실질임금 증감률(전년동기비, %) : (08,3/4)△2.4 → (4/4)△6.4 → (09,1/4)△5.6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 : (09,1)3.7 → (2,4,1 → (3,3,9 → (4,3,6 → (5,2,7

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월세 가구 : 300만가구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930만명이며, 전체 근로자의 70% 수준

-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세수효과 : △900억원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 5. 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기 감면세액 추징

다.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현행) 어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 장려금 지급

•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 : 72만세대, 5,600억원

- (향후 계획)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

•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 및 결정 등을 통해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지급

② 농어민 지원

가.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현행) 농어업인이 '09. 12. 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정)**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제도의 적용시한을 '12. 12. 31까지 3년 연장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 **(현행)** 금년 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 가입대상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농어민(축산농민 포함)
- 가입한도 : 연 144만원
- 이자율 : 기본 5.5%+장려금 1.5%~9.6%
- 가입현황 : 50만계좌, 1.5조원

- **(개정)**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적용시한을 '11. 12. 31까지 2년 연장
 ※ 지원규모 : 세제지원 120억원, 예산지원(장려금 지급) 1,048억원

다.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 말까지 면제
- **(개정)**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12. 12. 31까지 3년간 연장
 ※ 지원규모 : 600억원

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 **(현행)**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금년 말까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면제
 * 면세유 공급 도서 : 미라도 등 총 74개 도서

- **(개정)**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면세 적용시한을 '12. 12. 31 까지 3년간 연장

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개정)**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사례

- ◇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아들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8년 자경기간 계산
 - **(현행)** 어머니의 경작기간만을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 **(개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③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 가.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 말까지 면제
 - **(개정)** 학생·근로자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시한을 '12. 12. 31까지 3년 연장
 ※ 지원규모 : 5,000억원(초·중·고등학교 4,300억원)

나.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현행)** 현재 일부 희귀병치료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 예시) 혈소판 감소 치료제, X염색체 유전자 이상(로렌조오일 병)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 **(개정)**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구입비 경감을 위해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면제대상에 추가

* ①보행장애 치료제 ②구리 배설 촉진제 ③AIDS 치료제
④삼킴장애 제거제 ⑤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⑥성장지연 치료제 ⑦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 수('08. 12월)는 총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지원효과

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현행)**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다만,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됨

사례

◇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소득세 과세

* 장기복무(10년~19년)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실업급여 지급요건과 동일)

- **(개정)**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령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전직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

마.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중부세 비과세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중부세를 비과세하여 노인의 복지향상을 지원

*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현행)**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 수익과 손실의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주)신용회복기금('09. 1월 업무개시)

▶ 재원 : 금융기관 출자액 7,000억원(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 사업 : (채무재조정) 대출회사로부터 금융소외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저금리 대출전환)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 **(개정)**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하여 법인세 과세문제 해소

사. 불법·불량 수입식품·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 강화

-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수입쇠고기('09. 1) → 천일염·대두유 등('09. 8) → 활장어·인삼·한약재('09. 12 예정)

내 용	사회안전·국민건강과 관련된 수입품의 국내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를 각 단계별 양도자가 관세청에 보고(인터넷방식) * 수입업체 → 대형도매상 → 중간상인 → 소매상인
대상물품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 등 5개 물품
Recall 명령	용도변경 사용(예 : 공업용 → 식용),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경우

- 불량 수입식품·의약품의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
• 통관후 유해성 의심물품은 유통시장으로부터 즉시 리콜(Recall)

아.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수입 가짜 의류·신발은 상표권자의 동의 후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을 확대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 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①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현행)**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 소액서민금융재단('08년 금융기관이 2,700억원 출연하여 설립)

- ▶ (재원)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연간 약 1,200억원)
- ▶ (사업) Micro Credit(금융소외자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자 자금지원

- **(개정)**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②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장학·학술·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허용하지 않음
* 개인 : 소득금액의 15%('10년부터 20%), 법인 : 소득금액의 5%

- **(개정)**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 이월공제기간 → (日, 英, 호주) 없음
(美,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5년

③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 **(현행)**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
* (지정기부금)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 내 비용 인정
- **(개정)**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예)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 시설, 아동상담소 등

4.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

① 중소기업 기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 (현행) '08년 세제개편시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기업상속에 대해 기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 (100억원 한도)하도록 상속세 감면 확대
 -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 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기업으로 인정됨
 -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요건 80%가 너무 엄격하여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 [사례 1] 사업을 3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초년부터 20년간 재직 후 은퇴하면 세제혜택 불가
 - [사례 2] 사업을 20년간 영위한 중소기업에서 사업주가 초기부터 10년간 임원으로 근무한 후 10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경우 세제혜택 불가
- (개정)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기업상속을 지원

현행	개정
•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

②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 (현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09년 말까지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정)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0. 12. 31까지 연장
 - 중소기업이 구조조정과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
 - * '04년 도입되어 한 차례 일몰을 연장('07년)하여 현재까지 6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1년간 추가 연장한 후 재검토

③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 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 납부한도 : 200만원
 - 대상자 : 개인
 -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 납부한도 : 500만원*
 - 대상자 : 개인, 법인
 - 대상세목 : 모든 세목
 - * 전체 국세수납 건수(1,930만건) 중 500만원 이하 건수가 86.4%(1,665만건) 차지

④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금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12. 12. 31까지 3년 연장

제 목	내 용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 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시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 ※ 지원규모 : 1,700억원
②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등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③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생산공정 정보화 시스템 등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④ 중소기업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중고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저가양도한 경우 무상기증설비의 시가 또는 저가양도시 양도차손을 손금산입
⑤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세 비과세
⑥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 증권거래세 면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구화

- **(현행)** '10. 12. 31까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폐업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의 기회 마련을 위해 도입(2007. 9. 1)한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 매월 일정부금(5만~70만원)을 납입하고 폐업 등의 사유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으며,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공제부금의 압류·담보·양도가 금지

- **(개정)** 일몰규정을 삭제·연구화하여 제도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⑥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현행)** 탁·약주 제조시설은 발효조 6kl, 제성조 7.2kl 이상이어야 함

* 발효조 : 곡물예다 누룩·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 : 발효된 술을 제품으로 만들어 병입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기

- **(개정)**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발효조 6kl → 3kl, 제성조 7.2kl → 2kl 이상)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⑦ 경영 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

- 경영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자연재해 피해자를 찾아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

* 납기연장·징수유예 실적 : ('08. 상반기) 50,530건 → ('09. 상반기) 133,287건 (169% ↑)

-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분할납부, 납기연장 중소기업 수 : ('08년) 300개 → ('09년) 1,000개(목표) 중소기업지원 : ('08년) 1,152억원 → ('09년) 2,000억원(목표)

II. 세제지원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제지원 효과

-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총 3.6조원

- '09. 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분 : 5,600억원
-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 3.0조원

※ (금번 대책 포함) 1.4조원(추후 발표될 '09년 세제개편안 포함) 1.6조원

3. 향후 추진일정

-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 사항은 '09. 12. 31까지 개정 완료
 -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세정지원 사항은 국세청 · 관세청에서 상시 과제로 추진

IV. 실천 계획(Action Plan)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 기관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 지원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09.12.31	기획재정부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09.12.31	기획재정부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 체납세금 총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 · 교육비 공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간이과세자인 음식 · 숙박 · 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	'09.12.31	기획재정부
(4)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10.3.31	국세청
•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09.12.31	국세청

2. 영세 자영업자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 기관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의 소형주택 '월세 소득 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09. 9.30	국세청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농어민 지원		
•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09.12.31	기획재정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 도·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3)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 공장 · 학교 등 근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 동거분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09.12.31	기획재정부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 노인복지주택 주택에 대해 중부세 비과세	'09.12.31	기획재정부
•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09.12.31	기획재정부
• 불법 · 불량 수입식품 · 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 강화	상시	관세청
•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상시	관세청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 기관
(1)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

실천 과제	일정(까지)	담당부처 · 기관
(1)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2) 중소기업 주식 상속 · 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09.12.31	기획재정부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09.12.31	기획재정부
(5)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09.12.31	기획재정부
(6)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09.12.31	기획재정부
(7)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	상시	국세청 · 관세청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

* 본 자료는 2009년 8월 6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발표한 「과소자본세제 관련 외화차입금 환산시 적용환율 개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원화환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중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1 현행 과소자본세제상 외화차입금 원화환산 기준

—〈금융업에 대한 過小資本稅制 개요〉—

-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국조법 §14)
 - *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임

- 현행 과소자본세제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국조령 §24④)
 - 그동안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 주요 외화 공급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 관리에 애로를 초래, 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 환율이 급등한 '08년의 경우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 규모가 급증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급이자액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203억원('07) → 594억원('08))

2 외화차입금 환산기준 개선내용

- 앞으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매일 매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 해소 및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토록 함
 - (개선내용) 다음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선택 허용
 -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환산 방법(현행)
 - ② 일일 환율을 적용한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방법
- 다만, 환율 하락·상승을 이용한 인위적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환산기준 선택시 5년간 의무 적용토록 함

3 향후 조치 계획

- 금년 하반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원활한 차입금 관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토록 함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 본 자료는 2009년 8월 6일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에서 발표한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협상 의의) '09. 8. 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는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향후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음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

※ 인도시장의 의의

- ① 세계 2위 인구(11.5억명), 구매력평가기준 세계 4위 GDP의 신흥 거대시장
 - ② BRICs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
- * 골드만삭스('03년)는 30~50년 사이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인도를 평가
- ③ ASEAN과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 (협상 경과) '06.3월 제1차 협상 이후 그동안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 '09. 2. 9일 가서명을 거쳐 '09. 8. 7일 정식 서명, '10. 1. 1일 발효 목표*로 추진중

* 인도는 내각제로 내각에서 서명 승인 후 한-인도 정식 서명('09. 8. 7일)을 거치면 발효절차가 완료되나, 우리는 정식 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 필요

- (협상 결과) 한-인도 간 경제통상관계의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
(상품) 한국은 90%, 인도는 85%(수입액 기준)에 대

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

* 인도측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우리의 對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

- 향후 인도시장 개방속도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재협의를 메커니즘 도입

* 인도-싱가포르 CECA의 경우 협정발효 2년 만에 인도로부터 539개 품목의 양허 개선을 확보

- (서비스) 인도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지점 설치(발효 4년간 최대 10개)를 고려하기로 약속, 우리는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개방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공립학교) 등 160여개

- (원산지)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완화된 기준 채택,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인정 조항 마련(한-ASEAN FTA 방식)

- (투자) 인도 FTA 사상 최초로 완전한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인도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의 투자를 허용

- (경제협력)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 (기대 효과)

- ① (신흥 거대시장 선점 효과)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맺어 우리 기업의

신흥거대 경제권인 인도시장 선점* 가능

* 인도는 EU,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 완료

② (수출증대 효과) 관세철폐 및 감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 등을 통해 수출증대 → 생산증대 → 고용증대에 기여

* 인도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중

(08년 하반기, WTO 반덤핑조사 사례(120건) 중 인도가 신청한 조사가 1/3 이상(42건으로 최다)

③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인도에서 민감한 1차 산업을 제외한 음식료품, 섬유, 의류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 →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 허용

④ (소비자 후생 증가)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 확대에 의한 소비자 후생 증가

⑤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구축, 추후 인접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정부) 국별 원산지 증명 등 활용정보 및 성공사례 전파,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점검 등

* (기업)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수출품목 전환 등 인도시장 개척 및 선점 노력

■ 중장기적인 인도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인도 CEPA를 기반으로 우리 측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I. 한-인도 FTA 협상경과 및 협상결과

1. 협상 경과

■ 09. 8. 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는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향후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음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

■ 한-인도 CEPA는 그동안 '06. 3월 제1차 협상 이후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여,

• '09. 2. 9일 가서명을 거쳐 '09. 8. 7일 정식 서명, '10. 1. 1일 발효 목표*

* 인도는 내각제로 내각에서 서명 승인, 한-인도 정식 서명('09. 8. 7일)을 거치면 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 우리는 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 필요

〈참고 : 한-인도 CEPA 협상경과〉

• '06. 2월 한-인도 정상회담(서울)에서 양국간 CEPA 협상 개시를 선언

• '06. 3월 제1차 협상 이후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

- '08. 9. 22일~25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 타결 '10. 1. 1일 발효 목표

* 협정문 구성: 서문, 15개 장, 188개 조 및 부속서(상품 양허안, 서비스 양허안, 투자 유보안 등)

• '09. 2. 9일 협정문에 가서명(뉴델리)

• '09. 8. 7일 서울, 한-인도 CEPA 정식 서명, '10. 1. 1일 발효 목표

참고 한-인도 CEPA, 인도시장의 의의

◇ 인도는 전체 인구규모, 경제활동 가능 인력규모 및 시장규모 측면에서 향후 세계 거대시장이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국가

* (인도의 교역정책) 서방 편향적 정책에서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92년)으로 중심 이동 및 실리 중심의 대외교역정책으로 전환 → 한-중-일 3국간 경쟁 심화

- 한-인도 CEPA는 우리와 인도의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켜 미래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1 세계 2위 인구(11.5억명), 구매력평가기준 세계 4위의 신흥 거대시장

- 인도는 11.5억명(세계 2위, '08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를 보유한 신흥 거대시장

* '08 인도 명목 GDP: 12,090억달러 (세계 12위)

* '08 인도 구매력기준 GDP: 32,880억달러 (세계 4위)

-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 중산층 확대는 소비문화 활성화에 기여

* 인도 중산층 소비지출 규모는 '06년 4,207억달러에서 향후 20년간 17,300억달러(4.1배)로 증가할 전망(자료 : KOTRA 뉴델리KBC, '09. 4월)

2 BRICs 신흥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

- 인도 경제는 아직 경제개발 초기단계이나('08년, 1인당 GDP 1,016달러, 한국 19,504달러), IT 산업을 주력으로 한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높은 저축률 및 안정적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

* 인도 경제성장률: ('00~'03년) 평균 5.2% → ('04~'08년) 평균 8.7% → ('09. 1분기) 4.5%

- 향후 30~50년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일 것

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경제권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골드만삭스('03년)에 의하면 BRICs 국가 중 향후 30~50년 사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국가는 인도이며 이는 인도 인구 중 젊은 층이 많아 중국 등 타국가들보다 고령화가 늦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

3 인도는 아세안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 '08년 對인도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33.4%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비중 30.9%보다 높은 수준

* 중소기업 수출비중('08년) : 전체 30.9%, 아세안 42.1%, 인도 33.4%

2. 협상결과

상품

1 (관세) 양국은 각각 한국 90%, 인도 85% 자국으로의 수입금액에 대해 자유화 합의

- <인도> 대 한국 수입금액의 85%에 대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
- 기업부채(GDP 대비)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 기업부실 증가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 인도는 우리 수출품 중 75%는 발효 즉시~8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10%는 발효 후 8~10년간 관세 인하 및 감축

* 인도-싱가포르 CECA 개방수준도 교역액 기준 83%로 보호무역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인도의 입장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

- (인도 양허제외 품목) 승용차, TV 음극선관, 패놀, 마이크로웨이브 등

- <한국> 대 인도 수입금액의 90%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

2 (상품) 인도의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 다수 포함

- 우리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전체 수출액의 42.1%)은 모두 포함
- * 10대 수출품: 자동차기타부품, 경유(제트유), 무선전화기, 선박(탱커), 유선전화기부품,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 신문용지, 철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기타가정용전자, 선박(화물선)
-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
- *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 → 8년내 1~5%),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 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 철폐)

③ (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보호 확보)

- 양측 모두 농수산물·임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 서로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 동분야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 '08년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되는 참깨(관세 630%), 순면사(8%) 등 민감성품목에 대하여 양허품목에서 제외

④ (관세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재협의를 위한 노력)

-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조항(최종 규정 첩티)을 마련하여 추가적 양허개선 가능성을 명시
- * 싱가포르의 경우 인도-싱가포르 CECA 재검토 조항을 활용하여 협정발효 2년 만에 인도로부터 539개 품목의 양허 개선을 확보한 바 있음

⇒ 인도의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아 관세철폐 및 감축에 따른 혜택은 우리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비농산물의 평균 관세율('07년, WTO자료) : 인도 11.5%, 한국 6.6%

서비스

① (개방수준) 양측모두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

* 양측은 미타결된 DDA 2차 수정양허안을 기본으로 서비스 시장개방에 합의(DDA상 우리의 개방수준 69.6%, 인도 50.7%)

② (인도) 현재 WTO 서비스 양허수준과 비교할 때, 다수 분야에서 인도 시장이 추가 개방되는 효과가 발생

- 통신, 사업서비스(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③ (한국)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

-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공립학교),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160여개 외국 전문 인력이 필요한 직종 개방
- 인도가 강하게 요구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미양허
- * 자격증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
- 서비스 전문직 인력의 출입국 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 인도 인력의 대량 유입 및 불법체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 국내중소벤처 IT기업의 인도인 선호도와 채용만족도(만족 93%)*가 높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IT벤처기업연합회 소속 105개 회원사 대상조사('08년)

투자

① (인도) 인도 FTA 사상 최초로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 명시하는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하여, 높은 수준의 투자개방을 달성

- 인도는 1차 산업분야(농업, 어업, 광업 등)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허용

*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

② (한국) 인도와 마찬가지로 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한-미 FTA보다 낮은 수준의 개방

③ (선진적 투자자보호 제도 도입) 한-미 FTA와 유사한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적용대상 확대 등 인도에 진출한 우리 투자자의 효과적 보호장치 마련

④ (투자 보호범위 확대) 대인도 기진입 투자뿐 아니라 진입단계의 설립 전 투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

원산지

① 인도가 여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채택

- 우리 수출품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

②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인정 조항(한-ASEAN FTA 방식*) 마련

- 이로써 우리는 '04. 6월 개성공단 사업 개시 이후 체결된 모든 FTA (한-싱가폴, EFTA, 아세안, 미국, 인도)에서 개성공단조항을 규정

* 한-ASEAN FTA 방식 : 대상 품목 수의 제한(인도의 경우

108개) 및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국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한을 인정

경제 협력

-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II. 한-인도 FTA 협상의 기대효과

1. 신흥 거대시장 선점 효과

- BRICs 국가와 타결하는 최초의 FTA로 우리 기업이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에 앞서 신흥 거대시장인 인도를 선점하는 효과 기대

* 인도는 일본, EU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 완료

-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인구(11.5억명)와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를 보유한 신흥 거대경제권

* 명목 GDP(08년) 12,090억달러 (세계 12위)

* 구매력평가기준 GDP(08년) 32,880억달러 (세계 4위, 미국, 중국, 일본 다음)

* 인도 경제성장률: ('00~'03년) 평균 5.2% → ('04~'08년) 평균 8.7% → ('09, 1분기) 4.5%

※ 골드만삭스('03년)에 의하면 BRICs 국가 중 향후 30~50년 사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국가는 인도이며 이는 인도 인구 중 젊은 층이 많아 중국 등 타국가들보다 고령화가 늦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

2. 수출증대 효과

-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관세철폐 및 감축을 통한 우리의 가격경쟁력 제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 등은 수출증대 → 생산증대 → 고용증대에 기여

* FTA 발효 이후 5년간 對칠레 수출 : ('03) 5.2억달러 → ('08) 30.3억달러(연평균 42.4%)

1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 對인도 10대 주요 수출품* 전 품목에 대해 모두 관세철폐·감축을 허용
- * 자동차기타부분품(관세 12.5% → 8년내 1~5%로 감축, 수출 비중 12.6%), 경유(제트유)(관세 10% → 10년내 50% 감축, 수출비중 8.6%), 선박(탱커)(관세 12.5% → 8년내 철폐, 수출 비중 4.8%), TV, 세탁기, 냉장고 등을 제외한 기타가정용전자(관세 0~12.5% → 즉시 철폐, 수출비중 1.7%) 등
-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
- *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 → 8년내 1~5%),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철폐)

2 한-인도 CEPA로 인한 인도의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

- 인도는 무역장벽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을 보임
- * 인도의 반덤핑 제소 실적('08년 하반기) : 총 120건의 반덤핑조사 사례(WTO) 중 인도가 신청한 조사는 42건으로 (전체의 1/3 이상) WTO 회원국 중 최다 신청

3.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꾸준히 증가, '09.3월 현재 총 987건에 21.8억달러* 투자
- * 신고금액기준으로 제조업(18.6억달러, 비중85.3%), 도소매업(1.6억달러, 7.1%)이 대부분 차지
- * 현대자동차('95~'08년, 2.1억달러), 삼성전자 ('97년, 56백만 달러), 포스코('05년, 51백만달러) 등
- 한-인도 CEPA는 협정문 상 기술된 개방 불허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투자를

허용

1 (제조업 분야)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 기업의 투자를 허용

*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

2 (금융서비스 분야) 한-인도 CEPA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우리나라 은행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 인도 정부는 자국 은행(국영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73%)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은행의 인도 금융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힐 예정

⇒ 한국의 對 인도투자는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적합하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

* 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소(ICRIER)는 한국측 투자 유망 부문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 내구소비재, 인프라 부문을 제시

4. 소비자 후생 증가

- 대인도 수입품 관세감축 및 철폐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제품·서비스 선택폭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
- * 유리 비드(관세율 8%, 5년철폐), 캐슈넛(관세율 8%, 8년내 1~5%로 인하), 강황(관세율 8%, 8년내 1~5%로 인하) 등

5.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 추후 인접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 주변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비롯 중동지역 등

- 향후 FTA 협상 진행 및 여건 조성중인 주요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면, 동북·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FTA 허브국가'로 부상 가능

* 유럽(한-EU, 한-EFTA) ↔ 아시아(한-인도, 한-ASEAN) ↔ 아메리카대륙(한-미 FTA, 한-칠레)을 잇는 FTA허브로 자리매김

III. 대응방향

-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정부) 한-인도 CEPA 체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별 원산지 증명 등 활용정보 및 성공사례 등을 전파
 -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취약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점검
- (기업) 지속적 R&D를 통해 인도시장내 중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에서 탈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인도시장 개척 및 시장선점 노력 필요

참고 1 한-인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연도	인도	한국	비고
명목 GDP	2008	\$12,090억 (세계12위)	\$9,470억 (세계15위)	
PPP 기준 GDP	2008	\$32,880억 (세계4위)	\$13,420억 (세계13위)	세계순위: 美, 中, 日, 印, 獨 순
1인당 GDP	2008	\$1,016	\$19,504	
실질 GDP 증가율	2008	7.3%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008	8.3%	4.7%	
인 구		1,150백만명	48.6백만명	
국토면적		328만km ²	22만km ² (남북한)	한반도의 15배
수 출		\$1,874억	\$4,175억	
수 입	2008	\$3,005억	\$4,350억	
외환보유	2008	\$2,620억	\$2,320억	
경상수지	2008	△\$330억	△\$64억	

※ 자료 : IMF, WB,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참고 2 한-인도 교역현황

(단위: 억달러,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6년말
對인도 수 출	28.53 (106.1)	36.32 (27.3)	45.98 (26.6)	55.33 (20.3)	66.0 (19.3)	89.77 (36.0)	36.46
對인도 수 입	12.33 (-1.3)	18.50 (50.1)	21.12 (14.2)	36.41 (72.4)	46.24 (27.0)	65.81 (42.3)	15.9
수 지	16.20 (1,100)	28.53 (10)	28.53 (39.5)	28.53 (-23.9)	28.53 (4.44)	28.53 (21.3)	20.56
총교역액	40.86 (55.2)	54.82 (34.2)	67.1 (22.4)	91.74 (36.7)	112.24 (22.3)	155.58 (38.6)	52.3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기업규모별 수출 현황

〈단위: 억달러, %〉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전체 수출	1,938.2	2,538.4	2,844.2	3,254.6	3,714.9	4,220.1
(증가율)		31.0	12.0	14.4	14.1	13.6
대 기업	1,120.2	1,632.0	1,920.6	2,209.7	2,524.8	2,912.9
(증가율)		45.7	17.7	15.1	14.3	15.4
중소기업	817.0	903.8	921.3	1041.5	1187.7	1305.2
(증가율)		10.6	1.9	13.0	14.0	9.9
〈비 중〉		〈35.6〉	〈32.4〉	〈32.0〉	〈32.0〉	〈30.9〉
對 인도	28.5	36.3	46.0	55.2	66.0	89.8
			26.5			
대 기업	19.4	26.1	33.1	39.0	42.2	59.8
(증가율)		34.6	26.9	17.9	8.1	41.6
중소기업	9.1	10.2	12.9	16.2	23.8	30.0
(증가율)		12.0	25.7	26.0	46.8	26.1
〈비 중〉		〈28.2〉	〈28.0〉	〈29.3〉	〈36.0〉	〈33.4〉
對 아세안	202.5	240.2	274.3	320.7	387.9	492.8
(증가율)		18.6	14.2	16.9	21.0	27.1
대 기업	95.9	125.1	147.1	169.4	208.4	285.0
(증가율)		30.4	17.6	15.2	23.0	36.8
중소기업	106.5	115.0	126.9	150.9	178.8	207.4
(증가율)		8.0	10.3	18.9	18.5	16.0
〈비 중〉		〈47.9〉	〈46.3〉	〈47.0〉	〈46.1〉	〈42.1〉

* 자료 : 지식경제부

참고 3 한-인도 투자현황

〈단위: 억달러,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3월	누 계 ('68~'09.3월)
한국→인도	48,947	112,947	150,737	338,391	281,040	16,992	2,177,849
인도→한국	52,645	3,735	2,512	9,454	6,353	428	90,992

* '08.12말 누계, 자료 : 지식경제부

■ 업종별 대인도 투자현황('68~'09. 3월)

〈단위 : 건, 천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Total	987	2,177,849	1,515,326
농업, 임업 · 어업	4	1,353	1,295
광업	1	667	0
제조업	720	1,857,051	1,280,931
환경복원업	3	300	300
건설업	39	26,975	19,614
도매 및 소매업	64	155,461	124,422
운수업	23	11,658	4,915
숙박 및 음식점업	16	1024	54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	9,616	6,666
금융 및 보험업	3	54,870	44,22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	34,882	17,202
전문, 과학 · 기술 서비스업	20	11,879	9,310
사업시설관리 및 사원지원 서비스업	13	3,113	2,902
교육 서비스업	11	1,240	876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4	1,482	1,2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	6,279	839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참고 4 한-인도 CEPA 상품양허 현황

양허 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품목수 (6단위)	비중	수입액 (백만달러)	비중	품목수 (10단위)	비중	수입액 (백만달러)	비중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9,984	88.6%	1,679	84.7%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6,824	60.6%	1,248	63.0%
5년철폐	180	3.4%	560	14.0%	2,310	20.5%	205	10.3%
8년철폐	3,357	64.2%	886	22.1%	850	7.5%	226	11.4%
8년내 1~5%로 인하	459	8.8%	342	8.5%	34	0.3%	3	0.2%
8/10년내 50% 감축*	261	5.0%	96	2.4%	478	4.2%	94	4.8%
양허제외	768	14.7%	580	14.5%	765	6.8%	205	10.3%
전체합계	5,227	100.0%	4,001	100.0%	11,261	100.0%	1,981	100.0%

* 인도는 10년 내 50% 감축, 우리는 8년 내 50% 감축

■ 업종별 대인도 투자현황('68~'09. 3월)

양허단계	인도측 양허	우리측 양허
즉시철폐	무선전화기, 컴퓨터 기기, 축전기, 팩시밀리, 소가죽 등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폴리카보네이트,
5년철폐	신문용지, 합성고무(SBR), 초음파 영상진단기, 폴리카보네이트 TV영상모니터, 형광램프 등	윤활유,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대리석,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유리 비드, 살균제 등
8년철폐	탱커(선박), 볼베어링, 건설중장비 냉엔 및 열연강판 등	기타 항생물질, 산양 가죽, 유박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엑스선관 등
8년내 1~5%로 인하	디젤엔진, 기타 자동차용 부품, 파라크실렌, 자동차 카스테레오 등	캐슈넛, 강황, 자동차 휘발유, 화강암 등
8/10년내 50% 감축	기어박스, 접착제, 살충제, 냉장고, 컬러TV 등	사료용 옥수수, 망고, 일부 면사 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 승용차, 페놀, 마이크로웨이브 등	소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등유, 경유, 일부 순면사 등

참고 5 대인도 주요 수출입(Top 10) 품목의 양허결과

순위	대인도 주요 수출품				대인도 주요 수입품			
	품목명 (HS 6 단위)	인도 관세율	인도 양허안	'08 수출액 (백만 달러)	품목명 (HS 10 단위)	우리 관세율	우리 양허안	'08(백만달러) 수입액 (비중)
1	자동차 기타 부분품	12.5	8년내 1~5%로 감축	1,131 (12.6)	나프타	1	즉시철폐	3,889 (59.1)
2	경유 (제트유)	10	10년내 50% 감축	769 (8.6)	합금철 (페로 크롬)	3	즉시철폐	201 (3.1)
3	무선 전화기	0	즉시철폐	499 (5.6)	박류 (대두유)	1.8	즉시철폐	173 (2.6)
4	선박 (탱커)	12.5	8년 철폐	430 (4.8)	제강용의 비합금선철	2	즉시철폐	124 (1.9)
5	유선전화기 부분품	0	즉시철폐	248 (2.8)	박류 (유채)	0	즉시철폐	119 (1.8)
6	철 및 비합금강 열연강판	5	5년 철폐	208 (2.3)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7	신문 용지	5	5년 철폐	172 (1.9)	기초 유분 (부타디엔)	0	즉시철폐	91 (1.4)
8	철 및 비합금강 냉연강판	5	5년 철폐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기타 가정용 전자	0~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0	선박 (화물선)	12.5	8년 철폐	133 (1.5)	합금철 (페로 실리코 망간)	8	8년 철폐	57 (0.9)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4,836 (73.5)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참고 6 한국과 인도의 FTA 추진 현황

■ 업종별 대인도 투자현황('68~'09. 3월)

	거대경제권 및 주요 교역국	시장교두보	자원부국 등
• 발효 (4건)	ASEAN (교역5위)	칠레 (중남미시장) 싱가포르 (ASEAN 시장) EFTA(유럽시장)	
• 서명 및 협상타결 (3건)	미국(경제규모 2위, 교역 4위) EU(경제규모 1위, 교역 2위)	인도 (BRICs 국가)	
• 협상진행 (6건)	캐나다 (북미 시장)	호주 (오세아니아, 자원부국) 멕시코 (북중미시장)	GCC (석유, LNG 등) 페루 (자원부국, 중남미) 뉴질랜드(광물)
• 협상준비 또는 공동 연구 (9건)	일본 (교역 3위) 중국 (교역 1위) 한·중·일	러시아 (BRICs, 자원부국) 터키 (중앙아시아 시장) SACU (아프리카 시장) 이스라엘(서부중동)	콜롬비아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MERCOSUR (에너지, 광물, 식량 등)

■ 인도의 FTA 추진현황('09.1월, 국제무역연구원)

	국 가
• 기 체결국가	스리랑카('00발효), 아프가니스탄('03발효), 싱가포르('05발효), 방글라데시('06발효), BIMST-EC*('06발효), SAFTA**('06발효), 칠레('07발효), MERCOSUR('09발효), 한국('09.8.7일 정식서명), ASEAN('08.8타결, 10년 발효예정)
• 협상 중	EU, 일본, GCC, 태국
• 검토 중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BIMST-EC :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경제협력체

**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 본 자료는 2009년 8월 3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요약〉

◇ '09.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6%(전월 대비 0.4% 상승) 상승

- 전년도 기저효과, 환율안정, 경기하강 요인 등으로 5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07. 1월(1.7%) 이후 30개월 만에 1%대 진입 → '00. 5월(1.1%) 이래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

* 소비자물가 동향(전년동월 대비, %): (08.10) 4.8 (11) 4.5 (12) 4.1 (09.1) 3.7 (2) 4.1 (3) 3.9 (4) 3.6 (5) 2.7 (6) 2.0 (7) 1.6

- 다만, 전월 대비로는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 석유류가 강세를 보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종료, 가스요금·영화관람료 인상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로 전환

* 전월대비 상승률(0.36%) 중 농축수산물(0.09%p), 석유류(0.08%p), 승용차(0.06%p), 도시가스(0.09%p), 영화관람료(0.01%p) 기여도가 92%(0.33%p) 차지

◇ '09. 7월 근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은 지난 달(3.5%)보다 △0.3%p 하락한 3.2%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수준

-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도 0.4%를 기록하는 등 생활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모습

◇ 향후 소비자물가는 환율효과 등으로 대체로 안정

적일 전망이나 전년도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 국제 원자재가격이 최근 다소 반등하고 있으나 환율이 하향안정화되고 있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아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
- 다만,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인한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 움직임과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큰 석유제품,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09. 7월 소비자물가는 6월보다 0.4%p 낮은 1.6%(전년동월 대비)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률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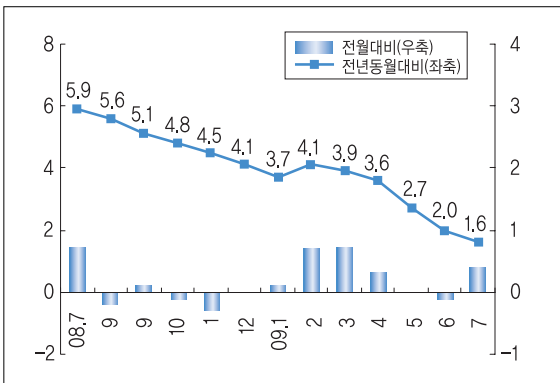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동향(전년동월 대비, %): (08.10) 4.8 (11) 4.5 (12) 4.1 (09.1) 3.7 (2) 4.1 (3) 3.9 (4) 3.6 (5) 2.7 (6) 2.0 (7) 1.6

1. 7월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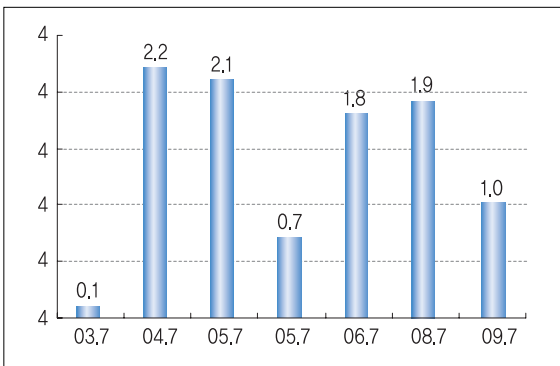
- ① (소비자물가) '09.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1.6%(전월 대비 0.4% 상승) 상승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률 둔화)

- 환율안정 및 경기하강 요인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작년 7월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전월 대비 0.7%)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
- 다만, 전월 대비로는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 석유류가 강세를 보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종료, 가스요금·영화관람료 인상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로 전환
- 통상 7월은 기후적 요인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로 이번 달 상승률(전월 대비)은 예년 수준에 비해 높지 않은 편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 (%)



7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전월비, %)



② (부문별 동향)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등이 강세를 보이고 가스요금 인상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0.4% 상승

- (농축수산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공급으로 및 복날/휴가철 수요증가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했으나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1.0% 상승

* 주요 등락품목(전월 대비 상승률 %) : 상추(58.5), 열무(18.5), 오이(7.1), 수박(6.9), 돼지고기(3.5), 감자(Δ19.3), 양파(Δ9.5), 고등어(Δ9.3), 참외(Δ8.2), 배추(Δ7.5)

- (공업제품) 석유류 가격은 7월 초순까지 크게 상승했으나 중순 이후 국제 원유가격 안정, LPG 가격동결 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1.4% 상승

* 두바이유(\$/배럴) : (6월4주) 68.9 (7월1주) 69.2 (2주) 62.7 (3주) 62.2 (4주) 65.7 (5주) 67.4

** 석유제품별 상승률(전월 대비, %) : (휘발유) 1.1, (경유) 1.9, (등유) 2.9, (LPG자동차용) 0.0, (LPG취사용) 0.2

- 여타 공업제품은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08. 12. 19~09. 6. 30)가 종료된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안정적

- (집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상승 움직임이 있으나 그간의 안정효과로 인해 전월 대비 0.1% 상승

* 집세상승률(전월 대비, %) : (09.2) 0.0 (3) 0.0 (4) 0.1 (5) 0.2 (6) 0.0 (7) 0.1

- (공공요금) 6. 27일 단행된 가스요금 인상 효과가 7월 물가에 반영되면서 전월 대비 0.6% 상승

- (개인서비스) 영화관람료 인상, 성수기 항공요금 적용, 여름방학 학원비 인상 등으로 전월 대비 0.2% 상승

* 개인서비스 상승률(전월 대비, %) : (09.2) 0.2 (3) 0.7 (4) 0.3 (5) 0.1 (6) 0.1 (7) 0.2

'09.7월 부문별 소비자물가 동향

구 분	전체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석유류	집세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전월비(%)	0.4	1.0	0.4	1.4	0.1	0.6	0.2
기여도(%p)	0.36	0.09	0.14	0.08	0.01	0.10	0.06
전년동월비(%)	1.6	5.7	△0.3	△20.9	1.3	2.3	2.3
기여도(%p)	1.62	0.46	△0.08	△1.52	0.12	0.37	0.80

* 전월대비 상승률(0.36%) 중 농축수산물(0.09%p), 석유류(0.08%p), 승용차(0.06%p), 도시가스(0.09%p), 영화관람료(0.01%p) 기여도가 92%(0.33%p)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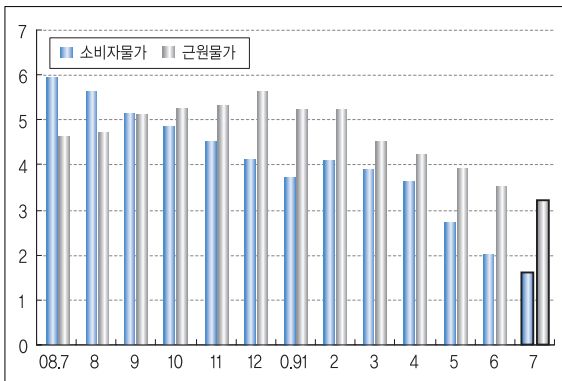
③ (근원물가) 09.7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는 전월 대비 0.2%, 전년동월 대비 3.2% 상승

-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하락 속도가 더딘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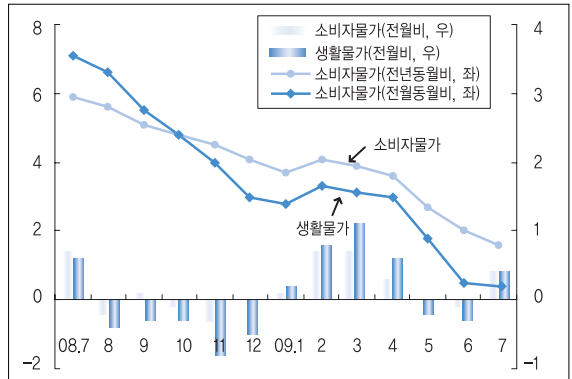
④ (생활물가) 일반 국민들의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09.7월 0.4%(전년동월 대비)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 지속

- 다만, 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달(△0.3%) 보다 높은 0.4% 기록

최근 근원물가 동향 (전년동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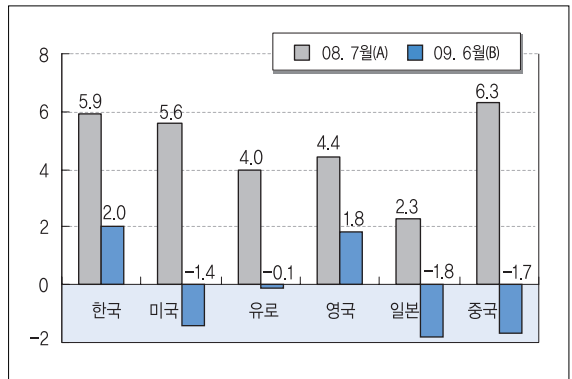
최근 생활물가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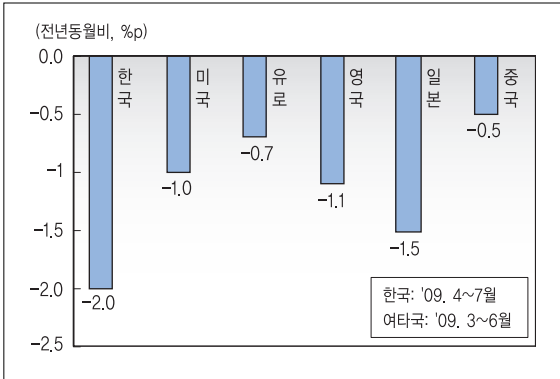
⑤ (소비자물가 국제비교)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대부분 선진국의 물가가 큰 폭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연초 환율상승,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 강세 등에 따라 물가 하락속도가 다소 완만

- 다만, 최근 환율 및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 3개월간 하락 속도는 빠른 편

소비자물가 국제 비교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 하락속도



1, 여타 국가의 경우, 아직 7월 소비자물가 실적이 발표되지 않아 09.6월까지의 실적 활용

2. 향후 소비자물가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는 환율효과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전망이나 전년도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 국제 원자재가격이 최근 다소 반등하고 있으나 환율이 하향안정화되고 있고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아 전반적인 물가안정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
 - 다만,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인한 일부 품목의 가격인상 움직임과 공급측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큰 석유제품,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

* 본 자료는 2009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에서 발표한 「2008년도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08년도 재정사업*에 대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발표함

*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의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실시
단, R&D사업 평가결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 후 별도 공개 예정

- 일반재정분야의 경우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을 평가하는데 '08년도 평가대상 사업은 33개 부처의 346개 사업(23.1조원)임
- 정보화분야의 평가대상 사업은 정보화사업 중 소규모사업(5억원 이하) 등은 제외하여 선정하는데 '08년도 평가대상 사업은 29개 부처의 108개 사업(1.0조)임

- 일반재정분야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전년도(66.7점)와 비슷한 수준임

* (05) 59.9 → (06) 66.2 → (07) 66.7 → (08) 65.9점

-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5.5%, 보통등급이 74.3%,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0.2%임
평가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별 : 90점 이상 89~80 79~60 59~50 50점 미만
점수(점)
- 전년 대비 미흡 이하 및 우수 이상 등급은 감소 (미흡 이하 : 27.0 → 20.2%, 우수 이상 : 14.3 → 5.5%), 보통등급은 증가(58.7 → 74.3%)
- '미흡' 이하 등급 사업 비율이 감소한 것은 '성과 지표의 적정성' 지표의 점수 상승으로 가중치(40

점)가 높은 '성과달성도' 지표의 점수가 상승한 것이 주요인

* 평가지침상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달성도 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음

- 정보화 분야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79.8점
-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20.3%, 보통등급이 55.6%, 미흡등급 이하 사업이 24.1%임

평가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별 : 95점 이상 90~94 75~89 75 미만
점수(점)

- 올해부터 평가 기관의 변경*, 평가결과의 예산연계 원칙 적용 등에 따라 평가를 예년보다 엄격히 실시한 결과 '미흡' 사업 비율이 일반재정보다 다소 높은 수준

* 정보화 사업 평가총괄기관 : (08 이전) 행정안전부 → (09)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금번 평가 결과를 '10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는 등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

• 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을 축소

*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매우미흡 사업의 경우) 사업폐지 검토

- 각 부처는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

참고 1 일반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요

- (대상사업) 각 부처가 매년 소관 재정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선정단, 경상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평가항목) 계획·집행·성과 단계의 11개 공통지표(질문) 및 사업유형*별 1~3개 추가지표
 * 사업유형(7개) : SOC, 시설·장비구매, 출자·출연, 운자,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기타직접수행사업

구분	공통 평가지표	배점
계획	1-1.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7.5
	1-2. 현재 사업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7.5
	1-3.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7.5
	1-4.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인가?	7.5
집행	2-1.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5
	2-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3.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5
	2-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 이 있는가?	5
성과/환류	3-1.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5
	3-2.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5

- (평가결과 산출) 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평가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급별 : 90점 이상 89~80 79~60 59~50 50점 미만
 점수(점)
- (평가결과 활용)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 사

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10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반영)

참고 2 정보화사업 평가제도 개요

- (대상사업) 각 부처가 매년 소관 정보화사업*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단, 당해연도 사업비가 5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 등은 제외
 * 정보시스템사업(정보시스템기획·구축·운영) 및 정보화지원사업(정보격차·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등)

- (평가항목) 계획, 집행, 결과 및 활용 단계의 5개 평가지표

단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계획	계획수립의 적절성	1.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30
	성과계획의 적절성	2.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절성	10
집행	시행관리의 적절성	3. 변경관리 및 집행관리의 적절성	20
결과 및 활용	목표달성도 및 활용도	4-1. 성과목표의 달성도	30
		4-2. 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10

- (평가결과 산출) 지표별 점수를 종합 → 사업별로 4단계 등급화
 평가등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급별 : 95점 이상 90~94 75~89 75 미만
 점수(점)
- (평가결과 활용)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등급 사업은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폐지 검토(『10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반영)

참고 3 일반재정사업 평가 결과 부처별 등급분포

부처	사업수	등급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금융위원회	1	0	1	0
기획재정부	4	1	3	0
지식경제부	22	2	16	4
통계청	6	1	4	1
경찰청	4	2	2	0
관세청	2	0	2	0
국방부	9	2	5	2
법무부	6	0	6	0
통일부	3	0	3	0
해양경찰청	3	1	2	0
행정안전부	10	1	7	2
국가보훈처	5	0	4	1
기상청	3	0	3	0
병무청	1	0	1	0
특허청	5	2	3	0
보건복지가족부	35	0	28	7
교육과학기술부	23	0	17	6
국토해양부	20	1	13	6
노동부	17	0	12	5
문화체육관광부	35	0	23	12
환경부	23	0	16	7
농림수산식품부	39	2	27	10
농촌진흥청	5	1	3	1
문화재청	11	1	8	2
산림청	6	1	5	0
소방방재청	2	0	2	0
식품의약품안전청	3	0	3	0
여성부	6	0	6	0
조달청	5	0	5	0
중소기업청	15	1	11	3
외교통상부	6	0	6	0
국세청	3	0	3	0
방송통신위원회	8	0	7	1
합계	346	19	257	70

참고 4 정보화사업 평가 결과 부처별 등급분포

부처	사업수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교육과학기술부	6	1	2	0	3
기상청	4	0	1	2	1
노동부	6	0	1	4	1
문화체육관광부	4	0	1	3	0
보건복지가족부	4	0	1	1	2
식품의약품안전청	1	0	0	1	0
여성부	1	0	0	1	0
문화재청	1	0	0	1	0
국토해양부	10	0	2	4	4
농촌진흥청	4	0	1	3	0
산림청	1	0	0	1	0
환경부	3	0	1	1	1
지식경제부	4	0	0	3	1
중소기업청	1	0	0	1	0
특허청	4	0	0	4	0
농림수산식품부	4	0	1	3	0
행정안전부	10	0	3	6	1
관세청	4	2	1	1	0
국세청	5	1	0	4	0
외교통상부	1	1	0	0	0
기획재정부	1	0	0	1	0
통계청	3	0	0	2	1
경찰청	2	0	0	1	1
국방부	10	0	0	5	5
법무부	6	0	0	3	3
법제처	1	0	0	1	0
병무청	1	0	0	1	0
해양경찰청	2	0	1	1	0
소방방재청	4	0	1	1	2
합계	108	5	17	60	26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 본 자료는 2009년 7월 31 기획재정부 민영화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확정·발표

* 1차('08. 8. 11, 한국토지신탁 등 13개 기관), 2차('08. 8. 26, 한국공항공사 1개 기관), 3차('08. 10. 10,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개 기관)

① 그랜드코리아레저, 안산도시개발 등 9개 기관은 '09년 매각

* 한국토지신탁, 농지개량,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한국전력기술, 한국자산신탁, 88관광개발(88컨트리클럽)

② 대한주택보증 등 8개 기관은 10년 이후 매각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기업데이터

③ 산은·기은과 5개 자회사는 법령 제·개정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각

■ 7월말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① 금년도 매각이 예정된 기관(9개)

- 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및 매각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이 중 8개 기관은 자산평가까지 완료
-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매각공고를 실시하였고, 이 중 안산도시개발과 농지개량 등 2개 기관

은 매각공고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7. 29일)

* 한국자산신탁,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토지신탁
- 3개 기관*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거나 심사 중에 있어, 금년 중으로 상장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 나머지 1개 기관*도 자산평가 후 9월중 매각공고를 거쳐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

* 88관광개발(88컨트리클럽)

② 2010년 이후 매각이 예정된 기관(8개)

• 5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및 매각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매각 주간사까지 선정

*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인천종합에너지, 한국기업데이터

• 금년 말까지 자산평가를 완료하여 사전준비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추진과정에서 조기 매각이 가능한 기관은 금년 중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할 계획

③ 산은·기은과 관련 5개 자회사(7개)

• 산은 분할 과정 및 정책금융 체계의 안정적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매각일정을 마련할

계획

* 산은은 '09. 10월경 분할 완료 예정

- 향후에도 정부는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 민영화가 당초 발표된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계획

참고 민영화 추진 현황(24개)

■ '09년 매각 예정기관(9개)

부처	기관명	매각 주체	방안 발표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완료	매각 공고
국토부	1 (주)한국토지신탁	토지공사	'08. 8.11	'09.2	'08.12	'09.3	'09.4	09.6
	2 (주)농지개량	농어촌공사	'08. 8.10	'09.3	'08.12	/	'09.2	09.4
	3 한국문화진흥(주)	문화예술위	'08. 10.11	'09.4	'09.4	'09.8 예정	'09.6	
	4 그랜드코리아레저	관광공사	'08. 8.11	'09.3	'09.1	'09.6	'09.6	
문화부	5 한국지역난방공사	지경부	'08. 8.11	'08.12	/	'09.3	'09.4	
지경부	6 안산도시개발(주)	지역난방	'08. 10.10	'08.12	'08.12	'09.3	'09.4	09.4
	7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08. 10.10	'09.3	'09.3	'09.5	'09.6	
금융위	8 한국자산신탁	캠코	'08. 10.11	'09.4	'09.3	'09.4	'09.6	09.7
	9 88관광개발(주)	보훈처	'08. 10.10	'09.2	'08.12	'09.5		

* 상장추진기관

■ '10년 이후 매각 예정기관(8개)

부처	기관명	매각 주체	방안 발표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완료	매각 공고
국토부	1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부	'08. 8.11		선진화추진위원회			
	2 한국공항공사	국토부	'08. 8.26					
	3 대한주택보증(주)	국토부	'08. 10.10					
	4 한국건설관리공사	도공	'08. 8.11	'09. 3	'09. 5			
문화부	5 경북관광개발공사	관광공사	'08. 8.11	'09. 3	'09. 1	'09. 5		
지경부	6 한전 KPS(주)	한전	'08. 10.10	'09. 3	'09. 3			
	7 인천종합에너지(주)	지역난방	'08. 10.10	'08.12	'08.12			
금융위	8 한국기업데이터주	신보등	'08. 10.10	'09. 6	'09. 7			

■ 산은, 기은 및 5개 자회사(7개)

부처	기관명	매각 주체	방안 발표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완료	매각 공고
금융위	1 한국산업은행	금융위	08. 8.11		매각일정 준비중			
	2 산은자산운용(주)	금융위	08. 8.11					
	3 산은캐피탈	금융위	08. 8.11					
	4 중소기업은행	금융위	08. 8.11					
	5 (주)기은캐피탈	금융위	08. 8.11					
	6 아이비케이이시스템	금융위	08. 8.11					
	7 기은신용정보(주)	금융위	08. 8.11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 본 자료는 2009년 8월 6일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표한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 금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389천개로 전년 369천개 대비 20천개 증가
 -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람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전자신고 이용방법(작성예시)〉

- ①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 ③ 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 → ④ 접수증 확인

2. 금번 중간예납은 인화된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 이번,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화된 법인세율(25% → 22%)을 적용하며
-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시 적용할 세율〉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2%	· 일반기업 : 11% (과표 1천억원 초과 14%)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	· 중소기업: 8%

- 또한, 중간예납 기간(09.1~6월)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였음.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지역구분	공제율	종 전	개 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7%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3%

* '09. 1. 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허용(차등적용) 및 공제율 상향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8.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으로 상반기(09.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 계산 납부할 경우에는 추후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람.

3. 경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음.
 -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2(10.31은 토요일)

4. 세 부담 감소 목적의 부당한 자기계산신고 엄정대처

-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 부담을 축소하고자 부실하게 가결산하여 자기계산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참고 2009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9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 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2(10.31은 토요일)

- ①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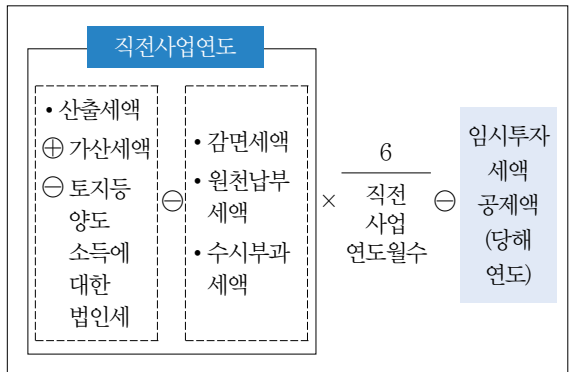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 - 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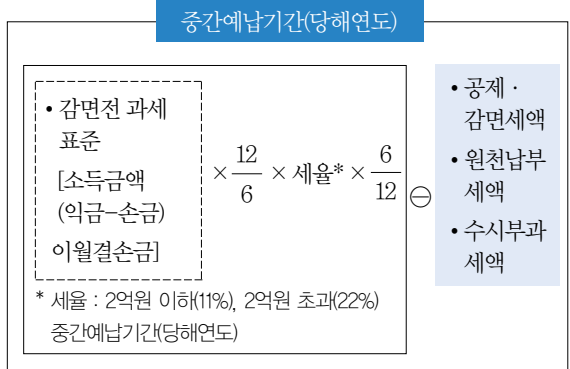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9.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 ⑤)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가결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

청서 등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9. 8. 31. 24:00

* 전자납부는 22시까지임(단, 상호저축은행은 19시까지)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하고자 부실하게 가결산하여 자기계산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 신고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정할 계획
-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불성실 신고·납부유형〉

- ▶ 세부담을 조절할 목적으로 부실 가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 ▶ 직전사업연도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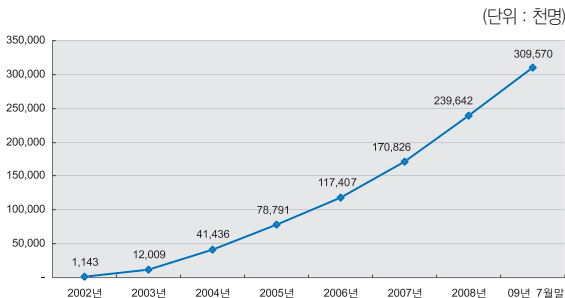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

- 홈택스 지속 혁신으로 납세서비스 및 국민신뢰 제고 -

* 본 자료는 2009년 8월 4일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방문자가 '09. 7. 6일 3억명을 돌파하였음
- 2002. 4월 홈택스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06. 7월 1억명이 방문한 데 이어 3년 만인 금년 7월에 방문자 수가 3억명을 넘어섰음
- 국세청은 홈택스 방문자 3억명 돌파를 기념하여 8. 4일 3억번째 방문자에게는 「노트북 컴퓨터」를 증정하고, 앞뒤 방문자 1명씩에게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등 축하행사를 가졌음

연도별 방문자 수 추이



- 홈택스는 세금 신고·납부와 더불어 국세관련 민원 증명 발급, 양도세 및 증여세 계산 등 각종 세금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임
- 현재 약 1,100만명의 납세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 세금신고의 경우 법인세의 96%, 종합소득세의

- 81%, 부가가치세의 75%가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주요국 전자신고율('07) : 미국(소득세 57%), 영국(소득세 33%, VAT 9%), 프랑스(소득세 20%, VAT 14%), 일본(소득세 17%, VAT 40.7%)

- 홈택스 방문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자신고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확인, 납세자별 맞춤형 세금정보 안내서비스(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 등) 등 다양하고 유용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IT 서비스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인 ISO20000 인증을 획득('08. 2월)하는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임

* ISO/IEC 20000 : 고객요구 반영, 전산장애 예방·복구, 시스템 운영 등 IT 서비스 관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인증임

-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각종 국세 관련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임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 '09. 8. 3부터 위택스(WeTax) 전자 납부영수증 발급서비스 실시 -

* 본 자료는 2009년 8월 3일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에서 발표한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 계획('09. 7. 22 발표)』의 후속조치로 2009년 8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을 법적 효력이 부여된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으로 위택스(WeTax)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택스(WeTax)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지방세납부확인서) 신설

-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납부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하여도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 또한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지방세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그동안은 현행 모든 지방세고지서에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납세자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기관의 행정실수로 미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또한,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구청(세무과)을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법인 납세자가 전자납부한 경우에 출력되는 납부영수증에 법적 효력이 없어 회계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전자납부를 기피하는 문제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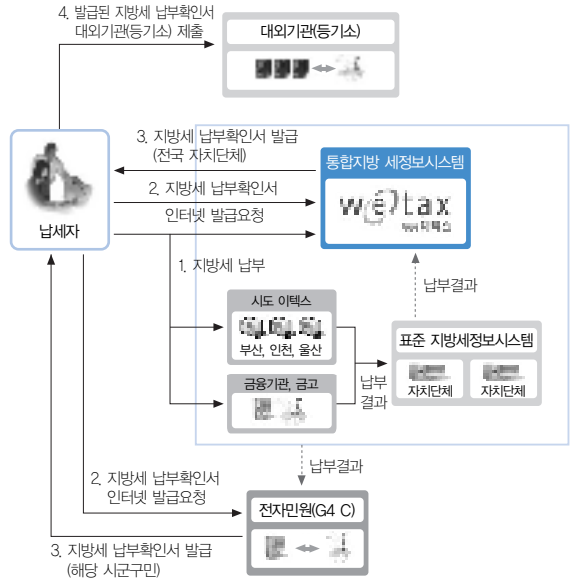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산수납 처리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 전산자료를 위택스(WeTax)에 통합구축 및 발급 S/W도 개발했다.

- 또한 발급되는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G4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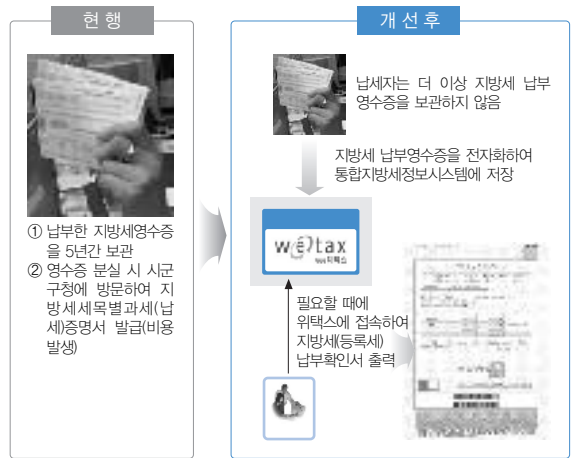
복사방지를 위한 조치도 완료하였다.

- 이번 위택스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 발급으로 개인 납세자의 지방세납부영수증 보관(5년)으로 인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으며
 - 앞으로 과세기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 장기 보관(1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위택스 시스템을 보완해 종이 지방세납부영수증 보관이 필요없는 녹색(Green) 지방세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위택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로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장기보관(5년)하는 불편함과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후에 구청(세무과)을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며 “특히 기업체에서는 위택스 전자납부 후에 발급되는 납부확인서를 회계지출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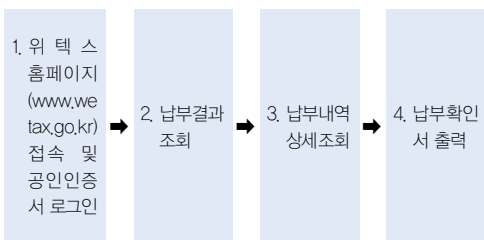
참고 2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서비스 기대효과



참고 3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예시)**참고 4** 위택스 전자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위택스(WeTax)를 이용한 발급

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납부결과 조회



③ 납부내역상세 조회



④ 납부확인서 출력





| 재정통계 |

-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 특별소비세 신고현황
- 특별소비세 주요 품목 출고량
- 특별소비세 주요 품목 부과
-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특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1. 특별소비세 예산 및 징수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부과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A)	(B)		(C)			(B/A)	(C/A)
1977	94,061	101,252	99,300	99,865	8	1,379	107.6	106.2
1978	281,426	329,275	333,102	327,021	136	2,118	117	116.2
1979	459,526	504,550	499,227	484,627	92	19,831	109.8	105.5
1980	613,117	610,482	613,090	582,471	117	27,894	99.6	95
1981	746,776	671,038	663,580	665,204	59	5,775	89.9	89.1
1982	673,077	670,665	666,441	664,874	1,824	3,967	99.6	98.8
1983	788,376	797,741	795,082	793,315	702	3,724	101.2	100.6
1984	845,278	902,270	900,157	898,110	662	3,498	106.7	106.3
1985	984,934	985,686	986,063	980,807	457	4,422	100.1	99.6
1986	1,041,891	1,092,879	1,094,254	1,085,500	857	6,522	104.9	104.2
1987	1,247,579	1,195,158	1,222,663	1,189,665	1,856	3,637	95.8	95.4
1988	1,308,587	1,335,571	1,336,669	1,333,176	695	1,700	102.1	101.9
1989	1,140,112	1,262,708	1,414,985	1,256,966	1,434	4,308	110.8	110.2
1990	1,449,016	1,915,661	1,782,960	1,911,791	1,347	2,523	132.2	131.9
1991	2,150,646	2,251,338	2,349,161	2,246,526	853	3,959	104.7	104.5
1992	2,852,738	3,073,650	2,949,114	3,068,615	720	4,315	107.7	107.6
1993	3,478,268	3,611,217	3,615,397	3,606,917	978	3,322	103.8	103.7
1994	2,352,600	2,455,924	2,595,194	2,445,573	873	9,478	104.4	104
1995	2,610,200	2,631,204	2,662,747	2,617,110	1,654	12,440	100.8	100.3
1996	2,910,200	3,144,321	3,119,253	3,119,253	1,755	23,313	108	107.2
1997	3,266,800	3,072,164	3,144,463	3,036,442	4,913	30,809	94	92.9
1998	2,011,500	2,272,834	2,197,934	2,211,453	12,262	49,119	113	109.9
1999	2,931,012	2,759,381	2,920,468	2,713,271	17,414	28,696	94.1	92.6
2000	1,781,500	3,059,488	2,929,966	2,984,560	22,758	52,170	171.7	167.5
2001	3,038,100	3,709,894	3,394,895	3,633,613	39,369	36,912	122.1	119.6
2002	4,169,200	4,428,859	4,238,531	4,288,222	87,044	53,593	106.2	102.9
2003	5,030,900	4,850,329	4,819,667	4,732,985	65,767	51,577	96.4	94.1
2004	5,892,900	4,698,492	4,571,799	4,574,032	55,530	68,930	79.7	77.6
2005	4,461,700	4,542,794	4,539,610	4,399,528	48,855	94,411	101.8	98.6
2006	4,434,100	5,040,833	5,100,488	4,903,453	22,752	114,628	113.7	110.6
2007	5,204,100	5,301,941	5,069,939	5,161,140	22,853	117,948	101.9	99.2

주: 2006년 이후의 부과액은 신고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특별소비세 신고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신고인원	산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005	7,642	3,414,858	371,126	352	3,044,084	-	-
2006	7,647	3,287,287	400,770	274	2,886,791	610,592	47,356
2007	7,778	3,018,848	307,484	366	2,711,729	586,596	52,433

주: 신고인원은 12월 귀속 기준이며 1개업체가 다수의 과세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원이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특별소비세 주요 품목 출고량

연 도	냉장고	세탁기	칼라TV	사탕	청량음료	승용차	등유	중유	석유가스	
									계	프로판
단 위	대	대	대	톤	천병	대	kl	kl	톤	톤
1983	985,311	359,704	1,442,095	401,283	1,839,039	104,463	-	-	-	-
1984	1,266,969	560,082	1,625,586	439,692	2,007,955	106,184	-	-	-	-
1985	1,310,228	567,957	1,145,600	434,814	2,009,551	127,596	-	-	-	-
1986	1,359,871	721,551	1,243,528	480,974	1,987,803	153,160	-	-	-	-
1987	1,650,635	88,723	1,446,489	499,277	2,080,523	232,427	-	-	-	-
1988	1,755,967	1,026,111	1,707,391	584,849	2,015,675	315,971	-	-	-	-
1989	1,837,835	889,831	2,048,078	598,677	2,263,174	470,077	-	-	-	-
1990	1,728,077	595,644	1,798,588	588,877	2,378,581	538,574	-	-	-	-
1991	1,781,002	304,473	2,038,773	670,047	2,346,144	678,134	-	-	-	-
1992	1,790,047	108,413	2,019,094	676,318	2,512,920	737,603	-	-	-	-
1993	1,767,328	54,517	2,221,603	678,931	2,142,295	887,040	-	-	-	-
1994	2,033,682	1,239,599	2,205,138	740,114	2,611,614	1,054,548	-	-	-	-
1995	2,105,092	1,444,906	2,011,289	747,869	2,581,600	980,267	-	-	-	-
1996	1,806,720	1,293,246	2,088,795	759,758	2,412,990	1,050,145	8,070,439	-	1,464,510	-
1997	1,710,602	1,241,908	2,060,677	782,908	2,765,177	991,978	9,861,214	-	1,949,194	-
1998	1,381,464	1,026,319	1,670,932	665,805	3,226,759	381,944	8,224,912	-	2,327,843	-
1999	2,214,636	1,744,273	1,430,225	746,638	2,638,089	521,643	11,824,509	-	2,676,196	-
2000	-	-	-	-	-	716,350	11,033,691	-	3,030,563	-
2001	-	-	-	-	-	724,812	8,926,961	-	3,322,331	-
2002	-	-	-	-	-	954,536	8,656,461	-	3,450,956	659,350
2003	-	-	-	-	-	874,696	7,709,719	-	3,717,330	608,430
2004	-	-	-	-	-	670,750	7,206,731	-	3,891,644	650,675
2005	-	-	-	-	-	802,052	6,413,506	21,889,310	3,937,129	667,891
2006	-	-	-	-	-	807,994	5,098,274	21,045,877	3,759,285	664,940
2007	-	-	-	-	-	751,798	4,048,783	20,092,764	3,473,694	647,621

석유가스		부생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과세유흥장소	휘발유	경유
부탄	천연가스								
톤	톤								
-	-	-	-	-	-	-	-	608,248	5,528,042
-	-	-	-	-	-	-	-	831,646	6,301,053
-	-	-	-	-	-	-	-	1,103,043	7,505,400
-	-	-	-	-	-	-	-	1,337,912	8,081,014
-	-	-	-	-	-	-	-	1,605,647	7,926,858
-	-	-	-	-	-	-	-	2,097,049	9,711,368
-	-	-	-	-	-	-	-	2,821,203	11,807,164
-	-	-	-	-	-	-	-	3,588,319	12,432,707
-	-	-	-	-	-	-	-	4,408,615	14,568,704
-	-	-	-	-	-	-	-	5,433,696	17,782,390
-	-	-	-	-	-	-	-	6,674,588	18,770,340
-	-	-	-	-	-	-	-	7,864,626	18,840,025
-	-	-	-	-	-	-	-	9,348,372	21,216,141
-	-	-	-	-	-	-	-	10,624,153	19,610,957
-	-	-	-	-	-	-	-	11,395,842	24,684,101
-	-	-	-	-	-	-	-	9,741,609	18,765,537
-	-	-	-	-	-	-	-	10,078,106	19,208,585
-	-	-	-	-	-	-	-	9,774,679	18,143,971
-	-	-	-	-	-	-	-	9,380,601	17,780,283
2,791,606	-	-	-	-	-	-	-	9,503,587	19,614,888
3,108,900	-	-	-	-	-	-	-	9,286,273	20,366,911
3,240,969	-	-	-	-	-	-	-	9,179,590	21,564,841
2,870,789	398,449	240,098	3,074	12,302	1,766	954	1,421,878	-	-
2,758,581	335,764	234,528	2,686	13,047	1,852	1,473	1,466,612	-	-
2,569,309	256,764	198,729	3,519	14,462	2,421	1,179	1,565,019	-	-

주: 1. 냉장고, 세탁기, 칼라TV, 사탕, 청량음료는 2000년부터 특별소비세 관세대상에서 제외.
 2. 석유가스는 2001년 7월 1일부터 프로판과 부탄으로 분리하여 과세
 3. 2005년부터 추가된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은 입장인원이며, 과세유흥장소는 과세표준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특별소비세 주요 품목 부과

연 도		냉장고	세탁기	칼라TV	승용차	사탕	청량음료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1983	인원	1	1	7	4	4	17	3	4	-	-
	세액	48,699	15,925	73,970	59,992	58,472	44,660	183,552	102,456	-	-
1984	인원	3	3	8	4	3	20	4	4	-	-
	세액	61,857	25,937	76,809	73,023	53,818	49,450	207,413	118,991	-	-
1985	인원	3		8	4	3	22	4	4	-	-
	세액	68,260	29,500	53,525	88,568	49,339	52,817	271,188	123,449	-	-
1986	인원	3	3	8	4	3	22	4	4	-	-
	세액	72,214	41,034	56,287	105,476	54,579	56,748	304,917	113,496	-	-
1987	인원	3	3	8	4	3	22	4	4	-	-
	세액	75,340	46,483	56,602	149,306	54,040	55,318	351,319	101,350	-	-
1988	인원	4	3	8	4	3	22	4	4	-	-
	세액	70,221	52,522	63,039	209,187	47,529	51,645	360,391	105,413	-	-
1989	인원	3	3	9	4	3	22	4	4	-	-
	세액	60,511	30,249	51,939	312,672	24,068	39,762	372,270	118,531	-	-
1990	인원	8	4	17	5	3	25	5	6	-	-
	세액	68,029	25,483	61,639	418,853	27,357	44,131	457,373	124,828	-	-
1991	인원	7	6	15	6	3	26	5	△5	-	-
	세액	94,050	13,802	83,489	504,297	28,193	48,749	779,895	155,680	-	-
1992	인원	8	5	19	6	3	25	5	△5	-	-
	세액	113,006	4,882	102,663	547,211	29,369	50,875	1,260,534	200,767	-	-
1993	인원	9	5	29	6	3	26	5	△5	-	-
	세액	131,543	2,647	123,888	654,234	30,125	48,405	1,727,840	237,451	-	-
1994	인원	8	6	30	6	3	29	5	△5	-	-
	세액	161,475	50,841	139,554	937,251	33,029	60,946	200,636	28,423	-	-
1995	인원	6	5	20	6	4	31	-	-	-	-
	세액	126,486	82,702	116,549	1,019,133	36,299	63,813	-	-	-	-
1996	인원	6	3	9	6	3	28	-	-	5	-
	세액	104,711	88,665	121,026	1,198,246	37,294	72,060	-	-	102,917	-
1997	인원	7	5	7	7	6	27	-	-	5	-
	세액	116,444	83,591	95,035	1,220,319	40,225	73,633	-	-	230,972	-
1998	인원	9	6	13	7	5	27	-	-	5	-
	세액	62,398	34,407	44,545	260,563	53,524	74,931	-	-	382,465	-
1999	인원	11	4	13	7	11	22	-	-	5	-
	세액	78,618	40,057	45,500	381,274	47,907	88,088	-	-	683,429	-

(단위: 명, 백만원)

석유가스				부생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과세유희장소	기타	수입분
계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	-	-	-	-	-	-	-	-	-	9,027	-
-	-	-	-	-	-	-	-	-	-	179,962	27,394
-	-	-	-	-	-	-	-	-	-	9,347	-
-	-	-	-	-	-	-	-	-	-	201,133	31,972
-	-	-	-	-	-	-	-	-	-	9,608	-
-	-	-	-	-	-	-	-	-	-	214,522	34,895
-	-	-	-	-	-	-	-	-	-	10,294	-
-	-	-	-	-	-	-	-	-	-	251,865	37,638
-	-	-	-	-	-	-	-	-	-	7,237	-
-	-	-	-	-	-	-	-	-	-	273,628	59,277
-	-	-	-	-	-	-	-	-	-	7,384	-
-	-	-	-	-	-	-	-	-	-	323,948	52,774
-	-	-	-	-	-	-	-	-	-	3,883	-
-	-	-	-	-	-	-	-	-	-	341,443	63,540
-	-	-	-	-	-	-	-	-	-	4,616	-
-	-	-	-	-	-	-	-	-	-	426,169	129,098
-	-	-	-	-	-	-	-	-	-	4,375	-
-	-	-	-	-	-	-	-	-	-	527,897	113,109
-	-	-	-	-	-	-	-	-	-	4,305	-
-	-	-	-	-	-	-	-	-	-	527,775	112,032
-	-	-	-	-	-	-	-	-	-	3,854	-
-	-	-	-	-	-	-	-	-	-	533,777	125,487
-	-	-	-	-	-	-	-	-	-	3,901	-
-	-	-	-	-	-	-	-	-	-	725,104	257,935
-	-	-	-	-	-	-	-	-	-	3,599	-
-	-	-	-	-	-	-	-	-	-	860,873	356,893
7	-	-	-	-	-	-	-	-	-	-	-
28,625	-	-	-	-	-	-	-	-	-	-	-
7	-	-	-	-	-	-	-	-	-	-	-
34,885	-	-	-	-	-	-	-	-	-	-	-
8	-	-	-	-	-	-	-	-	-	-	-
87,714	-	-	-	-	-	-	-	-	-	-	-
10(△5)	-	-	-	-	-	-	-	-	-	-	-
107,021	-	-	-	-	-	-	-	-	-	-	-

4. 특별소비세 주요 품목 부과 <계속>

연 도		냉장고	세탁기	칼라TV	승용차	사탕	청량음료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2000	인원	-	-	-	5	-	-	-	-	5	-
	세액	-	-	-	664,809	-	-	-	-	597,506	-
2001	인원	-	-	-	5	-	-	-	-	5	-
	세액	-	-	-	792,430	-	-	-	-	580,379	-
2002	인원	-	-	-	5	-	-	-	-	5	-
	세액	-	-	-	1,003,635	-	-	-	-	741,918	-
2003	인원	-	-	-	5	-	-	-	-	5	-
	세액	-	-	-	1,074,477	-	-	-	-	797,835	-
2004	인원	-	-	-	5	-	-	-	-	5	-
	세액	-	-	-	511,027	-	-	-	-	945,297	-
2005	세액	-	-	-	681,079	-	-	-	-	900,645	177,247
2006	세액	-	-	-	902,236	-	-	-	-	621,422	210,746
2007	세액	-	-	-	881,071	-	-	-	-	489,971	221,610

(단위: 명, 백만원)

석유가스				부생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경륜장	과세유희 장소	기타	수입분
계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7(△5)	-	-	-	-	-	-	-	-	-	-	-
121,113	-	-	-	-	-	-	-	-	-	-	-
5(△9)	-	-	-	-	-	-	-	-	-	-	-
206,294	-	-	-	-	-	-	-	-	-	-	956,625
	5(△7)	5(△21)	-	-	-	-	-	-	-	-	-
404,127	29,931	374,196	-	-	-	-	-	-	-	-	1,278,206
	5(△9)	5(△18)	-	-	-	-	-	-	-	-	-
674,953	23,837	651,116	-	-	-	-	-	-	-	-	1,461,541
	5(△7)	5(△14)	-	-	-	-	-	-	-	-	-
976,495	25,538	950,957	-	-	-	-	-	-	-	-	1,480,375
953,534	26,550	911,923	15,061	26,891	1,536	147,746	6,183	189	142,450	-	1,495,526
810,030	26,388	763,497	20,145	24,156	1,342	156,568	6,484	293	146,899	-	2,213,697
750,161	25,676	709,080	15,405	20,469	1,759	173,541	8,474	234	156,841	-	2,358,210

주: 1. 휘발유, 경유는 1994. 1. 1 반출분부터 교통세로 전환.
 2. 인원란의 △표시는 타업종 겸업자를 나타냄.
 3. 석유가스는 2001년 7월 1일부터 프로판과 부탄으로 분리하여 과세.
 4. 수입분은 관세청 장수실적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5.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단위: 백만원)

연 도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1977	99,195	2,362	28,724	22,529	44,463	-	1,116	-
1978	324,177	8,939	117,985	69,243	125,228	-	2,782	-
1979	485,754	10,398	168,795	85,090	218,312	-	3,160	-
1980	606,250	9,780	112,833	109,613	370,765	-	3,260	-
1981	652,376	11,434	144,950	131,018	361,423	-	3,550	-
1982	653,274	12,224	167,784	149,885	306,362	-	4,464	12,554
1983	767,688	14,761	245,587	171,285	315,695	-	4,748	15,612
1984	868,431	16,905	280,367	186,919	362,408	-	5,191	16,641
1985	951,167	18,067	280,265	196,653	433,713	-	5,911	16,558
1986	1,056,617	20,155	329,260	223,350	457,889	-	7,065	18,898
1987	1,163,388	20,692	412,128	210,477	492,855	-	8,663	18,573
1988	1,284,001	23,000	544,943	187,489	498,466	-	11,049	19,054
1989	1,351,445	19,998	667,656	116,714	508,008	-	16,988	22,081
1990	1,653,862	23,162	854,098	134,579	600,846	-	17,694	23,483
1991	2,236,052	24,251	1,055,121	152,504	957,438	-	18,849	27,889
1992	2,837,082	26,891	1,100,932	166,031	1,489,619	-	22,360	31,249
1993	3,489,931	33,593	1,242,852	167,227	1,993,987	-	21,866	30,406
1994	2,337,259	46,371	1,684,041	200,420	335,208	-	24,799	46,420
1995	2,305,855	271,856	593,987	198,513	4,275	1,149,714	29,145	58,365
1996	2,467,705	284,155	565,702	192,721	4,733	1,328,255	31,686	60,453
1997	2,683,306	310,123	553,046	202,290	5,702	1,486,177	43,709	82,259
1998	1,619,862	198,709	302,309	197,969	5,242	730,742	97,287	87,602
1999	2,164,432	213,687	338,684	212,026	7,813	1,171,724	119,966	100,532
2000	2,045,967	405,389	-26,420	1,110	10,562	1,383,428	121,892	150,006
2001	2,438,270	491,490	-	4,047	4,072	1,600,929	127,707	210,025
2002	2,960,325	408,487	-	2,520	3,230	2,230,734	132,393	182,961
2003	3,358,126	370,954	-	2,250	3,132	2,675,405	142,998	163,387
2004	3,091,424	175,513	-	1,504	3,392	2,622,458	150,380	138,177
2005	3,044,084	95	-	1,310	4,774	2,739,396	156,059	142,450
2006	2,886,791	250	-	1,570	5,200	2,568,590	164,282	146,899
2007	2,711,729	119	-	1,444	6,035	2,363,282	184,008	156,841

주: 1. 2005년 이후 1종은 오락용기구, 3종은 강장제 및 화장품, 4종은 귀금속 및 모피, 5종은 자동차 및 석유가스임.

2. 1종 품목 중 골프용품, 공기조절기, 영상투사방식 TV, 플라즈마방식 TV 인원은 '04. 10월 이후 법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통계수치 불일치.

(2004년 삭제된 품목을 제외한 오락용사행기구 등은 부과금액이 700이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6. 특별소비세 감면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763,524	1,702,646	3,536,436	2,804,191	2,408,121	2,861,351	2,691,027
수출	1,649,908	1,510,748	3,290,408	2,551,823	2,076,308	2,532,805	2,469,906
장애인, 환자수송 차량 ¹⁾	47,492	72,813	71,631	67,574	101,652	156,291	53,128
석유화학공업용원료 등 ²⁾	22,217	34,652	71,491	99,296	144,260	118,292	115,535
군납	4,837	7,660	2,049	1,795	8,607	1,867	3,219
농·어업용 석유류 ³⁾	30,739	46,774	57,550	65,743	66,121	50,178	47,15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⁴⁾	670	133	270	346	398	498	639
도서지방 발전용 석유류 ⁵⁾	11	91	145	149	182	6	3
기타	7,650	29,775	42,892	17,465	10,593	1,414	1,438

주: 1)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 승용차

2) 의료용, 의약품·비료·농약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3) 농·어업용 석유류.

4)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

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법인·소득세 감세 유지하되 공제는 축소”

내년에 예정된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공제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장기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이 밝힌 조세정책 방향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감세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정부 조세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전 실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유가환급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세부담 인하 등 소비세제가 소비심리 안정을 가져와 경기급락 방지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일례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경우 가구 총소득은 하위 20%(1, 2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98년 1~2분기 상위 10%(10분위)를 제외한 전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개선된 수준이라는 것.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승수가 소득세의 경우 시행 10년차에 0.4, 법인세가 0.8로서 장기

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했다. 10년차 재정승수가 0.8이라는 것은 세금을 1원 감세했을 때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을 0.8원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전 실장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을 제시한 뒤 “법인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넓은 세원을 형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무차별적인 공제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R&D), 에너지 절약 등 외부파급효과가 큰 부분과 직접 연계된 지원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인하도 방침대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정건전성 고려를 위해 세율인하로 부담이 낮아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중산층·서민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저축, 연금과세 등 자산 및 노후소득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근로장려금(EITC)도 중장기적으로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분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년 8월 19일자〉

[사실] 성장잠재력 훼손 없는 세제개편 돼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이란 정책 세미나를 통해 ‘낮은 세율-넓은 세

원 원칙의 재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조세 정책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우선 정부가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해온 각종 조세 감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유가 환급금 지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비수도권 골프장 세무담 인하 등의 조치는 서민·중산층 소득 확대와 민간 소비 증대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런 제도를 지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위기극복 이후에는 재정의 건전성 또한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축소를 들고 나온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제지원조치의 축소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일이다. 아직도 세계적인 경제위기국면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조세연구원은 일단 예정됐던 법인세·소득세 인하 방침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근로장려금(ETIC)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연구원은 ‘넓은 세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제도의 축소,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양성화,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세율은 낮추되 더 많은 사람들이 납세에 참여하고, 더불어 탈루되고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모처럼 꿈틀거리는 경기를 위축시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세수를 늘리고 세원을 확대하는 일도 긴요하지만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투자를 더욱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성공적으로 잡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 2009년 8월 19일자〉

【인구대재앙】(4) 출산파업, 구명난 복시

1부. 충격, 대한민국 인구 리포트

오는 2030년 미국의 7,700만 베이비붐 세대는 모두 은퇴 후 연금수혜자가 된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노인 수는 100% 증가하지만 그들을 부양하는 경제활동인구는 고작 18% 증가할 뿐이다.

이를 두고 세계적인 인구학자 로렌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The coming generation storm)’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에 미국 정부는 파산을 향해 달리는 폭주 기관차나 다름 없다”고 앞으로 닥칠 미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과 불과 10여년 차이가 날 뿐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생산인구 감소→세수감소와 사회보장비 증대→재정수지 악화’의 악순환이 변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지출은 지난 2004년 0.25%에서 2010년 0.9%로 늘어나고 2020년 1.7%, 2030년 2.9%, 2050년에는 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아직까지는 연금을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훨씬 많지만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58년 개띠’를 시작으로 10여년 후 연금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대 초반이면 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돈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한다. 2044년이면 연금보험료보다 연금 급여 지출액이 많아진다. 적자로 돌아선 적립금을 까먹는 것은 시간 문제다.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65세까지 늘어나고 지급 방식이 부과방식(저돈 만큼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장 연금을 못 받게 되진 않는다. 하지만 신생아는 줄고 노인만 늘어난다면 현재의 직장 초년병들이나 이후 세대는 국민연금을 기부금으로 생각하고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2010년의 합계 출산율을 1.15, 2030년 이후를 1.28로 잡고 있다. 하지만 사회 각계에서는 벌써 출산율 1.0 붕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령화에 따른 더욱 큰 문제는 '노인의료비 폭탄'이다. 노인들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진료비 지출 규모가 국민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늘어난 2조7,659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0.1%를 차지했다.

2003년 총진료비(20조5,336억원) 가운데 노인진료비가 21.3%(4조3,72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이가 매우 빠른 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등 국가 재정에서 나가야 하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현재의 재정 건전성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출 확대에 따라 GDP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엔 6.3%, 2015년

7.3%, 2020년 8.5%, 2030년 11.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11년 31.43%에서 2022년 28.55%까지 하락하다가 반전, 2050년에는 43.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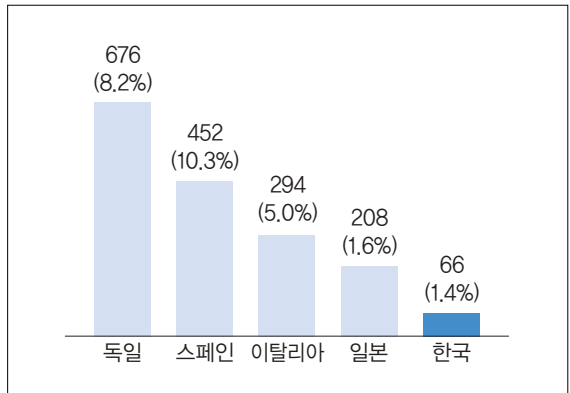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적립하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올라가고 있지만 국가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위기를 경고했다.

〈서울경제 2009년 8월 11일자〉

일하는 인구 갈수록 줄어...절반 외국인으로 채워야 출산율 1.19명...한국경제가 무너진다 ①

OECD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 거주자 비교

(단위: 만명)



*2006년 기준. 괄호안은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자료: OECD

현재 출산율대로라면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38.2%에 달하게 된다.

결말이 밝히 내다보이는 저출산·고령화의 함정이다. 이렇게 되면 외부충격이 없더라도 한국은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으로 적극적인 외국 인력 활용을 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006년 기준)로 2% 미만에 그치고 있다. 한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독일(8.2%) 스페인(10.3%) 이탈리아(5.0%)에 비해 크게 낮다. 인력쇄국으로 유명한 일본(1.6%)보다도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외국 인력 유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해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05~2020년 3.2% 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3467만명이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 3583만명까지 완만하게 늘어난다는 추정이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사정이 확 달라진다. 국가 경제를 떠받쳐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는 2275만명에 그치고 만다.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65세 이하 인구가 약 3662만명(통계청 2005년 인구 전망치 기준)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거주 인구의 46% 이상, 즉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또 총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율을 현 수준에 맞추려면 2050년까지 65세 인구 2921만명이 추가돼야 한다. 이때 노인 인구 비율은 22%가량이며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8%에 이르게 된다.

〈매일경제 2009년 8월 3일자〉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 크게 줄지 않을 것

재정 조기집행으로 올 하반기(7~12월) 재정집행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재정집행 여력 감소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 재정 집행 이후 실제 사용까지 걸리는 시간차 때문에 상반기(1~6월)에 집행된 자금의 20%는 실제로 하반기에나 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으로 올해 중 계획하고 있는 전체 재정지출 규모(257조7000억원)의 64.8% 수준인 167조 1000억원의 재정을 상반기(1~6월)에 쏟아부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35% 정도의 재정여력만이 남게 돼 일부에서는 하반기 ‘더블딥(경기 회복 이후 다시 침체)’ 우려까지 제기해 왔다.

그러나 조세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하반기에 사용되는 재정 여력은 쉽게 예상하듯 올해 전체 예산의 35% 수준이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상반기에서 넘어오는 자금 13%(65%의 20% 수준)를 추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제 쓰이는 재정은 각각 65대 35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52대 48 수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한꺼번에 쓰이지 못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물론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이 실제로 쓰일 때까지 시간차가 나타나는 것은 여느 때나 같은 현상일 수 있지만, 특히 올해의 경우 워낙 많은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병목현상은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하반기 재정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물론 상대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재정의 역할 축소분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9년 7월 31일자〉

재정포럼

2009년 8월호 통권 제158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9년 8월 17일 발행 / 제14권 제8호(통권 제158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